



인권상담 가이드북1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의미, 인권상담 센터와 기존국가기관의 민원실과의 차이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조사대상 등의 법조항 해설 등을 통해 인권상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상담센터 엮음/229쪽



인권상담 가이드북2
인권위법상 조사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와 기각되는 경우의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각 사례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사진정사례, 외국 사례 등을 더불어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조사한 주요사건들의 결정 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인권상담센터 엮음/377쪽



면전진정 가이드북1
구금시설 현황과 관련 상식, 통계, 면전진정 절차 등 기초 자료를 통하여 구금시설 전반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면전진정 업무처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상담센터 엮음/105쪽



면전진정 가이드북2
구금시설 현황과 통계, 구금시설 관련 진정의 유형별 사례 및 위원회 결정문, 개선된 업무내용 등 면전진정 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상담센터 엮음/259쪽

인권상담사례집

엮은이 _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펴낸날 _ 2004년 11월

펴낸이 _ 김 창 국

펴낸곳 _ 국가인권위원회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 02-2125-9700)

홈페이지 _ <http://www.humanrights.go.kr>

디자인 _ 대한문화사 (☎ 02-2268-045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사례집

2004

인권상담 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센터에는 오로지 '인권'만을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4

인권사담 년년오모 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담센터

『인권상담사례집』을 펴내며

『시대의 자화상, 삶의 희망』



얼마 전 육상청소년대표를 지낸 한 여학생의 어머니께서 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분은 사정이 넉넉지 못해 고민 끝에 기숙사가 있는 서울지역의 고등학교로 딸을 진학시켰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그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천에서 초·중등과정을 마쳤으므로 서울대표로는 출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우리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상담원은 전국체전이 열리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우선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결국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여학생은 전국체전에 서울대표로 출전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에는 5만 건이 넘는 진정, 상담, 안내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접수된 5만여 건의 진정, 상담 등은 그 하나하나의 경우가 한결같이 당사자들에게는 절박하고 애달픈 사연들이었습니다. 인권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인권상담은 우선 사건 접수의 첫 단계이지만, 동시에 이 단계는 우리 사회가 무슨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사례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상담사례집』을 엮어내고자 하는 취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곳에 수록된 상담 사례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인권과 관련해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상담사례집』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된 상담사례를 가급적 풍부하게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많은 사례들은 또한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이 전무하다시피 하였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버팀목이자 희망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권상담사례집』은 그동안 접수된 사례들을 통해 인권상담의 현주소를 드러내어 그 극복의 지평을 찾아가고자 하는 첫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인권상담사례집』이 위원회의 업무와 인권상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인권상담의 지침과 과제를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리국

이 책의 구성

1. 인권상담의 현재와 향후 과제



인권상담센터와 인권상담의 성격, 인권상담 상담자의 역할, 인권상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2.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인권상담의 내용별, 기관별, 내담자별 통계를 제시하여 인권 상담의 현황과 추이를 알기 쉽게 제시 하였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중 전형적이거나 빈번히 접수되는 사례, 위원회 권고와 유사한 사례,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사례를 선별하여 상담내용과 답변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각 상담사례에는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규정, 위원회 발간 보고서, 유사사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대법원 판례, 현재 결정, 관련 언론보도 등의 참고 자료도 함께 실었습니다.

4. 부록



인권상담센터에서 격주로 열고 있는 상담사례연구모임에서 발표된 자료 중 몇 가지를 선별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상담·진정 방법 및 업무 흐름도를 제시하였고, 인권상담센터에서 활용하는 안내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읽기 전에....

1. 이 책에서는 원칙적으로 2001년 11월 26일 출범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상담 중,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고 상담종결한 7,087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 이 책의 전 제작과정은 인권상담센터의 직원과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된 **[인권상담사례집 발간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3. 이 책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인권위법', 인권상담센터를 '상담센터' 등의 약어로 표기하였습니다.

글 사례

- ◆ 『인권상담사례집』을 펴내며.....
-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 ◆ 글 차례

I. 인권상담의 연개와 향후 과제 · 9

II.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17

1. 상담처리 결과 · 18
2.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18
3. 인권침해 상담 · 20
 - 1) 기관별 현황 · 20
 - 2) 내용별 현황 · 21
4. 차별 상담 · 23
 - 1) 차별행위 주체 · 23
 - 2) 차별 사유 · 24
 - 3) 차별 영역 · 25
5. 기타 상담 · 27
6. 내담자별 현황 · 28
 - 1) 지역별 내담자 분포 · 28
 - 2) 내담자 성별 분포 · 29
 - 3) 내담자 연령별 분포 · 30
 - 3) 외국인 내담자 분포 · 31
7. 시간대별 상담 현황 · 33
8. 상담 소요시간 · 34

CONTENTS

III.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37

1. 인권침해 상담 · 38
 - 사례1 -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임의동행 · 39
 - 사례2 - 경찰의 폭행 · 50
 - 사례3 - 경찰의 알몸 신체수색 · 55
 - 사례4 - 경찰의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의 지문확인 강요 · 62
 - 사례5 -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 69
 - 사례6 - 검찰의 부당한 수사 · 74
 - 사례7 - 검찰의 함정수사 · 78
 - 사례8 - 검찰의 피의자 진술거부권 미고지 · 82
 - 사례9 - 검찰의 접견 금지 · 87
 - 사례10 - 검찰의 피의자 의료권 제한 · 92
 - 사례11 - 검찰의 제보자 신상정보 공개 · 101
 - 사례12 - 공립학교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109
 - 사례13 - 법무부의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 113
 - 사례14 - 구금시설의 부적절한 의료 · 117
 - 사례15 - 구금시설의 인권위 진정방해 · 122
 - 사례16 - 구금시설의 사슬을 이용한 장기간의 징벌 및 폭행 · 129
 - 사례17 - 정신병원의 편법적인 순환입원 · 135
 - 사례18 - 군대 내 구타와 헌병대의 수사미진 · 146
 - 사례19 - 군대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 151
2. 차별 상담 · 157
 - 사례20 - 정신지체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에서의 차별 · 158
 - 사례21 -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 및 퇴직금 지급차별 · 162
 - 사례22 - 입양기관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 거부 · 168
 - 사례23 - 기업의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채용 거부 · 173
 - 사례24 - 병원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거부 · 178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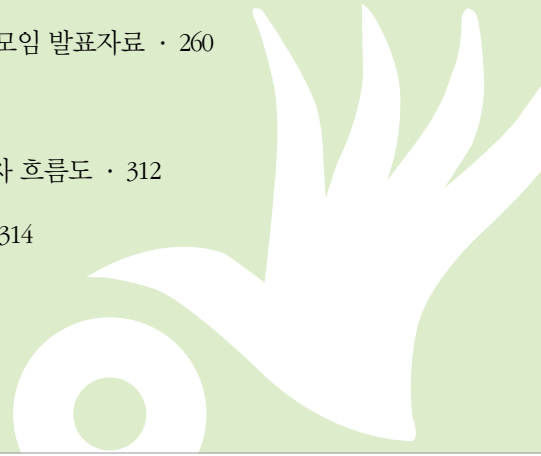
- 사례25 - 정부 산하기관의 성희롱 피해자 해고 · 183
- 사례26 - 교원임용고시 응시연령 제한 · 191
- 사례27 -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군부대 출입 거부 · 199
- 사례28 - 백화점 여성 판매사원에 대한 안경 착용 금지 · 206
- 사례29 - 이혼 여성에 대한 사직 권고 · 211
- 사례30 -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고소접수 거부 · 216
- 사례31 -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 회장 입후보 제한 · 221
- 사례32 -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흡연자 차별 · 226

3. 기타 상담 · 233

- 사례33 - 이혼판결에 대한 불만 등 · 234
- 사례34 -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 237
- 사례35 - 공중목욕탕 내 CCTV 설치의 위법여부 문의 · 247
- 사례36 - 위성, 레이더 등을 이용한 감시 및 통제 · 255

IV. 부록 · 259

- 1. 인권상담센터 정례 사례연구모임 발표자료 · 260
- 2. 안내기관 · 305
- 3.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절차 흐름도 · 312
- 4. 경로별 상담 및 진정 방법 · 314



I. 인권상담의 현재와 향후 과제



I · 인권상담의 현재와 향후 과제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III ·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IV · 부록

I. 인권상담의 현재와 향후 과제

1. 인권상담센터의 성격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앞서 국내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진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 관계부처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려 하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인권단체의 주장의 핵심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였으며, 이를 얻기 위해 정부와 인권단체간에는 3년간의 논란이 지속되었다.

오랜 시간의 마찰 끝에 2001년, 결국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가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면서 입법, 행정, 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최초의 독립기관이라는 점, 인권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분명한 지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고 조직하기 위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정일인 11월 25일을 불과 3개월 남긴 시점에서야 조직구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이 꾸려진 것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기획단에 주어진 주요과제 중 하나는 인권위법시행령안과 인권위 사무처 조직과 관련한 직제령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인권위법이 그 입법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기획단에서는 국내외 유사기관의 조직에 대한 조사,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회의가 이뤄

지고 조직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갔다.

기획단이 자체적으로 추출한 업무분석에 의한 직제 및 정원조차도 관련부처와의 견해 차이로 인해 최종적인 직제령이 나오기까지 또 다시 몇 개월이 소모되었다.

그러나, 기획단은 일관되게 인권위의 특수한 기능과 역할을 주장하면서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시킬 곳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부서를 ‘신고센터’, ‘접수센터’, ‘민원실’ 등으로 검토하였는데, 적어도 인권위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받거나, 고압적 혹은 경직된 태도나 방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해 위축되고, 맘 편히 그리고 충분히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하소연할 수조차 없었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얘기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의미를 살려 ‘인권상담센터’로 그 명칭을 정하였다.

2. 인권상담

위원회 설립 혹은 사무처 발족 직후 인권상담이란 사실상 맨손으로 땅을 고르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보다 앞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주로 서면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 받고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상담부서나 상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삼을 만한 외국의 인권상담 관련 사례는 거의 부재한 상태였다.¹⁾

결국 진정접수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만이 정해져 있을 뿐, 진정을 접수하기까지의 절차, 혹은 접수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상담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무처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조사,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구체적 기준과 준거를 갖지 못한 채 인권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 외국 국가인권기구 중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둔 경우로는 영국의 장애인권리위원회(DRC)가 있다. DRC는 Helpline(도우미 전화)을 두어 2000년 4월 이후 연간 65,000건의 상담, 안내를 받으며 Helpline으로 들어온 사안 중 10% 미만만이 Caseworker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처 구성을 전후로 한동안 상담과 안내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인권상담’ 서비스의 범주와 정체성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였을 뿐 아니라 인권위법이 정하고 있는 개별 사항에 대한 상이한 해석, 개념의 불명확성 등은 상담자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불확실’과 ‘혼란’이라는 상황은 상담자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사례를 검토·연구하고, 인권상담의 틀과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기에 그동안 인권상담과 관련한 지식과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인권상담과 상담자

‘인권’은 그 영역이 다양하고 확장 가능한 개념인 만큼 인권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상담’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인권상담에서의 주요 요소와 상담자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권상담의 의미를 대신하고자 한다.

가. 길잡이와 정보제공자

첫째, 인권상담은 인권위의 조사대상과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즉 억울한 일이나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해결방법을 모르는 경우, 혹은 모든 방법과 절차를 거쳤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권위를 찾는 경우에 대해 상담자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진정접수,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준다. 이때 상담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내담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

여기서 주어지는 과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로서의 인권과 실정법상, 특히 인권위법상 권리구제의 대상으로 정한 인권영역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에 어떻게 부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내담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권리구제의 영역이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받

아들이기 보다는 불만을 표하거나 때로는 거센 항의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내담자에게 설명과 설득을 통해 인권위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을 안내하거나 내담자와 함께 가능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상담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나. 갈등해소와 중간자(중재자)

둘째, 인권상담 과정에서의 공감적 청취²⁾는 여타의 상담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합법적인 구제나 회복을 위해 다시 공권력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해를 얻지 못하거나 충분히 자신을 대변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분노와 상실감을 더욱 증폭하여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해소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인권상담은 권리구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일부는 상담과정 중 분노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보다 면밀할 조사를 통해 갈등해결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때 상담자는 갈등당사자간의 중간자/중재자, 그리고 내담자(피해자)와 조사자의 중간자로서 내담자의 피해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정리하여 조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다. 발굴과 모니터링

넷째, 인권상담은 그 자체로서 학습과 발굴, 감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통해 과거에 존재했던, 그리고 현재에도 지속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알게 된다. 때로는 내담자조차 간과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인권침해나 차별문제를 상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내담자가 설명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담자는 중요한 정책적, 제도적 사안인 경우 적극적인 검토 및 발굴을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2) 공감적 청취, 혹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이들의 말을 모두 수용한다거나 모두 옳다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에 서야한다는 것이다. 즉 약자의 대항점에 있는 대상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양자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해 (심리적, 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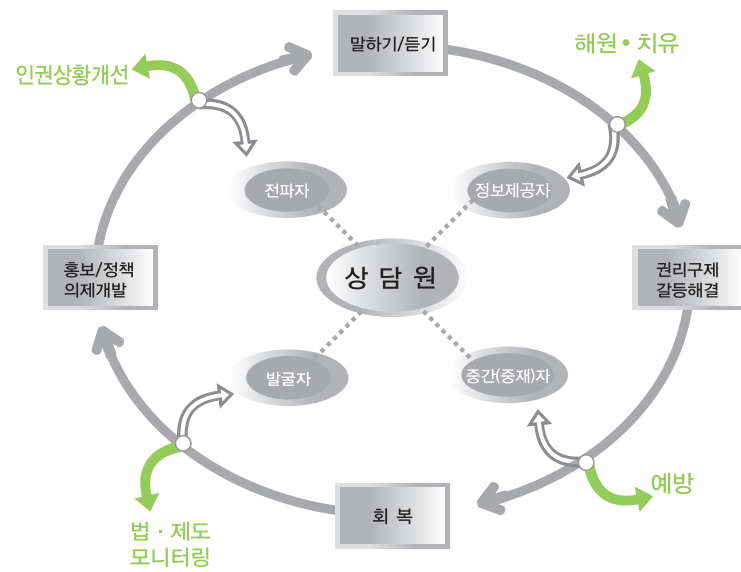
- I · 인권제도와 인권상담의 과정
-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III ·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IV · 부록

특히 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상담과 진정을 접수하는 면진진정제도를 통해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보다 밀착하여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모니터링 체제를 활용하여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라. 파수꾼과 교육자

다섯 번째, 인권위의 활동이나 주요 권고사안인 경우는 특정 시기에 대중매체를 통해 다수에게 일시에 알려짐으로써 인권상황의 개선 방향, 의미 등이 전달되는 반면, 상담의 경우는 개별 내담자를 통해 인권위의 역할, ‘권고’ 등이 갖는 의미 등이 전달됨으로써 일상적인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권상담은 인권에 대한 홍보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서 인권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인권위에서의 인권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경청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의 회복과 심리적 회복을 도모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담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 관행을 발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제공자, 중간자/중재자, 발굴자, 전파자로서 상호 교차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상담자를 통해 회복과 구제, 발굴과 홍보, 교육이라는 다층적인 인권상담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4. 인권상담의 성과와 과제

지난 3년간의 인권상담의 성과는 비단 5만여 건이 넘는 상담, 진정, 안내건수라는 양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수 많은 민원 건수로 인권위가 갖는 대국민적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상담이라는 불모지를 개척하여 상담의 영역을 점차 확장, 개발해 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 개인의 구제나 상담자 개인의 상담기법 향상을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경험의 축적과 나눔을 지향해온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세밀한 상담기록의 작성과 이에 대한 상담자 상호간 수퍼비전,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책자의 발간은 자칫 소모적으로 여겨지거나 관행에 빠지기 쉬운 영역에 대해 기준과 준거를 제시하고 인권상담의 도약을 위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보다 인권의 개념에 근접한 평화적인 권리구제와 갈등해결의 방식은 무엇인지, 인권위다운 권리구제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상담의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일 것이다. 또한 상담과 진정사건, 민원회신 등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못한 정책과제의 조기 발견과 적극 발굴 또한 우리가 천착해야 할 영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상담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인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강아지똥

권 정 생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돌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빛 쬐어 주시기 때문이야”
“그래에.... 그렇구나.....”
강아지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가지 꼭 필요한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똥을 봤어요.
“.....”
“네가 거름이 돼 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똥은 얼마나 기뻐던지 민들레 싹을 힘껏 꺾어 버렸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똥은 온 몸이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II.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1. 상담처리 결과
- 2.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3. 인권침해 상담
- 4. 차별 상담
- 5. 기타 상담
- 6. 내담자별 현황
- 7. 시간대별 상담 현황
- 8. 상담 소요시간



I · 인권상담의
현재와향후
과제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III ·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IV · 부록

II.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상담처리 결과

상담처리 결과는 크게 상담종결, 타기관 안내, 진정 예정, 재상담 예정, 진정접수,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상담종결 사례수는 3,799건으로 총 상담사례 7,605건 중 50.0%, 타기관 안내는 1,114건으로 14.6%를 차지하였다. 진정 예정은 총 1,269건으로 16.7%를 차지하였고 재상담 예정은 713건으로 9.4%를 차지하였다. 상담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진정을 접수한 경우는 518건으로 총 상담 중 6.8%를 차지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192건의 경우는 상담도중에 전화가 끊기거나 내담자가 자리를 뜨는 등 상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상담처리 결과를 보면 상담 후 바로 진정 접수하는 경우와 진정 예정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상담 예정의 경우 다소 감소하고 있어 당해 상담의 완결성이 계속하여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상담경로 및 유형별 분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는 2,805건으로 전체 상담사례의 39.6%, 차별 관련 상담사례는 598건으로 8.4%인 반면 인권침해나 차별 범주를 벗어난 기타 상담사례는 3,684건으로 52.0%를 차지하였다. 접수경로별 상담유형을 보면 대면상담과 전화상담 모두 차별행위보다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이 많았고 기타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보다는 대면상담의 비율이 높았다.

상담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처리유형	처 리 이 유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합 계		348(100.0)	2,528(100.0)	4,729(100.0)	7,605(100.0)
상담종결	소 계	205(58.9)	1,217(48.1)	2,377(50.3)	3,799(50.0)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14	439	851	1,404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23	139	179	341
	진술내용의 현실성, 신빙성 결여	14	110	254	378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함	12	116	344	472
	조사가능기간 도과	20	87	83	190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됨	2	46	235	283
	이미 진정한 사건에 대한 상담	-	42	209	251
	구체적 주장내용 없음	5	22	48	75
	기타	15	216	174	405
타기관 안내	소 계	36(10.3)	466(18.4)	612(12.9)	1,114(14.6)
	보다 적절한 기관 안내	36	453	523	1,013
	내담자가 타기관을 문의	-	9	74	83
	기타	-	4	15	18
진정 예정	소 계	42(12.1)	333(13.2)	894(18.9)	1,269(16.7)
	우편,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진정 예정	39	231	390	660
	고려 후에 진정 예정	-	34	112	146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진정 예정	-	23	233	256
	조사대상은 아니나 내담자가 원함	2	10	44	56
	사건의 추이를 보고 진정 예정	-	9	61	70
	재상담 후에 진정 예정	1	9	32	42
	기타	-	17	22	39
	재상담 예정	소 계	62(17.8)	247(9.8)	404(8.6)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예정		42	111	94	247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담 예정		9	35	67	111
사건의 추이를 보고 다시 상담 예정		6	31	133	170
내담자가 계속 상담을 원함		5	29	78	112
상담시간의 부족 또는 과다로 재상담 예정		-	8	7	15
기타		-	33	25	58
상담 후 진정 접수	소 계	3(0.9)	169(6.7)	346(7.3)	518(6.8)
	조사대상은 아니나 내담자가 강력하게 원함	2	67	72	141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건	-	77	168	245
	조사대상인지 불분명하나 위원회의 판단을 원함	1	19	82	102
	제도개선 등	-	5	15	20
	기타	-	1	9	10
기 타	소 계	-	96(3.8)	96(2.0)	192(2.5)
	상담도중 전화 끊김	-	49	69	118
	조사담당자 안내	-	8	2	10
	상담도중 내담자가 자리를 뜬	-	2	3	5
	기타	-	37	22	59

- I · 인권침해와 상담의 과정
-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III ·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IV · 부록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계	대면	전화	계	대면	전화	계	대면	전화	인터넷	계	대면	전화	인터넷
계	345 (100.0)	121 (100.0)	224 (100.0)	2,359 (100.0)	468 (100.0)	1,891 (100.0)	4,383 (100.0)	890 (100.0)	3,487 (100.0)	6 (100.0)	7,087 (100.0)	1,479 (100.0)	5,602 (100.0)	6 (100.0)
인권 침해	117 (33.9)	38 (31.4)	79 (35.3)	922 (39.1)	148 (31.6)	774 (40.9)	1,766 (40.3)	294 (33.0)	1,471 (42.2)	1 (16.7)	2,805 (39.6)	480 (32.5)	2,324 (41.5)	1 (16.7)
차별	23 (6.7)	7 (5.8)	16 (7.1)	180 (7.6)	37 (7.9)	143 (7.6)	395 (9.0)	63 (7.1)	332 (9.5)	-	598 (8.4)	107 (7.2)	491 (8.8)	-
기타	205 (59.4)	76 (62.8)	129 (57.6)	1,257 (53.3)	283 (60.5)	974 (51.5)	2,222 (50.7)	533 (59.9)	1,684 (48.3)	5 (83.3)	3,684 (52.0)	892 (60.3)	2,787 (49.7)	5 (83.3)

3. 인권침해 상담

1) 기관별 분류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의 경우 경찰과 관련한 것이 1,164건(4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검찰이 440건(15.7%)이었다. 또한 중앙 행정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 기타 국가기관³⁾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19건(15.0%), 172건(6.2%)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에는 경찰이 442건으로 전체 상담사례 중 47.9%를 차지하며 2001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가 2003년에는 676건으로 전체 상담사례 중 차지하는 비율이 38.3%로 감소하였으며 검찰의 경우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타 국가기관의 경우 2001년과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3) 기타국가기관은 수사기관, 구금시설, 군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개별공공법인,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 정부투자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정부조직법상의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해당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인권침해상담의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117(100.0)	922(100.0)	1,766(100.0)	2,805(100.0)
검찰	23(19.7)	148 (16.1)	269(15.2)	440(15.7)
경찰	46(39.3)	442 (47.9)	676(38.3)	1,164(41.5)
국가정보원	1(0.9)	9 (1.0)	18(1.0)	28(1.0)
특별사법경찰관리	-	2 (0.2)	7(0.4)	9(0.3)
지방자치단체	8(6.8)	35 (3.8)	129(7.3)	172(6.2)
사법기관	6(5.1)	17 (1.8)	39(2.2)	62(2.2)
기타 국가기관	13(11.1)	93(10.1)	313(17.7)	419(15.0)
구금시설	2(1.7)	84 (9.1)	104(5.9)	190(6.8)
보호시설	-	1 (0.1)	3(0.2)	4(0.1)
다수인보호시설	5(4.3)	42 (4.6)	117(6.6)	164(5.9)
군검찰	-	3 (0.3)	9(0.5)	12(0.4)
군헌병	-	2 (0.2)	6(0.3)	8(0.3)
국군기무사령부	-	2 (0.2)	-	2
군구금시설	-	-	1(0.1)	1
기타 군 관련 기관	13(11.1)	42 (4.6)	75(4.2)	130(4.6)

2) 내용별 분류

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분석하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검찰,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수사관)의 경우 ①편파, 불공정 수사 ②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혹은 장구 사용 ③과도한 신체검사, 욕설 등 인격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①위법, 부당한 처분 ②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③행정, 제도개선에 대한 상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구금·보호시설과 관련한 상담내용으로는 ①의료조치 미흡 ②폭행, 가혹행위 ③부당처우에 대한 것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는 ①강제수용 ②폭행, 가혹행위 ③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단위: 건(%)

처리유형	연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합계	117(100.0)	922(100.0)	1,766(100.0)	2,805(100.0)
	소계	70(59.8)	608(65.9)	985(55.8)	1,663(59.3)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불심검문, 부당압수·수색·검열·도감청, 과잉진압	-	32	55	87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7	117	197	321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6	72	98	176
	편파, 불공정 수사	43	252	369	664
	불법 체포, 임의동행, 부당감금	-	44	59	103
	합정수사, 부당·강압 증거확보	1	24	29	54
	피의자 권리 미고지, 가족에 미통지	-	2	11	13
	접견·교통권 제한	-	2	3	5
	알권리 침해	2	5	16	23
	공소권 남용	6	14	32	52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과기록 미삭제	-	2	9	11
	부당한 사건분류	1	4	15	20
	피의사실 유포	-	2	7	9
	의료권 방해·제한	-	2	12	14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2	9	11	22
	기타	2	25	62	89
	소계	27(23.1)	145(15.7)	481(27.2)	653(23.3)
	위법, 부당한 처분	8	33	106	147
	부적위 등 소극적 처분	5	17	54	76
	폭행, 가혹행위	-	6	34	40
인격권 침해	6	17	78	101	
사생활 비밀 침해	1	13	45	59	
알권리 침해	1	9	13	23	
공무원 부당 처우	-	4	14	18	
행정, 제도개선	5	23	68	96	
출입국 제한	-	11	33	44	
기타	1	12	36	49	
소계	2(1.7)	85(9.2)	108(6.1)	195(7.0)	
구금·보호시설 (군구금시설 포함)	의료조치 미흡	-	29	37	66
	권리구제절차 제한	-	8	6	14
	서신 집필 제한	-	3	6	9
	부당한 조사, 징벌	-	10	7	17
	폭행, 가혹행위	1	19	21	41
	부당처우	-	11	19	31
	기타	1	5	12	18
소계	5(4.3)	42(4.6)	117(6.6)	164(5.8)	
다수인 보호시설	강제수용	2	16	58	76
	폭행, 가혹행위	-	14	29	43
	외부교통권 제한	1	6	8	15
	의료조치 미흡	1	3	5	9
	강제노동	1	4	2	7
	인격권 침해	-	1	7	8
	시설, 환경문제	-	2	2	4
기타	-	1	8	9	
소계	13(11.1)	42(4.6)	75(4.2)	130(4.6)	
군사기관 (군수사기관, 군구금시설 제외)	생명권 침해	1	16	14	31
	폭행, 가혹행위	2	3	26	31
	인격권 침해	1	0	1	2
	의료조치 미흡	1	5	7	13
	불합리한 행정제도	5	10	10	25
기타	3	8	17	28	

군부대 등 군사기관과 관련한 상담은 ①폭행, 가혹행위 ②생명권 침해 ③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관한 것이 다수를 차지했다.

4. 차별 상담

1) 차별행위 주체

차별행위와 관련된 상담은 국가기관의 평등권 침해와 관련한 차별문제를 상담한 경우가 53.7%로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사례(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차별에 대한 상담은 9.0%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차별상담의 특징은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사례는 계속하여 감소한 반면, 법인·단체·사인 등에 의한 차별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교육기관에 의한 차별 상담 역시 계속 증가한 점이다.

차별행위 주체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계	23(100.0)	180(100.0)	395(100.0)	598(100.0)	
국가기관	소계	18(78.3)	118(65.6)	185(46.8)	321(53.7)
	검찰/경찰	12(52.3)	77(42.8)	73(18.5)	162(27.1)
	구금시설	-	-	1(0.3)	1(0.2)
	군대	-	1(0.6)	7(1.8)	8(1.3)
	기타국가기관	4(17.4)	34(18.9)	86(21.8)	124(20.7)
	지방자치단체	2(8.7)	6(3.3)	15(3.8)	23(3.9)
	보호시설	-	-	3(0.8)	3(0.5)
법인/단체/사인 등	소계	5(21.7)	53(29.4)	165(41.8)	223(37.3)
	법인	3(13.0)	43(23.9)	125(31.7)	171(28.6)
	개인회사	-	3(1.7)	17(4.3)	20(3.4)
	단체	1(4.3)	2(1.1)	6(1.5)	9(1.5)
사인	1(4.3)	5(2.8)	17(4.3)	23(3.8)	
교육기관	소계	-	9(5.0)	45(11.4)	54(9.0)

I · 인권침해 상담의 유형과 과제

II · 통계로 보는 인권침해 상담

III · 사례로 보는 인권침해 상담

IV · 부록

2) 차별 사유

차별 상담의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차별사유	국가기관(%)				법인/단체/사인(%)				교육기관(%)			
	2001년	2002년	2003년	소계	2001년	2002년	2003년	소계	2001년	2002년	2003년	소계
계	18 (100.0)	118 (100.0)	185 (100.0)	321 (100.0)	5 (100.0)	53 (100.0)	165 (100.0)	223 (100.0)	-	9 (100.0)	45 (100.0)	54 (100.0)
장애	-	6 (5.1)	17 (9.2)	23 (7.2)	1 (20.0)	10 (19.0)	28 (17.0)	39 (17.5)	-	2 (22.2)	4 (8.9)	6 (11.1)
사회적 신분	2 (11.2)	9 (7.6)	31 (16.8)	42 (13.1)	2 (40.0)	9 (17.0)	36 (21.8)	47 (21.1)	-	1 (11.2)	10 (22.2)	11 (20.3)
출신국가	1 (5.5)	6 (5.1)	13 (7.0)	20 (6.3)	-	6 (11.3)	12 (7.4)	18 (8.1)	-	-	-	-
병력	1 (5.5)	4 (3.3)	3 (1.6)	8 (2.5)	1 (20.0)	3 (5.7)	9 (5.5)	13 (5.8)	-	-	1 (2.2)	1 (1.9)
성별	1 (5.5)	-	5 (2.7)	6 (1.9)	-	6 (11.3)	17 (10.3)	23 (10.3)	-	-	4 (8.9)	4 (7.4)
나이	-	3 (2.5)	13 (7.0)	16 (5.0)	-	2 (3.7)	16 (9.7)	18 (8.1)	-	-	4 (8.9)	4 (7.4)
출신지역	-	-	6 (3.3)	6 (1.9)	-	2 (3.7)	1 (0.6)	3 (1.3)	-	-	-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4 (3.3)	4 (2.2)	8 (2.5)	-	3 (5.7)	3 (1.8)	6 (2.7)	-	-	-	-
용모 등 신체적 조건	-	1 (0.9)	-	1 (0.3)	-	1 (1.9)	6 (3.6)	7 (3.1)	-	-	-	-
혼인 여부	-	-	1 (0.5)	1 (0.3)	-	2 (3.7)	3 (1.8)	5 (2.3)	-	-	-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1 (5.5)	1 (0.9)	1 (0.5)	3 (0.9)	-	1 (1.9)	4 (2.4)	5 (2.3)	-	-	1 (2.2)	1 (1.9)
종교	-	1 (0.9)	1 (0.5)	2 (0.6)	-	-	-	-	-	2 (22.2)	3 (6.7)	5 (9.2)
가족상황	-	-	-	-	-	1 (1.9)	1 (0.6)	2 (0.9)	-	-	-	-
성적 지향	-	1 (0.9)	-	1 (0.3)	-	-	1 (0.6)	1 (0.4)	-	-	-	-
출신민족	-	-	2 (1.1)	2 (0.6)	-	-	-	-	-	-	-	-
임신 또는 출산 여부	-	-	2 (1.1)	2 (0.6)	-	-	1 (0.6)	1 (0.4)	-	-	1 (2.2)	1 (1.9)
인종	-	-	-	-	-	-	-	-	-	-	1 (2.2)	1 (1.9)
피부색	-	-	-	-	-	-	-	-	-	-	-	-
학력, 학벌	-	1 (0.9)	3 (1.6)	4 (1.2)	-	-	6 (3.6)	6 (2.7)	-	-	4 (8.9)	4 (7.4)
기타	12 (66.8)	81 (68.6)	83 (44.9)	176 (54.8)	1 (20.0)	7 (13.2)	21 (12.1)	29 (13.0)	-	4 (44.4)	12 (26.7)	16 (29.6)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와는 달리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해 그 사유와 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편의상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함.

경찰, 검찰, 구급·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사례의 경우 총 321건 중 54.8%에 해당하는 176건이 기타사유에 해당되었으며 여기에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구급·보호시설 내 부당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42건으로 13.1%를 차지했으며 장애,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이 각각 7.2%, 6.3%를 차지하였다. 특히 2003년도는 2002년도에 비해 국가기관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에서 16.8%로 증가하였다.

법인·단체·사인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47건(21.1%), 장애에 의한 차별이 39건(17.5%), 성별에 의한 차별이 23건(10.3%)이었으며 국가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차별사유 중 기타로 분류된 29건(13.0%)은 주로 내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었다.

교육기관에 의한 차별사례는 해마다 상담건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차별사유가 좀더 다양해졌는데 이 역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11건(2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에 의한 차별이 6건(11.1%)이며, 성별, 나이,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을 상담한 사례가 각각 4건(7.4%)씩 있었다.

3) 차별 영역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상담 사례 총 321건 중 76건(23.7%)이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로 모집과정과 채용, 업무배치의 차별에 대한 상담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차별행위와 시설 등 이용에서의 차별행위는 각각 37건(11.5%), 5건(1.6%)이었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차별영역 중 기타 영역이 6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표에 열거한 차별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주로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리했다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모욕적·차별적 언행 등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국가기관의 경우 2002년에 비해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에 대한 차별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한 반면, 기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법인·단체·사인의 경우 고용에서의 차별이 158건(7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해고 및 채용과 관련된 차별 상담이 가장 많았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차별과 시설 등 이용에서의 차별에 대한 상담은 각각 44건(19.7%), 3건(1.3%)으로

차별 상담의 영역별 현황

단위 : 건(%)

차별영역	차별주체	국가기관				법인/단체/사인				교육기관			
		2001년	2002년	2003년	소계	2001년	2002년	2003년	소계	2001년	2002년	2003년	소계
고 용	계	18 (100.0)	118 (100.0)	185 (100.0)	321 (100.0)	5 (100.0)	53 (100.0)	165 (100.0)	223 (100.0)	-	9 (100.0)	45 (100.0)	54 (100.0)
	소계	-	20 (17.0)	56 (30.3)	76 (23.7)	3 (60.0)	34 (64.1)	121 (72.7)	158 (70.9)	-	5 (56.0)	29 (64.5)	34 (63.0)
	모집	-	3	14	17	-	2	8	10	-	-	4	4
	채용	-	9	10	19	1	8	26	35	-	-	1	1
	교육	-	-	-	-	-	-	1	1	-	-	2	2
	배치	-	2	8	10	-	5	12	17	-	1	5	6
	승진	-	1	6	7	-	3	4	7	-	2	5	7
	임금지급	-	1	4	5	-	9	18	27	-	-	1	1
	임금 외 금품지급	-	1	2	3	-	-	3	3	-	-	2	2
	자금융자	-	-	-	-	-	-	-	-	-	-	-	-
	정년	-	-	-	-	-	-	1	1	-	-	-	-
	퇴직	-	2	4	6	-	1	7	8	-	-	-	-
	해고	-	1	2	3	1	3	32	36	-	-	9	9
기타	-	-	6	6	1	3	9	13	-	2	-	2	
재화 / 용역 등의 공급·이용	소계	4 (22.2)	8 (6.8)	25 (13.5)	37 (11.5)	2 (40.0)	11 (20.8)	31 (18.8)	44 (19.7)	-	-	2 (4.4)	2 (3.7)
	재화	1	4	18	23	2	11	24	37	-	-	2	2
	용역	2	2	3	7	-	-	3	3	-	-	-	-
	교통수단	-	1	3	4	-	-	2	2	-	-	-	-
	상업시설	-	-	1	1	-	-	2	2	-	-	-	-
	토지	1	-	-	1	-	-	-	-	-	-	-	-
	주거시설	-	1	-	1	-	-	-	-	-	-	-	-
시설 등 이용	소계	-	1 (0.8)	4 (2.2)	5 (1.6)	-	-	3 (1.8)	3 (1.3)	-	4 (44.0)	10 (22.2)	14 (25.9)
	교육시설	-	1	4	5	-	-	3	3	-	4	9	13
	직업훈련 기관	-	-	-	-	-	-	-	-	-	1	1	
기 타	소계	14 (77.8)	89 (75.4)	100 (54.0)	203 (63.2)	-	8 (15.1)	10 (6.7)	18 (8.1)	-	-	4 (8.9)	4 (7.4)

나타났으며 2003년도 들어 고용영역에서 차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교육기관의 경우는 고용에 대한 차별행위가 34건으로 63.0%를 차지하고,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이 14건으로 25.9%를 차지했다.

5. 기타 상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상담사례 3,684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 인간의 분쟁이나 폭행 등에 관련한 상담이 1,303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이 337건(9.1%), 법률 문의가 267건(7.2%), 재판지연, 부당한 재판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이 243건(6.6%)이었으며 법령·제도 개선 요구와 국가기관에 의한 기타 침해가 각각 195건(5.3%), 180건(4.9%)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151건(4.1%), 위원회 관련 제안, 업무 관련 문의가 각각 133건(3.6%), 98건(2.7%)을 차지했다. 그 밖에 주장 혹은 하소연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기타 상담사례로 처리하였다.

기타 상담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유 형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합 계	205(100.0)	1,257(100.0)	2,222(100.0)	3,684(100.0)
사 인간 인권침해	95(46.3)	471(37.5)	737(33.2)	1,303(35.4)
재산권	34(16.6)	100(8.0)	203(9.1)	337(9.1)
국가기관에 의한 기타 침해	15(7.3)	49(3.9)	116(5.2)	180(4.9)
법률문의	7(3.4)	102(8.1)	158(7.1)	267(7.2)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	18(8.8)	98(7.8)	127(5.7)	243(6.6)
법령제도개선 요구	6(2.9)	65(5.1)	124(5.6)	195(5.3)
위원회 업무에 대한 불만	-	48(3.8)	103(4.7)	151(4.1)
인권위 업무 문의	2(1.0)	45(3.6)	51(2.3)	98(2.7)
인권위 관련 제안	3(1.5)	34(2.7)	96(4.3)	133(3.6)
기 타	25(12.2)	245(19.5)	507(22.8)	777(21.1)

6. 내담자별 현황

1) 지역별 내담자 분포

내담자의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합계	345(100.0)	2,359(100.0)	4,383(100.0)	7,087(100.0)
서울	85(24.6)	340(14.4)	750(17.1)	1,175(16.6)
부산	6(1.7)	79(3.3)	181(4.1)	266(3.8)
대구	14(4.1)	28(1.2)	88(2.0)	130(1.8)
인천	9(2.6)	55(2.3)	143(3.3)	207(2.9)
광주	4(1.2)	25(1.1)	87(2.0)	116(1.6)
대전	8(2.3)	24(1.0)	69(1.6)	101(1.4)
울산	3(0.9)	11(0.5)	39(0.9)	53(0.7)
경기	60(17.4)	210(8.9)	487(11.1)	757(10.7)
강원	8(2.3)	35(1.5)	70(1.6)	113(1.6)
충북	14(4.1)	25(1.1)	59(1.3)	98(1.4)
충남	12(3.5)	30(1.3)	100(2.3)	142(2.0)
전북	10(2.9)	31(1.3)	86(2.0)	127(1.8)
전남	8(2.3)	41(1.7)	77(1.8)	126(1.8)
경북	9(2.6)	45(1.9)	81(1.8)	135(1.9)
경남	8(2.3)	47(2.0)	111(2.5)	166(2.3)
제주	2(0.6)	12(0.5)	26(0.6)	40(0.6)
미상	85(24.6)	1,321(6.0)	1,929(44.0)	3,335(47.1)

지역별 내담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즉, 인구분포가 높은 지역에서 내담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 지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전체 7,087건 중 절반에 가까운 3,335건(47.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신원 정보에 대해 밝히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내담자 성별 분포

내담자의 성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총 7,087건 중 남성이 5,394건으로 76.1%, 여성이 1,384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상담유형에 따른 성별은 인권침해의 경우 남성이 81.6%, 여성이 15.4%를 차지한 반면, 차별행위의 경우 남성이 73.9%, 여성이 22.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상담 전체적으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평등권 침해 등 차별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3년 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내담자의 성별 분포 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합계	인권 침해	차별	기타	합계	인권 침해	차별	기타	합계	인권 침해	차별	기타	합계	인권 침해	차별	기타
합계	345 (100.0)	117 (100.0)	23 (100.0)	205 (100.0)	2,359 (100.0)	922 (100.0)	180 (100.0)	1,257 (100.0)	4,383 (100.0)	1,766 (100.0)	395 (100.0)	2,222 (100.0)	7,087 (100.0)	2,805 (100.0)	598 (100.0)	3,684 (100.0)
남	282 (81.7)	101 (86.3)	19 (82.6)	162 (79.0)	1,972 (83.6)	784 (85.0)	158 (87.8)	1,030 (81.9)	3,140 (71.6)	1,404 (79.5)	265 (67.1)	1,471 (66.2)	5,394 (76.1)	2,289 (81.6)	442 (73.9)	2,663 (72.3)
여	58 (16.8)	13 (11.1)	4 (17.4)	41 (20.0)	337 (14.3)	125 (13.6)	20 (11.1)	192 (15.3)	989 (22.6)	294 (16.6)	109 (27.6)	586 (26.4)	1,384 (19.5)	432 (15.4)	133 (22.3)	819 (22.2)
미상	5 (1.5)	3 (2.6)	-	2 (1.0)	50 (2.1)	13 (1.4)	2 (1.1)	35 (2.8)	254 (5.8)	68 (3.9)	21 (5.3)	165 (7.4)	309 (4.4)	84 (3.0)	23 (3.8)	202 (5.5)

3) 내담자 연령별 분포

나이를 밝힌 내담자의 연령 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화상담의 경우 40대, 30대, 50대, 20대의 순으로 많은 반면, 대면상담은 60대, 50대, 40대, 30대의 순으로 많았고 인터넷 상담은 모두 10대와 20대에 분포하였다.

그러나 내담자의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전체 7,087건 중 91.6%인 6,494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지와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전체 내담자의 정확한 연령 분포를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내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합계	전화	대면	합계	전화	대면	합계	전화	대면	인터넷	합계	전화	대면	인터넷
합계	163 (100.0)	54 (100.0)	109 (100.0)	150 (100.0)	19 (100.0)	131 (100.0)	280 (100.0)	188 (100.0)	90 (100.0)	2 (100.0)	593 (100.0)	261 (100.0)	330 (100.0)	2 (100.0)
10대	1 (0.6)	1 (1.9)	-	-	-	-	1 (0.4)	1 (0.5)	-	-	2 (0.3)	2 (0.8)	-	-
20대	5 (3.1)	4 (7.4)	1 (0.9)	4 (2.7)	3 (15.8)	1 (0.7)	20 (7.1)	16 (8.5)	3 (3.3)	1 (50.0)	29 (1.9)	23 (8.8)	5 (1.5)	1 (50.0)
30대	23 (14.1)	13 (24.1)	10 (9.2)	19 (12.7)	6 (31.6)	13 (9.9)	62 (22.1)	49 (26.1)	12 (13.3)	1 (50.0)	104 (17.6)	68 (26.0)	35 (10.6)	1 (50.0)
40대	32 (19.6)	13 (24.1)	19 (17.4)	39 (26.0)	6 (31.6)	33 (25.2)	78 (27.8)	58 (30.8)	20 (22.2)	-	149 (25.2)	77 (29.5)	72 (21.8)	-
50대	34 (20.9)	12 (22.2)	22 (20.2)	40 (26.7)	3 (15.8)	37 (28.2)	73 (26.1)	49 (26.1)	24 (26.7)	-	147 (24.8)	64 (24.5)	83 (25.2)	-
60대	47 (28.9)	8 (14.8)	39 (35.8)	32 (21.3)	-	32 (24.4)	35 (12.5)	11 (5.9)	24 (26.7)	-	114 (19.2)	19 (7.3)	95 (28.8)	-
70대	18 (11.0)	3 (5.5)	15 (13.8)	14 (9.3)	1 (5.2)	13 (9.9)	8 (2.9)	4 (2.1)	4 (4.5)	-	40 (6.7)	8 (3.1)	32 (9.7)	-
80세 이상	3 (1.8)	-	3 (2.7)	2 (1.3)	-	2 (1.5)	3 (1.1)	-	3 (3.3)	-	8 (1.3)	-	8 (2.4)	-

4) 외국인 내담자 분포

가. 외국인 내담자 상담의 유형별 현황

내담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총 7,087건 중 2.4%에 해당하는 168건이었다. 외국인 상담 168건 중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상담은 63건(37.5%), 차별행위 상담은 20건(11.9%), 기타 상담은 85건(50.6%)로 나타났다.

외국인 내담자 상담의 인권침해 상담은 출입국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으며, 기타 상담은 회사에서의 임금 체불 문제 등 재산권과 관련한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내담자 상담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분류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합계	인권 침해	차별	기타	합계	인권 침해	차별	기타	합계	인권 침해	차별	기타	합계	인권 침해	차별	기타
건수	7 (100.0)	1 (14.3)	1 (14.3)	5 (71.4)	59 (100.0)	17 (28.8)	9 (15.3)	33 (55.9)	102 (100.0)	45 (44.1)	10 (9.8)	47 (46.1)	168 (100.0)	63 (37.5)	20 (11.9)	85 (50.6)

* 이 표는 내국인 내담자가 외국인의 문제에 대해 상담한 건은 포함되지 않음

나. 외국인 내담자 국적별 현황

내담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별 분포는 중국이 106건(6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5.9%), 방글라데시(5.3%), 파키스탄(3.5%)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혹은 미국 국적의 내담자의 대다수는 대한민국 동포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내담자 국적별 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합계	7(100.0)	59(100.0)	102(100.0)	168(100.0)
소계	7(100.0)	59(100.0)	102(100.0)	168(100.0)
네팔	-	-	1(1.0)	1(0.6)
인도	-	-	1(1.0)	1(0.6)
몽골	-	-	3(2.9)	3(1.8)
방글라데시	-	4(6.8)	5(4.9)	9(5.3)
요르단	-	-	1(1.0)	1(0.6)
일본	-	-	1(1.0)	1(0.6)
중국	6(1.7)	34(57.5)	66(64.6)	106(63.1)
파키스탄	-	3(5.1)	3(2.9)	6(3.5)
우즈베키스탄	1(0.3)	-	1(1.0)	2(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2(3.4)	-	2(1.2)
베트남	-	2(3.4)	-	2(1.2)
타이완	-	1(1.7)	-	1(0.6)
인도네시아	-	2(3.4)	-	2(1.2)
스리랑카	-	-	1(1.0)	1(0.6)
필리핀	-	3(5.1)	1(1.0)	4(2.4)
이란	-	-	1(1.0)	1(0.6)
소계	-	2(3.4)	3(2.9)	5(3.0)
나이지리아	-	1(1.7)	3	4(2.4)
가나	-	1(1.7)	-	1(0.6)
소계	-	3(5.1)	2(2.0)	5(3.0)
독일	-	1(1.7)	1	2(1.2)
러시아	-	2(3.4)	1	3(1.8)
소계	-	2(3.4)	11(10.8)	13(7.7)
미국	-	2(3.4)	8	10(5.9)
캐나다	-	-	3	3(1.8)
소계	-	1(1.7)	1(1.0)	2(1.2)

7. 시간대별 상담 현황

시간대별 상담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합계	전화	대면	합계	전화	대면	합계	전화	대면	인터넷	합계	전화	대면	인터넷
합계	345 (100.0)	224 (100.0)	121 (100.0)	2,359 (100.0)	1,891 (100.0)	468 (100.0)	4,383 (100.0)	3,487 (100.0)	890 (100.0)	6 (100.0)	7,087 (100.0)	5,602 (100.0)	1,479 (100.0)	6 (100.0)
09:00~10:00	44 (12.8)	39 (17.4)	5 (4.1)	290 (12.3)	267 (14.1)	23 (4.9)	639 (14.6)	567 (16.3)	72 (8.1)	-	973 (13.7)	873 (15.6)	100 (6.8)	-
10:01~11:00	55 (15.9)	50 (22.3)	5 (4.1)	348 (14.7)	319 (16.9)	29 (6.2)	700 (16.0)	576 (16.5)	123 (13.8)	1 (16.7)	1,103 (15.5)	945 (16.9)	157 (10.6)	1 (16.7)
11:01~12:00	107 (31.0)	40 (17.9)	67 (55.5)	460 (19.5)	333 (17.6)	127 (27.1)	532 (12.1)	450 (12.9)	82 (9.2)	-	1,099 (15.5)	823 (14.7)	276 (18.7)	-
12:01~13:00	13 (3.8)	9 (4.0)	4 (3.3)	165 (7.0)	135 (7.1)	30 (6.4)	283 (6.5)	233 (6.7)	50 (5.6)	-	461 (6.5)	377 (6.7)	84 (5.7)	-
13:01~14:00	38 (11.0)	29 (13.0)	9 (7.4)	238 (10.1)	175 (9.3)	63 (13.5)	615 (14.0)	441 (12.6)	174 (19.6)	-	891 (12.6)	645 (11.5)	246 (16.6)	-
14:01~15:00	32 (9.3)	22 (9.8)	10 (8.3)	260 (11.0)	204 (10.8)	56 (12.0)	587 (13.4)	433 (12.4)	153 (17.2)	1 (16.7)	879 (12.4)	659 (11.8)	219 (14.8)	1 (16.7)
15:01~16:00	27 (7.8)	18 (8.0)	9 (7.4)	275 (11.7)	205 (10.8)	70 (14.9)	553 (12.6)	418 (12.0)	131 (14.7)	4 (66.6)	855 (12.1)	641 (11.4)	210 (14.2)	4 (66.6)
16:01~17:00	24 (7.0)	15 (6.7)	9 (7.4)	228 (9.7)	178 (9.4)	50 (10.7)	383 (8.7)	304 (8.7)	79 (8.9)	-	635 (9.0)	497 (8.9)	138 (9.3)	-
17:01~18:00	5 (1.4)	2 (0.9)	3 (2.5)	95 (4.0)	75 (4.0)	20 (4.3)	91 (2.1)	65 (1.9)	26 (2.9)	-	191 (2.7)	142 (2.5)	49 (3.3)	-

상담을 접수받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2시까지였다. 또한 2003년까지 매년 11월~2월까지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적용해 상담접수 종료시간을 30분씩 앞당겨 실시하였다.

시간대별 상담건수를 분석해보면,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각 시간대에 10% 이상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전화상담은 오전 시간, 대면상담은 오후시간에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화상담의 경우 업무 시작 시간부터 많은 상담이 시작되는 반면, 대면상담은 업무 개시 약 1시간 후부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상담 소요시간

상담 소요시간 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2년			2002년		
	건수(건)	총시간	평균소요시간	건수(건)	총시간	평균소요시간	건수(건)	총시간	평균소요시간	건수(건)	총시간	평균소요시간
전화	224	8,774	39.2	1,891	45,025	23.8	3,487	146,682	42.1	5,602	200,481	35.8
대면	121	7,100	58.7	468	29,684	63.4	890	69,243	77.8	1,479	106,027	71.7
ITI	-	-	-	-	-	-	6	140	23.3	6	140	23.3
합계	345	15,874	46.0	2,359	74,709	31.7	4,383	216,065	49.3	7,087	306,648	43.3

상담 1회에 소요되는 평균 상담시간은 43.3분이며, 평균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담경로별 평균 소요시간은 대면상담이 71.7분으로 가장 길고, 전화상담이 35.8분, 인터넷 실시간 상담이 23.3분으로 나타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 호 승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들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밥은 누구나 다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만이 각자의 고픈 배를 채워줄 수가 있다.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시위현장의 점심시간은 문득 고요하고 평화롭다.
 황사바람 부는 거리에서 시위군중의 밥과 전경의 밥과 기자의 밥은 다르지 않았다.
 그 거리에서, 밥의 개별성과 보편성은 같은 것이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밥이 그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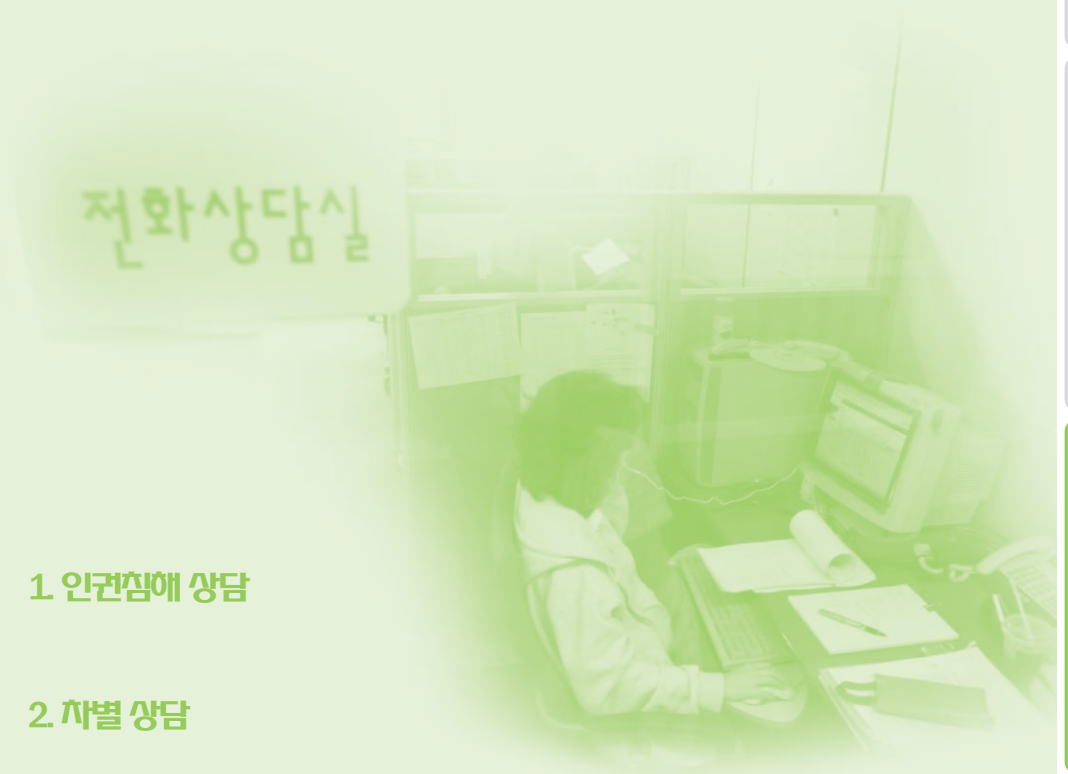
「'밥'에 대한 단상」 중에서. - 김 훈

Ⅲ.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1. 인권침해 상담

2. 차별 상담

3. 기타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상담

- 사례1 -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임의동행
- 사례2 - 경찰의 폭행
- 사례3 - 경찰의 알몸 신체수색
- 사례4 - 경찰의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의 지문확인 강요
- 사례5 -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 사례6 - 검찰의 부당한 수사

인권침해상담

- 사례7 - 검찰의 함정수사
- 사례8 - 검찰의 피의자 진술거부권 미고지
- 사례9 - 검찰의 접견 금지
- 사례10 - 검찰의 피의자 의료권 제한
- 사례11 - 검찰의 제보자 신상정보 공개
- 사례12 - 공립학교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사례13 - 법무부의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 사례14 - 구금시설의 부적절한 의료
- 사례15 - 구금시설의 인권위 진정방해

인권침해상담

- 사례16 - 구금시설의 사슬을 이용한 장기간의 징벌 및 폭행
- 사례17 - 정신병원의 편법적인 순환입원
- 사례18 - 군대 내 구타와 헌병대의 수사미진
- 사례19 - 군대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사례1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부당한 임의동행

상담번호 03-전상-0010173	상담날짜 2003.07.09.	상담시간 80분
--------------------	------------------	----------

상담요지

1차 상담 : 오늘 새벽 3시경 내담자와 친구는 ○○동 로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뒤에서 뛰어오더니 손을 뒤로 꺾으면서 “같이 가자”고 하였다. 내담자가 “무슨 일이나. 안 간다.”라고 하자, 내담자의 무릎을 발로 차며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신분증을 건네주자, 수갑을 채우더니 대질신문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교회로 내담자와 친구를 끌고 갔다. 경찰은 교회에 있던 A에게 “이 사람들로부터 소매치기를 당했느냐”고 물었고 “아니다”라고 하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풀어주었다. 내담자는 “소매치기 사건이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해도 되느냐”며 분노하였다.

2차 상담 : 1차 상담 후 내담자가 파출소 소장을 만나 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소장은 “저 사람들 옷 벗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였다. 내담자는 “소장의 사과를 받고 나니 진정할 마음이 없어졌다”며, 상담원에게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답변요지

1. 경찰이 불심검문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하였다.
2. 불심검문 과정에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행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면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설명하였다.
3. 위법한 임의동행에 대해서는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에 해당하므로 형사상으로 담당 경찰관을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위 사례 이외에 불심검문과 관련한 유사 상담사례는 다음과 같다.

I · 인권침해상담의
현제와 향후 과제

II · 통계로 보는 인권침해
현제

III · 사례 1 · 인권침해 · 경찰의
불심검문/임의동행

IV · 부록

A는 2003년 1월 ○○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신분증을 빼앗기고 몸수색을 당하였다. A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와 이름을 계속 요구하자 형사는 마지못해 이름을 가르쳐 주었는데, 나중에 파출소 직원을 통해 알아보니 거짓 이름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B는 2003년 1월 ○○역을 나오다 불심검문을 받았는데, 전경은 관등성명과 검문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B가 공무원증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경은 신분 조회까지 한 후 보내주었다.

C는 2003년 5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불심검문을 당하여 ○○지방경찰청에 문의하였더니, 불심검문은 용의자로 보이는 경우에만 행할 수 있고 일반인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는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D는 2003년 10월 ○○역에서 불심검문을 당하였는데, 제복을 입은 경찰이 다가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무슨 이유로 불심검문을 한다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였다. D가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자,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경찰서까지 같이 가든지 선택하라고 하였고, D는 하는 수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E는 3년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11월 ○○경찰서 경찰관 4~5명이 하루 2~3차례 찾아와 모든 손님들에게 과도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찰은 범법자와 기소중지자들을 색출하고자 불심검문을 한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손님들 대다수가 매우 불쾌해 하며 불심검문을 피해 PC방을 나가 버린다고 하였다.

F(유학생)는 불심검문 과정에서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검색을 강요당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⁴⁾에 의하면 불심검문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검문에 협조적인가에 대해서는 86.8%가 비교적 협조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찰의 적법절차준수와 관련하여 먼저 경찰관이 신분, 소속, 성명 등의 고지의무를 준수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북경찰관의 82.9%, 사북경찰관의 76%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77.5%가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지품 검사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1.4%가 요구받았는데 이중 23%는 강제적인 소지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1.9%가 소지품 검사를 할 때 수치심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또한 임의동행된 조사대상자의 31.6%에 대해서만 경찰이 직접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의동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는 78.9%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문날인, 몸수색 등을 요구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음(4.4%)이 확인되었다.⁵⁾

위원회는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불심검문은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경찰청장에게 “불심검문을 행함에 있어서는 적법절차 준수 및 신분증을 제시토록 전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위에서 열거한 상담사례,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해보면, 여전히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거나 남용하고 있으며,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청은 불심검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하여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불심검문의 요건 및 절차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

4) 이 연구보고서는 1999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불심검문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로서,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한 3건을 제외한 497개를 조사분석 대상으로 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9, p129).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9, p22

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⁶⁾

1. 불심검문의 전제조건으로서 정황(수상한 거동 또는 주위의 사정)⁷⁾

‘수상한 거동’이라 함은 그 사람의 동작이나 언어, 복장, 휴대품 등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순찰중인 경찰관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옆길로 숨는다든지, 혈흔이 묻어 있는 옷을 입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 판단’이란 당해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합리성이 담보되는 판단을 말한다. 치안이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중 평균적인 기준인을 설정하고,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당해 상황 하에서 당해인에 대한 불심검문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내부의 정보,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 또는 일반인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찰관으로서의 합리적인 경험칙 등은 그 판단기준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불심검문의 대상⁸⁾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체포 내지 긴급체포에서 필요한 혐의의 정도보다는 낮은,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합리적인 가능성’ 정도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체포나 구속의 요건인 충분한 범죄혐의 내지 범죄혐의의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데, 이는 불심검문이 수사가 아니며 불심검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의처분이기 때문이다.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란 범죄의 목격자, 피해자 등 참고인적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들을 검문하려는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의 단서확보를 위해서이다.

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9, p69-p71 요약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9, p71-p74 요약

3. 불심검문의 방법

가. 정지와 질문

경찰관이 피검문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⁹⁾

피검문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¹⁰⁾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1999.1.20. 98나467’ 판결에서 재판부는 “불심검문은 범죄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고, 경찰관이 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하는 직무질문에 불과하다”며 “직무질문은 임의수사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하는 동안 수갑을 채우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질문은 경찰관의 의심을 해소하거나 경찰목적상 필요한 것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피검문자에게 고지한 불심검문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이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¹¹⁾

상대방이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나가거나 질문 도중에 떠나는 경우에 실력행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들은,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거나 추적하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는 것이다.¹²⁾

정지에 필요한 시간도 구속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달해서는 안되는데,¹³⁾ ‘서울지방법원 1999.1.20. 98나467’ 판결에서 재판부는 “불심검문을 할 경우 ‘경찰비례의 원칙’에

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1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9, p82

12)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183

13)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183

의해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내에 끝나쳐야 하는데도...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것은 사실상 불법구금을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흉기 기타 소지품 검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경찰관이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흉기소지조사를 제외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1999.1.20. 98나467' 판결에서는 "당해인의 의사에 반하여 흉기 아닌 일반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은 이미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임의동행

경찰관이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근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피검문자는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¹⁴⁾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피검문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¹⁵⁾

그리고 동행을 한 경우에는 피검문자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¹⁶⁾

1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1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영국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고지 받도록 하는 것 외에 경찰관서로의 동행에 자발적으로 응한 자에게 어느 때든 경찰관서를 떠날 수 있다는 것,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 등을 구두와 서면으로 경찰관이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어 임의동행에 응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언제든지 동행의사를 취소하고 경찰관서를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길라잡이(경찰편)』, 2002, p90).

1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또한 경찰관은 6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¹⁷⁾

4.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가. 신분증 미소지, 제시거부를 이유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¹⁸⁾

일반적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신분증제시 및 확인절차는 사실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신분증제시 요구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¹⁹⁾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1항 후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심검문의 경우에는 임의동행시 피검문자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 비하여 주민등록법상의 동행시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동행요구사유도 불심검문의 경우에는 피검문자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교통상의 이유로 인한 것인데 비하여, 주민등록법상 동행사유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분증제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행을 요구²⁰⁾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가 아닌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법경찰작용의 일환으로 보아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행정경찰작용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불심검문시에는 신분증미소지 내지 제시거부를 이유로 하여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에 관한 규정이 피검문자에 대한 동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법률에 인권보장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규정을

1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9, p100-p102 요약

19)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군무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두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규정에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규정을 두는 것이 피검문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업무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나. 정북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제2항에 의하면, 정북근무중인 경우에는 신원 등의 확인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심검문시 정북경찰관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 법은 사법경찰관리의 범인체포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²⁰⁾에서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신분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북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의무경찰이나 전투경찰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06.09.)”고 결정한 바 있다.²²⁾

위법한 불심검문의 효과

1. 정당방위(위법성 조각)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임의동행시 피검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20) 치안연구소가 경찰관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분증미소지시 임의동행을 한 경우가 4.7%, 신분증제시거부시 임의동행을 한 경우가 43.4%인 것으로 나타났다(치안연구소,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1997, p134-135).

21)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 제4항 및 법 제7조 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22) 최근 대법원은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경찰관이 직무 수행중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불심검문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YTN 2004.11.01일자). 그런데 이전의 다른 항소심 판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무원증 제시 규정은 정복근무 중일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민등록법과 모순을 보인다”며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하여, 정북경찰도 불심검문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한겨레 2003.11.27일자).

부여함으로써 그 임의적 성격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피검문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실력으로써 동행을 행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된다.²³⁾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무리하게도 잡아끄는 등 강제로 인치하려고만 하였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할 요건도 갖추지 않았거니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이니,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⁴⁾

또한 대법원은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²⁵⁾

2. 형사상 처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하며, 주민등록법 제21조의 2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제6항은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동행 제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26) 27)} 또한 동행요구를 위한 사전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신분증명, 동행의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9, p89

24) 대법원 1972.10.31. 72도2005

25) 대법원 2002.05.10. 2001도300

26)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목적과 이유 설명, 동행장소의 고지 등을 위배한 임의동행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된다.²⁸⁾

3. 손해배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불심검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전경들의 동행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위 전경들이 원고들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구금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전경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²⁹⁾

“경찰 불심검문시 반드시 신분증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모씨(30세)등 4명이 “경찰관들이 무분별한 불심검문을 하고 검문 과정에서도 소속, 성명, 검문의 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교육기관을 통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불심검문시 정복경찰관은 물론이고 전·의경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산하기관에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27) ‘불법감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7.29. 85도16)”고 판시하였다.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길라잡이(경찰편)』, 2002, p90

29) 서울지방법원 2000.7.4. 2000가합9685

위원회는 △불심검문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이른바 ‘원천봉쇄’를 통해 집회와 상관없이 학생, 일반인에 대한 획일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거나 △특정 시설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검문하는 행위는 불심검문의 실제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2제 제1항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9.24.)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경찰”

경찰청이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며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대책은 우리 경찰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특히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연 경찰이 최소한의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한다’는 조항을 끼워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처벌한다는 뜻이다. 이는 강제연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 혐의자도 체포영장이 없으면 체포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사람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법정신이다. 그런데 불심검문에 불응한다고 처벌한다면 이러한 법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결과를 빚는다.

경찰이 불심검문 불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동안 도피 중인 범인을 잡지 못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불심검문 강화방안은 별 실효성도 없이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몰 우려가 크다.

(경향신문 2004.10.09일자)

사례 2

경찰의 폭행

상담번호 03-전상-0010089 | 상담날짜 2003.07.01. | 상담시간 50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6월 30일 오후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에 여의도에서 동생을 만났다. 내담자가 동생과 대화를 마치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자, 당시 근처의 집회 때문에 출동한 ○○경찰서 형사기동대가 내담자를 가로막았다. 내담자가 수술 의뢰서를 보여주며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였으나, 형사기동대는 확인도 하지 않고 내담자와 동생을 잔디밭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참고로 폭행 장면은 당시 오마이뉴스 기사에 의해 촬영되었다. 내담자가 이후 ○○경찰서 형사기동대를 찾아가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나중에 이를 인정하여, 결국 밤 12시경 형사기동대 소대장 등이 찾아와 사과하였다.

내담자는 폭행한 경찰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답변요지

1.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하여 헌법 제12조 헌법 제12조³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2.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폭행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진정 하더라도 각하됨을 설명하였다.³¹⁾ 다만, 경찰의 폭행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³²⁾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3. 위원회에는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다만,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4. 내담자가 건강이 회복되면 위원회를 방문하여 진정하겠다고 하여, 진정방법과 진정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다.

위원회 출범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 총 1,164건 중³³⁾, 폭행을 당했다는 상담은 137건으로 11.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폭행과 관련한 전형적인 상담유형으로는 집회진압 과정에서의 폭행, 불심검문을 거부한 자에 대한 폭행, 무리한 임의동행 과정에서의 폭행, 연행이나 체포과정에서의 폭행,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의 폭행, 위 사례와 같이 집회 또는 범죄 현장 주변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폭행 등이 있었다.

경찰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125조에 의해 처벌되며, 폭행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피의자가 도주·저항의사 없을 때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인권침해

“긴급체포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송모씨(31)가 2003년 8월 충북 제천경찰서 이모 경장 등 2명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모 경장 등이 피의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 수사의뢰를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이모 경장 등은 “당시 진정인이 완강히 저항하며 도주하려고 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일명, 경찰 체포술)을 행사했다”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현장에 있었던 송모씨(45세)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진정인의 유치장 수용기록,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이모 경장이 진정인을 완전히 제압한 상황에서 주먹과 발로 복부·얼굴·옆구리를 폭행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30)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1) 이는 법원, 수사기관의 권한을 보호하고 다른 법적구제절차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32) 범죄 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자수 이외의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입건이라고도 한다;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180
 33) 진정접수된 상담 및 면전진정신청에 따른 상담 제외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불가결하거나, 방법면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를 구성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에 정한 진정인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들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³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2.02.)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최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경찰이 불심검문 도중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무집행을 내세운 경찰의 ‘폭력’ 행사가 단지 시위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5일 밤 11시경 이 모씨는 인도를 통해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안양여고 박달 삼거리 부근에서 경찰 세 명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은 물론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이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몸수색을 했다. 이에 이씨가 항의하자 그 중 노모 경장은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씨는 “어떻게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개처럼 끌

3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35) 2001.11.26.부터 2004.7.31.까지 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로는 △울산구치소 의문사 사건 수사의뢰(2002.02.28.) △시흥경찰서 가혹행위 관련자 수사의뢰(2002.11.12.) △전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가혹행위 관련자 수사의뢰(2003.09.17.) △인천지방경찰청 담당검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수사의뢰(2004.03.02.) 등 총 9건에 대해 수사의뢰 결정이 있었다.

러가는 모욕과 부당한 폭행, 체포를 당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3.11.13일자)

경찰 등의 폭행(형법 제125조)

형법 제125조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125조의 죄를 범하여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형법 제125조 소정의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를 보조하는 자”라 함은 법원, 검찰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와 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행위객체인 “기타 사람”이라 함은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이나 심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³⁶⁾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의 공소시효는 7년, 10년이다. 그런데 최근 형법 제125조와 관련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다.

36) 광주고등법원 1992.11.21. 92초43



“공권력에 의한 살상·가혹행위 배상시효도 없앤다”

열린우리당은 15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도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각 조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원영 의원은 “국가는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조작·은폐 행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4.9.15일자)

사례3

경찰의 알몸 신체수색

상담번호 02-전상-1000496 | 상담날짜 2002.12.16. | 상담시간 50분

상담요지

내담자의 조카 A(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금고 속에 넣어둔 현금에 대한 도난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회사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팬티까지 내려서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신체수색을 강요하였는데, 어떠한 협조도 구하지 않고 여직원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2명씩 들어가게 한 후에 여경찰관의 입회하에 팬티까지 내리게 하였다. 내성적인 성격인 A는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A와 다른 여성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기관의 고소와 위원회의 진정을 고려중이고, 이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1. 영장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강제로 알몸 수사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 단순절도 사건의 조사에 있어 긴급상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2. 수사기관에 고소와 인권위 진정은 장단점이 있고 중복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³⁷⁾ 피해자와 상의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3. 참고로 위원회는 2002.10.19. 유치인 입감과정에서 서울 00경찰서의 △△노조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을 안내하였다.

위원회 출범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경찰’ 관련 상담 총 1,164건 중,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133건으로 11.43%에 달했고, ‘검찰’의 경우는 총 440건 중 39건으로 8.86%를 차지하였다.³⁸⁾ ‘인격권 침해’ 상담의 대부분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37)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욕설, 폭언, 반말 등 인격비하발언에 대한 것이었다.

알몸신체검사와 관련한 상담으로는, 첫째 위 사례처럼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한 신체수색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둘째 피의자(피고인, 구류자 및 의뢰입감자 포함)의 유치 및 호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체검사시 가운을 입지 않고 알몸수색을 하는 등의 침해를 들 수 있다.³⁸⁾

후자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⁴⁰⁾과 우리 위원회의 결정⁴¹⁾이 있었던 바, 이후 경찰청은 문제가 되었던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를 개정하였다.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한 신체수색, 신체검사

1.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의 신체수색, 신체검사⁴²⁾

형사소송법상 신체수색은 압수할 물건이나 증거물을 발견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외부와 착의에 대한 ‘수색’을 말하고, 신체검사는 신체 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검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신체수색과 신체검사 모두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강제처분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필연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정신에 비추어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신체수색·신체검사의 요건(제한)⁴³⁾

가. 요건

신체수색·신체검사는 첫째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하고(영장주의

38) 진정접수된 상담 및 면진진정신청에 따른 상담 제외

39) 피의자에 대한 알몸수색 실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p64-69을 참조할 것

40) 헌법재판소 2002.07.18. 2000헌마327

41) 국가인권위원회 2002.10.23.

42)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214; p274; p286

원칙),⁴⁴⁾ 둘째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강제처분의 필요성), 셋째 범죄의 혐의가 존재하여야 인정될 수 있다(범죄의 혐의).

나. 영장주의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범죄수사에 있어 신체수색 또는 신체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⁴⁵⁾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처분 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⁴⁶⁾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⁴⁷⁾

또한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⁴⁸⁾

43)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273

44) 다만, 체포현장에서의 수색·검증이 요구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수색·검증이 요구되는 경우(동법 제216조 제2항), 범죄장소에서의 수색·검증이 요구되는 경우(동법 제216조 제3항) 등에서는 영장 없이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45)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14조 제1항,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46)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16조, 제124조, 제219조

47) 이와 관련하여 “마약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영장도 없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였다”는 상담이 있었다.

48)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19조

수사기관에의 고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의 비교

	고 소	진 정
의의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⁴⁹⁾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⁵⁰⁾
주체	고소권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친족, 이해관계인 ⁵¹⁾	진정인은 피해자,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다만 피해자가 진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한다.
방법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⁵²⁾	진정은 문서(우편, 팩스, 홈페이지)·전화·구술에 의한 진정, 면진진정이 있다. ⁵³⁾
기간	고소기간은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⁵⁴⁾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다만 공소시효가 문제될 뿐이다.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한다.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⁵⁵⁾
취소 취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⁵⁶⁾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각하 처리되어 사안은 종결되는데, 취하한 사안에 대하여 재진정은 가능하다.
특징	고소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를 밝혀 혐의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은 인권침해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과 연결될 수 있지만, 가해자 처벌보다는 당사자의 화해나 권고, 조정, 법률구조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회복, 피해구제를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어 피진정인 스스로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⁵⁷⁾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정하더라도 각하된다.⁵⁸⁾

49)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187
 50)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28호) 제2조 제1호
 51)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제228조
 52) 형사소송법 제237조
 53)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23호) 제7조, 제8조, 제9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54) 형사소송법 제230조
 5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56) 형사소송법 제232조
 5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가이드북』, 2003, p133 요약
 5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피청구인이 2000.3.20. 13:30경 청구인들을 성남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거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헌법재판소 2002.07.18. 2000헌마327)

알몸신체검사로 인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입감신체검사는 유치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의 은닉소지여부를 검사하되 유치인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들이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신체수색을 강요당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러한 알몸신체검사를 통해 진정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피진정인들의 직무권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밀신체검사 대상자는 구속영장 발부자, 죄질이 중한 자, 반입금지물품 휴대 의심자,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죄질이 중한 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구속영장 발부자」의 경우 위해 가능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밀신체검사의 대상자로 지정되어 너무 광범위하므로 정밀신체검사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검사실시 과정에서 검사 실시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밀신체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10.19.)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신체검사 관련규칙 개정”

경찰청은 사회전반의 인권의식향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등 인권을 우선시하는 시대조류에 따라 그동안 여성피의자 등에 대한 과잉신체검사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개정·시행기로 하였다.⁵⁹⁾

이번에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배경은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특히 집회시위사범으로 체포된 여성피의자 등의 경우 자해우려나 흉기소지 등의 염려가 없음에도 일부 일선근무자들이 유치장사고방지 등을 위해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서 벗어나 브레지어를 벗기는 등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59)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의 ‘정밀검사’ 부분은 2003.01.25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제8조 (신체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주무자는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복, 소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하고,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 ② 신체, 의복, 소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제9조의 위험물 등(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 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⑤ 전항 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전항 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전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 규칙개정의 핵심내용은 기존의 간이검사·정밀검사에 [외표검사]를 신설하여 자해우려와 흉기소지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겉옷을 입은 채로 육안과 촉수만으로 간단히 위험물소지여부를 확인한 후 입감하게 함으로서 과도한 신체검사로 인한 수치심과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사이버경찰청 뉴스레터 제95호 2003.02.08일자)

사례 4

경찰의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의 지문확인 강요

상담번호 03-전상-0011432 | 상담날짜 2003.12.15. | 상담시간 90 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지난 주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었다. 내담자를 비롯한 교육생들은 지문인식기에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입·퇴실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휴식시간이 끝나고 입실할 때에도 지문확인을 해야만 했다. 교육담당자에 의하면 교통안전교육의 대리출석자가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하였고, 휴식시간 후에 지문확인을 한 것은 중간 이탈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생은 누구나 지문확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경찰청의 지문인식기 도입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였다.

답변요지

1. 경찰청의 지문인식기 도입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1조의2 제1호 나목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2. 경찰청의 지문인식기 도입이 비록 법령에 근거한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3. 내담자가 진정여부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지문날인과 관련한 상담사례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날인을 요구한 사례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을 채취한 사례 △불심검문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문확인을 강요한 사례 △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시 지문날인을 요구한 사례 △도서관 지정좌석제를 실시하면서 지문감식시스템을 도입한 사례 △도서관 열람증 발급시 지문을 입력하도록 한 사례 △사설학원에서 도난사건

범인을 잡고자 학원생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례 △ 경비용역업체에서 지문감식기를 장치하여 출퇴근을 관리한 사례 등이었다.

이 중에서 위원회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자료표’ 작성시 피의자 지문 강제채취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특별교육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외국인 지문날인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교통안전교육과정에서의 지문확인강요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⁶⁰⁾과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⁶¹⁾ 등이 문제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⁶²⁾ 교통안전교육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시설)에서 실시하는데, 이들 기관(시설)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⁶³⁾ 규정에 의하면 교육생들은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고 입·퇴실하도록 되어 있다.⁶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⁶⁵⁾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7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지문등록이나 지문확인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60) 헌법재판소 1998.10.15. 98헌마168
 61) 대법원 1998.07.24. 96다42789
 62)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본문
 63) 도로교통법 제72조2 제1항; 도로교통법 제72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호 나목
 6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5항
 65)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할 수 없다.

물론 기본권 제한은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라고 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를 규정하고 있다.⁶⁶⁾ 즉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다.⁶⁷⁾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라고 되어 있을 뿐 “지문인식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참고로 “지문인식기”라는 표현은 동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에서 명시하고 있다.⁶⁸⁾ ⁶⁹⁾

그리고 지문인식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출석 등의 관리가 교통안전교육과정 이외에도 일반 자동차 학원과 자동차전문학원의 입·퇴실 관리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학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⁷⁰⁾



“안전교육하며 지문날인 강요”

최근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들른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였다. 주민등록증은 없지만 다른 신분증이 있었기에 학원에 등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3시간 안전교육을 받으려면 신분 확인을 위해 지문을 날인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소지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경찰에서 직접 지문확인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

66)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67) 헌법재판소 1999.1.28. 97헌가8

6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4호; 별지 제29호의17 서식

69) 만일 이후 법을 개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지문등록과 지문확인에 대해 규정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퇴실 확인 및 대리출석자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지문인식기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 고려하여 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70)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1항, 제49조의2 제2항

만 경찰에 문의해 보니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고 발뺌하였다. 하긴,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니 강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온 국민이 만 17살에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고, 경찰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활용하는 지문날인 제도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부터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리한 방법이라는 명분으로 경찰이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신분 확인을 늘리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것도 인터넷을 이용해 학원이라는 민간 기관과 원격으로 지문을 대조하는 방식은 국민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겨레 독자기자석 2004.07.30 일자)



“[답합니다] 학원들 지문강요 없게 조치”⁷¹⁾

“운전학원서 안전교육하며 신분증 아닌 지문날인 강요”라는 제목의 독자의 글(7월 30일자)을 읽고 쓴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대리·허위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지문 등록 등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학원의 지문 등록은 교통안전교육 수강신청시 교육생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생이 지문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른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등 지문 등록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⁷²⁾

또한 운전학원에서 지문 등록을 한 경우에도 경찰청 전산망에 있는 지문자료와 연결되

71) 이 기사는 경찰청 면허계장이 작성한 기사이다.

72) 그런데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의10 참조).

어 대조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생이 수강신청을 할 때 운전학원의 전산망에 등록된 뒤 교육 때마다 운전학원 전산망에 등록된 지문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생이 학원교육을 마친 때에는 폐기토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일부 운전학원에서 편의상 지문 등록을 강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미 조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한겨레 독자기자석 2004.08.03일자)

『지문날인』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 의견 제출

『피의자 지문 강제채취는 인권침해』

“지문채취를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2003년 2월 박 모씨(48세)가 구로경찰서 경찰관 7명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구로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03년 2월 22일(22시 30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하자 △다음날인 2003년 2월 23일(10시30분) 피진정인 7명이 합세하여 지문날인을 강하게 거부하는 진정인을 완력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진정인의 지문을 채취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한 강제 지문채취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피의자 동의 없는 지문채취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정

해진 규정(헌법 제12조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이 필요하며 △영장없는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한 형사소송법 제216조(피의자의 체포·구속 현장이나 구속영장 집행 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는 압수, 수색, 검증 허용)의 적용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에 인치된 후 10여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된 강제지문채취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관련규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및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등)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 규정들이 수사기관에 강제 처분인 지문채취권을 부여했다거나 △피의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강제지문 채취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것으로서 △적법적차의 원리 및 영장주의(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관련규정)를 위배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7.12.)

『외국인 지문날인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할 것』

법무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지문날인대상 외국인을 축소하고자 하는 개정방향은 환영하지만, 지문날인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지문날인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법치국가의 입법원칙상 기본권제한의 경우엔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고, 이 원칙에 따라 법령은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집행자의 자의적·차별적 적용 여지를 예방·제한해야 함에도, 법무부의 개정안은 지문날인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개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 △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개정안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 부분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고, ‘강제퇴거대상자(제46조)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로 특정하고 △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개정안 제38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법의 다른 규정이나 하위법령에 그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설정돼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 ‘기타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안 제38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제46조 규정의 강제퇴거대상자’가 반영되는 경우에 이중 규정이 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7.18.)

사례5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상담번호 03-전상-0011276 | 상담날짜 2003.11.19. | 상담시간 35 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때, 우편엽서를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다. 우편엽서에 ‘피의자출석요구서’ 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 우체부 및 주변 이웃들이 피의자의 신분 등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담자는 우편엽서를 사용한 통보는 피의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답변요지

1. 경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2. 그런데 ‘피의자출석요구서’ 를 우편엽서로 보내는 것이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에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 내담자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진정하겠다고 하여, 진정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였다.

위의 사례는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들어온 상담은 아니다.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된 전형적인 상담사례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경우, 피의사실이 피의자의 직장에 알려져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이 문제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언론 또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도할 때에는 보도목적의 공익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 관련규정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198조(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①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으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의 내용이 기소 전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7조(비밀의 엄수)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시 유의사항⁷³⁾

●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

● 발표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발표되어야 한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 “수사 언론공개 명예훼손 국가책임”

수사기관이 불확실한 수사내용을 언론에 알려줘 보도가 됐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대법관 강신욱)는 10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봤다며 조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7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길라잡이(경찰편)』, 2002, p68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위법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001.12.10일자)

언론이 피의사실을 보도할 경우의 주의 의무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공적인물이 아닌 사인(私人)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1999.01.26. 97다10215)



“유죄확정 안된 사실 발표, 송 교수 인권 난도질”

김세균 서울대 교수를 비롯 학계 종교계 등 사회각계 인사 744명은 기소 전 송두율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박만 서울지검 제1차장 검사,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박정삼 국정원 제2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송두율 사건의 국정원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삼 차장은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밖으로 유출시켰고, 수사내용을 넘겨받은 정형근 의원은 이를 국정감사 기간에 기자들에게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박만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50여 일 동안 거의 매일 수사브리핑이라는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 취지에 대해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팽개친 수사기관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송 교수의 인권은 난도질당했다”며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온 범죄자들을 고발하여 앞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03.11.27일자)

사례 6

검찰의 부당한 수사

상담번호 03-대상-0010185 | 상담날짜 2003.08.20. | 상담시간 65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임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담당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내담자의 전과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내담자를 가해자로 취급하였으며, 전치 5주 진단서와 가해자가 사용한 폭행도구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음에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내담자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내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위원회가 구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답변요지

1.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하더라도 각하됨을 설명하였다.
2.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내담자의 사안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설명한 후, 관련 단체를 안내하였다.

이 사례 외에도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수사미진, 편파수사, 수사오류 등)와 관련한 상담은 다음과 같다.

A는 사기 사건의 고소인인데, 조사를 담당한 계장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였다.

B의 아들은 지하철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였는데, 경찰은 조사결과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OO역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지하철 차량의 간격이 넓고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경찰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C의 아들은 견인차의 카오디오를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강제로 거짓진술서를 작성하였고(견인차 기사는 자신의 오해였음을 시인하였음), 결국 절도죄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현재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D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OO지역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D는 ‘OO경찰서 측이 취재요청을 불허한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적이 있는데, 경찰은 이후 자신의 개인 사업체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였다. D는 표적수사에 의해 기소되었고,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은 사고 후 도주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뺑소니 사건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작, 은폐하였다. E는 담당 경찰을 검찰에 고소하여 결국 담당 경찰은 직무유기로 처벌되었는데, 처벌이 경미하여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F는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고소인의 말만 듣고 약식기소하여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F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원회 출범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수사기관’ 관련 상담 총 1,663건 중,⁷⁴⁾ ‘부당한 수사’와 관련한 상담은 총 664건⁷⁵⁾에 달해 약 40%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이 각하된다. 다만,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⁷⁶⁾의 죄에

74) 진정접수된 상담 및 면진진정신청에 따른 상담 제외
 75) 수사미진 292건, 편파수사 293건, 수사오류 79건
 76)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기관이 인지⁷⁷⁾하여 수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한데, 여기에는 인지사건만이 해당되므로 고소나 고발을 통해 수사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다.

또한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의하면 진정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진정이 각하되며, 진정의 취지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에도 진정이 각하된다.

위 사례에서 A와 B의 경우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이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C의 사례에서, 만일 경찰이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을 인지하여 수사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⁷⁸⁾ C가 담당 경찰을 고소하여 수사할 경우에는 진정하더라도 각하된다. 그리고 D와 E의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으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F의 경우인데, 수사와 재판을 포괄적으로 보아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과 분리하여 수사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원위원회는 “진정 내용에 제3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에 의한 수사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의 내용이 없는 한 각하된다”고 의결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등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전원위원회 결정(부당수사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 방안)

전원위원회는 ‘수사와 재판을 분리해서 수사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인지’의 안건에 대해 부결하면서, 진정내용에 제3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의한 수사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의 내용이 없는 한, 부당수사에 대한 진정은 수사의 원인이

77) 범죄 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자수 이외의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입건이라고도 한다: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180

78) 만일 인지수사한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32조 제1항 제5호 및 10호에 의해 각하된다.

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각하하고,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 10호를 적용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⁷⁹⁾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수사미진을 이유로 검찰의 처분을 취소)

사실혼관계 시작 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혼수품을 사실혼관계 종료 후 자기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간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데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이 있거나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7.18. 2002헌마202)

79) 국가인권위원회 제42차 전원위원회 (2003.5.26.)

사례 7

검찰의 함정수사

상답번호 03-전상-3000547 | 상답날짜 2003.06.18. | 상답시간 60분

상답요지

내담자의 아들 A는 과거에 마약조직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지방검찰청의 검사 등은 A에게 접근하여 마약 밀매단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면 함께 검거되더라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A는 전세금을 빼고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려 3,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하는 등 검찰의 수사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검찰은 마약단과 더불어 A를 검거하고 기소하여 5년형을 구형하였다.

내담자는 ○○지방검찰청의 담당 계장에게 약속과 다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함정수사로 A를 이용한 담당 검사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답변요지

1. 사안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 위원회가 위법한 함정수사를 한 담당 검사 등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다만 위원회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 또는 그 협력자가 제3자에게 범죄를 행하게 유인하고 그 실행을 기다려 검거하는 수사방법으로서 마약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및 조직범죄의 수사 등에 사용되는 수사기법이다. 특히 마약사범에는 피해자가 없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행하여지기 때문에 통상의 수사방법으로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범죄가 상습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함정수사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를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서 범죄를 범하게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수사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수사의 인권보장의 원리에도 충돌되기 때문에 단지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함정수사

1. 관련규정

헌행법상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헌법 제12조 제1항⁸⁰⁾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198조에서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함정수사의 제한범위⁸¹⁾

함정수사는 이미 범의(犯意)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 실행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와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죄를 유발한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하며, 후자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다수견해와 판례⁸²⁾는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케 하는 범죄유발형의 경우에만 신의칙(信義則,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수사방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죄 실행의 기회 혹은 편의를 제공한 기회제공형의 함정수사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절차는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법의 적절한 절차를 보장함을 이념으로 한다. 특히 수사절차는 범죄사건의 전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절차이므로 법의 적정절차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즉 사법운영에

80)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8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길라잡이(검찰편)』, 2002, p55-58 요약

82)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犯意,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의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05.14. 2004도1066).

대한 공적 신뢰를 벗어나서 법적 근거가 없는 수단까지 사용하는 무리한 수사는 지양되어야 하며, 수사의 편의나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도 수사의 신의칙이라는 측면에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적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3.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⁸³⁾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받는 경우에 함정에 걸린 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불가벌설(不可罰說)과 가벌설(可罰說)이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인 불가벌설은 국가가 사람을 유혹에 빠뜨려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여 범인을 제조하면서 한편으로 그를 처벌하는 것은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이유로 피교사자의 처벌을 부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가벌설은 함정에 걸렸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범의를 유발한 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범죄를 실행한 이상 실체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다수설은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데, 이는 증거수집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이다.

“가출소녀 성매매수사 동원”

경찰이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성매매 범죄를 수사하면서 나이 어린 가출소녀들을 동원해 ‘함정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이양 등 5명의 가출소녀를 지난 2월 7일부터 5일 동안 수사반 사무실로 불러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 인터넷 채팅으로 다시 상대 남자들과 접촉하게 한 뒤 유인해 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마산의 선도보호시설 등의 보호를 받고 있던 이들 가출소녀는 매일 경찰에 불러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2004.05.24일자)

83)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177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⁸⁴⁾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조사대상이 된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②원상회복·손해배상 및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③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등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8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가이드북, 2003, p135

사례 8

검찰의 피의자 진술거부권 미고지

상답번호 03-전상-2000508 | 상답날짜 2003.06.19. | 상답시간 110분

상답요지

내담자는 2003년 1월 23일 임대인 A와 월세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A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아들인 B는 내담자를 폭행 건으로 고발하였다. 내담자는 □□지검 이○○ 검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사법경찰관리 홍○○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계속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4시간 이상 자백을 강요하여, 결국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 홍○○은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담자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내담자는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에 대해 고지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답변요지

1.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사한 경우에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2. 내담자가 우편으로 진정하겠다고 하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다.

‘피의자 권리 미고지’로 인권침해가 문제된 전형적인 상담유형은 첫째, 체포 또는 구속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경우와 둘째, 위 상담사례의 경우처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⁸⁵⁾ 이와 같이 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에 의하여 피의자의 임의의 자백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자백획득의 기회로 남용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규제가 요구되는데, 이하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편, 위원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재산 등 개인신상정보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다.

진술거부권의 고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7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검사 앞에서든 사법경찰관 앞에서든 심리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거나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의 ‘실무현실’은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구술에 의하여 명백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자백강요의 분위기가 해소될 수 없다.⁸⁶⁾

‘인권보호수사준칙’⁸⁷⁾ 제14조에서는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는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진술 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85)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8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길라잡이(검찰편)』, 2002, p43

87)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법무부 훈령(제474호)으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조서에 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앞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피의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하여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서 작성을 기본 절차로 삼아야 한다.⁸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

헌법 제12조 제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⁸⁹⁾

그리고 대법원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오관의 소지’와 ‘인권침해의 예방’을 들고 있다.⁹⁰⁾

8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길라잡이(검찰편)』, 2002, p47

89)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가 피의자인 甲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면서 “검사가 ... 녹화당시 위 甲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동인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녹화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녹화내용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는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06.26. 92도682).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5조에서는 자백 편중의 수사를 지양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아야 하며(동조 제1항), 둘째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 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따져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하며(동조 제2항), 셋째 검사는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 방법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동조 제3항), 넷째 검사는 수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애써야 하며,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동조 제4항).

“진술거부권 안 알렸을 때 자백 무효(법무부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시행)”

앞으로 검찰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 얻어낸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마련, 장관 훈령으로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고 내년(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를 조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조선일보 2002.12.18일자)

피의자 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고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재산 등 개인신상 정보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피의자주거

90)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01.29. 98도3584)”.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박모씨(46세)가 경남하동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에 피의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작성 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할 것과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할 수 있도록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 및 명칭을 정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박모씨는 폭행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개인의 재산상태 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 있는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이유를 설명하고 작성을 요구한 바 있으나 △ '피의자주거진술서' 는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작성해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사실도 없고 그에 대해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대검찰청의 회신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7조에 의하면 '피의자주거진술서' 도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에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및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9.01.)

사례 9

검찰의 피의자 접견 금지

상담번호 03-전상-0011441 | 상담날짜 2003.12.16. | 상담시간 60분

상담요지

A는 도박을 한 혐의로 2003년 12월 10일 체포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내담자는 A의 사촌누나로서,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A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2003년 12월 16일 내담자가 아이들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부산에 내려가 면회신청을 하였는데, 부산구치소측은 “수용자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담당 검사가 접견을 금지시켰다”고 하면서 접견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내담자는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검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하면 알려 주겠다”고 할 뿐 면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내담자는 수사 중인 수용자에게도 가족접견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답변요지

1. 구금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가족의 접견은 매일 1회 3인 한도 내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수사기간 중에는 피의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검사가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금지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2. 접견거부를 누가 했는지 여부(담당검사가 접견금지의 명령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교도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등 사실 확인, 수용자에 대한 접견금지가 검찰의 수사 목적과 비례해서 적정한지의 여부, 접견금지 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접견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 제89조(제209조, 제200조의5, 제213조의2)⁹¹⁾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⁹²⁾, 형사소송법 제91조(형사소송법 제209조, 제200조의5)⁹³⁾는 피의자,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접견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 결정의 주체, 사유 및 기간 등을 명기한 소정의 양식 등에 의한 구체적인 세부처리절차를 두고 있는지 여부인데, 위원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접견권의 성격과 제한 범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 바,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며 오히려 구속에 의하여 외부와 격리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외부와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도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91) 형사소송법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9조 제89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에 준용한다.
제200조의5 제89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13조의2 제89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92)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93)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209조 제9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에 준용한다.
제200조의5 제91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며 구체적으로는 접견을 허용함으로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방지라는 구속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제한의 필요가 없는데도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한의 필요가 있더라도 필요한 정도를 지나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2.05.08. 91누7552)

피의자 면회금지와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

규정준수 않은 피의자 면회금지는 인권침해

“수원지방 검찰청 김모 검사 등 소속직원들이 2003년 10월 8일 자신을 긴급체포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40시간 동안 가족 및 회사 관계자와의 면회를 금지했다”며 2003년 10월 장모씨(남, 만39세)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자체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청장에게는 면회금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김모 검사 및 참여계장은 △당시 진정인에게 면회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면회금지를 할 만한 사유도 없었으나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인계했던 검찰 당직실 담당직원 및 호송경찰관 간의 상호 의사소통 착오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진정인을 입감시켰던 호송경찰관은 “당시 검찰당직실 직원들로부터 구두 상으로 면회금지 지시를 받고 면회금지를 한 것”이라고 상반되는 주장을 했으며 △다른 경찰관들도 수원지방검찰

청으로부터 면회금지 지시를 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담당검사나 당직실 직원들로부터 구두 지시를 받아왔다는 진술하고 있고 △지난 1년간 면회금지 관련 기록에도 구두나 부전지 등을 이용해 면회금지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인권위는 김모 검사 등이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과 호송경찰관 상호간 의사전달상의 착오로 인해 가족 등과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면회금지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특정문서를 통해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91조, 제209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⁹⁴⁾)을 위반함으로써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헌법 제10조 및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4조 제2항⁹⁵⁾⁹⁶⁾)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7.09.)

수사관이 임의로 한 피의자 면회금지는 인권침해

“서대문경찰서 구모 경위 등 수사경찰관들이 2003년 3월 자신과 동료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면서 △가족 등의 면회(접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가족들에게 체포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불법적으로 물건을 압수하고 전화통화 내역을 조회했다”며 심모씨(남, 36)가

- 9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피의자접견등금지의 결정)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동법 제34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비변호인)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에 의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접견등금지지휘서를 받아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접견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서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5)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4조 ②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96)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과 관련하여 국제인권원칙으로 규정된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구금자처우에 관한최저기준규칙’ 제37조에서는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 원칙 19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3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비록 면회금지 이유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이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없이 유치장근무담당자에게 구두 상으로 “당분간 면회금지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면회 온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는 3일간 3회에 걸쳐 구체적 설명 없이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낸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제91조, ‘범죄수사규칙’ 제133조⁹⁷⁾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가족 등의 면회를 제한하려면 면회금지의 주체, 이유, 절차,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수사담당자들이 임의로 업무관행에 따라 면회금지를 한 것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헌법 제10조 및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4조 제2항)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담당자가 대상피의자 및 결정자의 인적사항, 죄명, 결정일시와 금지 기간, 금지의 내용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접견금지결정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동 결정서 등본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하는 등으로 관련 ‘범죄수사규칙’ 및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서대문경찰서장에게는 피진정인들에게 주의조치를 하고 소속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8.23.)

- 97) 범죄수사규칙 제133조(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한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진료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친족 이외의 접견과 서신의 수수는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④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에 응하였을 때에는 체포·구속인접견부, 체포·구속인교통부, 물품차입부 또는 체포·구속인수진부에 그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 10

검찰의 피의자 의료권 제한

상담번호 03-전상-0010719 | 상담날짜 2003.09.02. | 상담시간 30분

상담요지

내담자의 아버지 A는 구속과정에서 쇼크로 인한 급성뇌경색이 발생하여 반신마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내담자 가족의 재촉으로 비로소 병원방문이 가능하였는데, 병원에서는 현재 위험한 상태이므로 일주일내로 입원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내담자가 변호사를 통해 진료요청을 했으나, 담당 검사와 경찰은 입원을 불허하였다. 현재 A는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된 상태이다.

내담자는 A가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므로, 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답변요지

1.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를 접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89조·제200조의5·제209조·제213조의2에 의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피의자의 접견수진권).⁹⁸⁾ 또한 변호인은 의사를 대동하여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근거한다고 설명하였다(변호인의 수진권)⁹⁹⁾
2.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료권(의료권)이 문제되어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3.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A의 진료가 시급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신속한 구제방법임을 설명하였다.
4.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의하여, 배우자 등의 신청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를 활용해 볼 것을 안내하였다.

피의자도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한 인신의 구속을 제외한 다른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하므로 더욱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은 구속된 피의자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¹⁰⁰⁾

이는 의료권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의료권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응급치료가 덜 끝난 피의자 연행은 인권침해라고 하면서 대구동부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서 유치장내의 의료환경’과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들의 의료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시한 적이 있다. 또한 ‘대용감방¹⁰¹⁾ 처우 및 운영관련 정책 권고’에서 경찰청장에게 대용감방의 운영을 법무부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하도록 권고하였다.

피의자의 의료권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문제된 상담사례로는 체포·구속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의료권 침해, 그리고 이후 구치소로 이송된 상황에서의 의료권 침해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피의자’의 의료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98)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0조의5 제89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209조 제89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구속에 준용한다.
제213조의2 제89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9)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100) 대법원 1992.05.08. 91누7552
101) 대용감방은 경찰서 유치장을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신하여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교정시설이 지리적 이유로 인근 위치에 없는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도록 하여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로 행형법 제68조의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국가인권위원회, 대용감방 처우 및 운영관련 정책권고, 2004.07.12.).

피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

1.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시 유의점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들은 구금으로 인해 긴장, 불안, 초조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위축되며,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기 쉽고, 자칫 열악하고 불리한 환경의 영향으로 형사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적정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나아가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기 쉽다. 그러므로 구금자체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필요이상으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의 형사절차상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구울수단의 선택에 있어 충돌되는 이익들간의 신중한 비교교량을 요하며, 통제의 효율성에만 비중이 두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¹⁰²⁾

2. 피의자의 의료권

가. 변호인의 수진권(受診權)

헌법 제12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면 변호인은 의사를 대동하여 피의자를 접견한 상태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수사규칙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⁰³⁾

나. 피의자의 접견수진권

형사소송법 제89조, 제200조의5, 제209조, 제213조의2에 의해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의자로부터 진료의 신청이

102) 헌법재판소 2001.07.19. 2000헌마546

103)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피의자들의 수진권(受診權)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대다수의 피의자들이 수진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92.4%), ‘경찰(검찰)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다’는 사람은 4.1%에 불과하였으며, ‘경찰(검찰)의 설명은 듣지 못했으나 다른 기회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피의자 역시 3.5%에 불과하였다.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¹⁰⁴⁾ 물론 피의자의 가족 등이 진료를 신청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¹⁰⁵⁾

다. 수사기관의 유의사항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¹⁰⁶⁾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구금할 때에는 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⁰⁷⁾

만일 경찰서에 유치중인 피의자가 발병하였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¹⁰⁸⁾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여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¹⁰⁹⁾

그리고 유치인의 질병이 위독하거나 조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어 그의 가족에게 연락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사유를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¹¹⁰⁾

3. 경찰서장의 진료거부통고는 위법한 처분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 교통, 수진권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도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과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수진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서에

104) 범죄수사규칙 제133조 제3항

105) 범죄수사규칙 제133조 제2항

106)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6조

107)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4조

108)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경찰서 수사과장을 말한다(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4조 제2항).

109)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1조 제1항

110)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1조 제4항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질병이 있고 그 치료를 요한다 하여 의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장에게 그의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경찰서측으로부터 진료를 거부한다는 통고를 받고 진료를 하지 못하였다면 경찰서장의 위 수진거부처분은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0.8. 91보4).

응급치료가 덜 끝난 피의자 연행은 인권침해

“병원 응급치료 도중 대구동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연행돼 10여 시간 이상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김모(36세)씨가 2003년 4월 파출소 경찰관과 구치소 의무과장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동부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게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03년 1월 새벽 폭행 건으로 체포되어 연행 중 대구A 병원에 응급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의 봉합 등 응급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이 날 오전 진정인은 대구동부경찰서에 인계되어 사건 조사를 받았고 △야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한 뒤 다시 동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상처 부위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진정인은 깊이 1cm, 길이 2cm의 우측 측배부 열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

피진정인들은 외관상 진정인의 치료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 의료진에게 치료 종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파출소로 연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가인권위는 이로 인해 진정인이 16시간 이상 상처를 완전 봉합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거나 유치장에 방치되어 있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의료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의료권 등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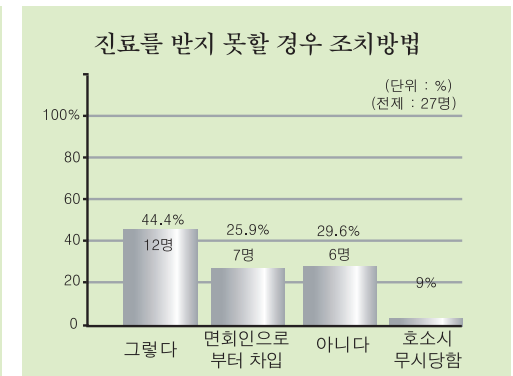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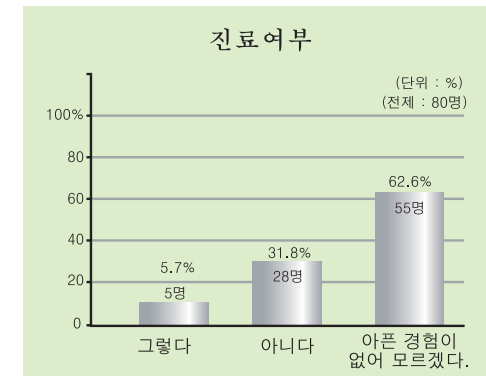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7.05.)

경찰서 유치장내 의료환경 ¹¹¹⁾

(국가인권위원회,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2003.01.30.)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¹¹²⁾ ¹¹³⁾은 의료에 관한 내용을 제22조 내지 제26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구금자는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와 치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¹¹⁴⁾ 의사는 모든 피구금자에 대하여 입소 후 가능한 조속히, 그 후 필요에 따라 면접 진찰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¹¹⁵⁾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및 특히 주의를 끄는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¹¹⁶⁾ 또한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3조에서는 유치장에 의무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 여부,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조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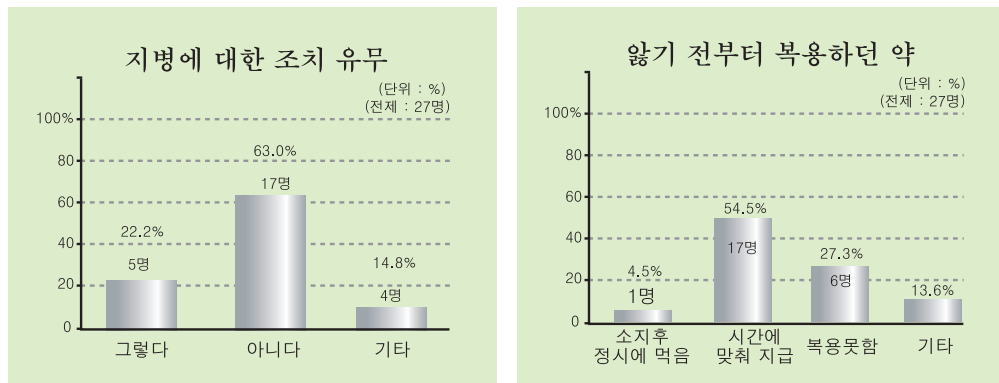


111) 국가인권위원회,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2003, p49; 이 조사보고서는 전국 5개 지역(서울·인천,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총 100명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이다. 시설방문조사의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10곳 유치장(강남경찰서, 강서경찰서, 관악경찰서, 구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성북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의정부경찰서, 남양주경찰서 유치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12)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됨 : 1957년 7월 31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1955년 8월 30일 663 C(24)로서 승인됨

시설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장 내에 의료시설이나 전문 의료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의료기관과의 의료협조체계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인이 몸이 아플 경우, 경찰서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없으며 유치인보호관이 알아서 약을 지급하거나 주무자(야간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외부병원 진료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병에 대한 조치 유무, 입감 전부터 복용하던 약의 복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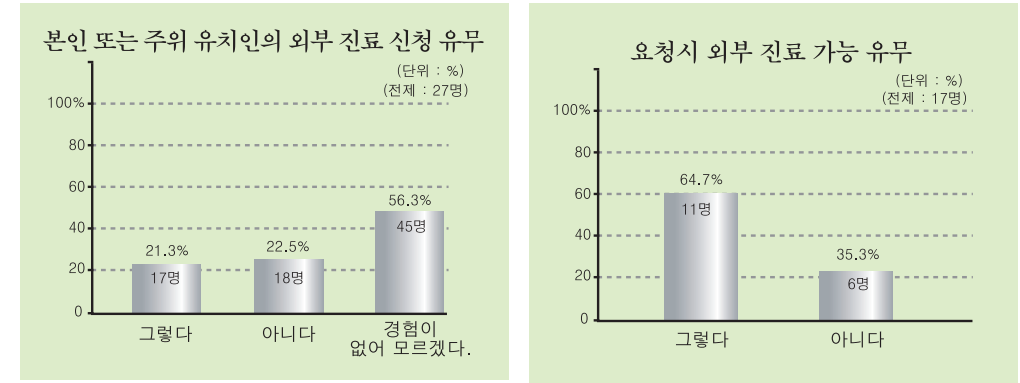


시설방문조사 결과, 입감 전부터 병을 앓고 있던 유치인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입감 전부터 상용하던 약이 있는 경우 복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유치실내에 소지하지 못하고, 때마다 유치인보호관이 지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약을 먹을 때마다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수시로 발라야하는 외용연고는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113) 피구금자 보호를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중에 '모든형태의억류, 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 이 있는데, 수용자의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원칙 24에서 원칙 26까지 규정하고 있다.
 원칙 24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의학적 검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치료와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25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2차적 의학적 검사 또는 의견을 사법기관 등에 요구하거나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그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 26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의학상의 검사를 받은 사실, 의사의 성명 및 검사결과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들 기록에의 접근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한 절차는 각 국법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 114)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22조
- 115)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24조
- 116)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25조 제1항

또한 복용하던 약을 반입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처방전을 첨부하여야 가능하므로 약을 지급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면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약 반입 자체가 불가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설문조사결과 27.3%가 '복용 못했다' 고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외부진료 신청



시설방문조사 결과, 경찰서마다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어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정병원은 경찰관서에서 가까운 병원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외부병원 진료절차는 유치인이 병원진료를 요청할 경우, 유치인보호관이 이를 유치주무자(야간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병원으로 호송하게 되는데, 이때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인계하거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접 호송한 뒤 연락을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전문적인 의료지식 있는 사람에 의해 진료방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주무자 및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작 진료가 필요한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상비약 비치

시설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도의 의무실 없이 약품보관함에 상비약을 비치하고 있

었다. 약품보관함은 유치인보호관이 의약품 수불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비치된 상비약은 소화제, 진통제, 외용연고, 감기약, 소독약 등이 대부분이다. 약품목록표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고, 비치된 상비약 종류를 유치인에게 고지하거나 게시하지는 않고 있었다. 또한 상비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비치하는 약품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인이 주로 많이 찾는 약을 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무실, 의료 전문가, 의료비

시설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곳 모두 의무실 또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의무관 또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연간 30여만원(경기지방경찰청 내 각 경찰서 연간 예산표 기준)의 예산으로 유치장에 수용되는 전체인원의 의료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¹¹⁷⁾

117) 참고로 대용감방 유치인의 의료비는 2003년 기준으로 1인당 연 7,6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의료비 59,000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국가인권위원회, 대용감방 처우 및 운영관련 정책권고, 2004.07.12.). 이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죄로 추정받아야 할 미결수용자들이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에 비해서도 더 열악한 의료현실에 직면해 있다.

사례 11

검찰의 제보자 신상정보 공개

상담번호 03-전상-0010094 | 상담날짜 2003.07.01. | 상담시간 50분

상담요지

○○경찰서 경찰인 내담자는 과거 성매매알선업자였던 A에게 제보를 부탁하여, 그 결과 성매매알선업자인 B를 체포할 수 있었다. B가 조사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성매매알선업을 더 크게 하는 업주를 놔두고 나를 구속한 것은 ○○경찰서 경찰들이 관내 윤락업주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담당 검사는 내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담자는 담당검사에게 “제보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A의 제보사실과 신상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검사가 B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A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내담자는 범죄사실 제보로 인해 피해를 당한 A에게는 미안하지만,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위원회에 진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답변요지

1. ‘인권보호수사준칙’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내사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 관계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16조 제8호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정해진 특정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는 신고자나 그 가족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검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¹¹⁸⁾ 등의 침해가 문제되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3. 한편, 피해 당사자인 A가 직접 진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복으로 인해 범죄

I · 인권신상정보의
현제와향후
과제

II · 통계로 보는 인권신상
담

III · 사례 11 · 인권침해 · 검찰
개인정보 누설

IV · 부록

신고자와 그의 가족구성원의 생명, 신체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시켜, 결국에는 범죄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세워 신문할 수 있다. 또한 증인에게 출석·선서 및 증언의 의무를 지우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간접으로 강제를 가하고 있다.¹¹⁹⁾ 따라서 수사나 공판단계에서 위협을 받는 증인을 보호하거나, 증인의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하여 인격권을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¹²⁰⁾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몇몇 특별법¹²¹⁾ 등으로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지만, 보호대상이 증인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범죄가 협소하며, 보호의 수준 또한 신변안전조치 중심이라는 점에서 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에 미흡할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해 제정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경우는 아래의 신문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신고자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지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도외시하였던 신고자 등의 보호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118) 대법원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07.24. 96다 42789).

119)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제151조(불출석과 과태료 등) ①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120) 물론 제165조에서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97조에서 증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在廷人)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으로 증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

12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정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겠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신고자등 보호

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이하 ‘성매매 등’)의 범죄신고자 등¹²²⁾에 대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¹²³⁾

가.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¹²⁴⁾ 또한 범죄신고자 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¹²⁵⁾ 인적사항의 기재생략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한 보복의 우려가 없더라도 가능한데, 이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⁶⁾

나.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

누구든지 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과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여서는 아니

122)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성매매 등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당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2호); “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1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12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6항

12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5항

1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후문

된다.¹²⁷⁾ 이 경우 또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한 보복의 우려가 없더라도 공개가 금지된다.¹²⁸⁾

다.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불허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에 대해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고, 검사가 이를 관리하게 된다.¹²⁹⁾ 이와 같은 신원관리카드는 일정한 경우 열람을 할 수 있는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불허된다.¹³⁰⁾

라.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재판장 또는 판사가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사항이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¹³¹⁾

증인으로 소환 받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킬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 또는 판사는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키거나 공개법정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다.¹³²⁾

마. 신변안전조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127)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

1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후문

129)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3항, 제7항

130)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13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13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제5항, 제6항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판장과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범죄신고자 등과 그 법정대리인, 친족등도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¹³³⁾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성매매 등의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¹³⁴⁾

3. 출판물 등으로부터 보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지 않아야 하고,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¹³⁵⁾

4.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원이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나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직권, 본인(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신문이나 조사를 할 때, 이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¹³⁶⁾

5. 심리의 비공개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33)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1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1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증인으로 소환 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도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장은 그 허가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¹³⁷⁾

“보복범죄가 방치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범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들이 경찰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보복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복범죄는 모두 2,454건으로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건수(2,634)에 육박하고 있다. 보복범죄 가운데는 폭력(2,241건)이 가장 많았으나 강도(60건), 강간(18건) 등 강력범죄도 적지 않아 범죄 신고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 범죄나 살인, 강간, 강도 및 폭력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 등의 신고자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제정해 200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 올 7월까지 전국 검찰청의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관리 대상으로 오른 인원은 28건, 59명에 불과한 데다 검사가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단 한 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니 국가기관이 범죄신고자들을 사실상 방치해온 것이 아닌가.

사정이 이러니 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하고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 우리의 범죄 신고율이 영국, 프랑스 등의 50~60%에 비해 턱없이 낮은 23%선에 머물러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학적 수사 못지않게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신고가 중요하다. 최근 두 경찰관 살해범을 검거할 때도 한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앙일보 2004.10.10일자 사설)

1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정한 등 보호

1.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¹³⁸⁾ 그리고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없다.¹³⁹⁾

2.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⁴⁰⁾

3. 불이익 금지와 지원

누구든지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¹⁴¹⁾ 그리고 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¹⁴²⁾

4. 제보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138) 위원회의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법 제49조

13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단서

14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2조

14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

14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2항;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 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본인의 허락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¹⁴³⁾

143)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3호) 제39조 제1항, 제2항

사례12

공립학교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상담번호 03-전상-0011222 | 상담날짜 2003.11.12. | 상담시간 65분

상담요지

내담자의 아들은 ○○북도 내에 있는 공립 A중학교에서 B중학교로 전학을 간 축구선수이다. 그런데 전학간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A중학교에서는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내담자의 아들은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내담자는 위원회에서 공립 A중학교의 이적동의서 거부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답변요지

1. 공립 중학교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 이러한 설명을 들은 내담자는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대한체육회의 지침 ¹⁴⁴⁾에 따르면, 운동선수가 진학 또는 소속단체의 해체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적(소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체육의 균형적 발전, 스카웃과 관련한 과잉경쟁(유명선수 빼가기) 및 혼란(이중등록선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운동선수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위 사례가 바로,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운동선수생활을 포기해야하는 상태에까지 이른 중학생 축구선수의 이야기다.

상담센터에는 위 사례 외에도 △훈련도중 발생한 코치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적을 원한

144) 선수선발및등록지침 제15조 제2항

I · 인권상담의
현제와 향후
과제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III · 사례12 · 인권침해
위법·부당한 처분
기타 국가기관

IV · 부록

○○군청 소속 선수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사건, △감독과 코치의 불화로 제대로 된 지도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선수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팀을 이적하려던 ○○시청 소속 선수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사건 등 체육특기자의 이적과 관련된 여러 상담이 있었다.

한편, 이적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국대회 출전이 불허된 국가대표 선수의 어머니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였다. 이 내담자는 상담원과의 상담을 마친 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아래는 이러한 내용이 보도된 신문기사이다.



“○○○ 제2 임춘애 되겠다”

‘제2의 임춘애’ ○○○(16·△△체고 1년)이 천신만고 끝에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귀한 금메달을 땀다.

○○○은 12일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4회 전국체전 육상 여고부 1,500m에 출전, 4분 32초52로 1위에 올랐다. ○○시의 중학교 출신인 ○○○은 올해 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기숙사가 있는 서울시의 체육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은 체육특기생의 이적을 제한하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걸려 이번 전국체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법원이 최근 ○○○의 손을 들어주면서 출전이 가능해졌다.

(굿데이 2003.10.13일자)

한편, 이와 유사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과 함께 피진정기관에 이적동의서 발급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한 사례가 있다.

역도선수 이적동의서 발급거부사건

역도선수 이모씨(22)는 “경북개발공사 역도팀에 입단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전 소속팀 공주시청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됐다”며 2003년 2월 공주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의 이적시 전 소속팀 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체육회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의 근거규정이었던 문화관광부의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지침’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¹⁴⁵⁾로 2003년 3월 2일 폐지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대한체육회의 위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운동선수는 현역선수로 활동할 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발현할 수 있으며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진정인이 무등록선수가 되는 것은 운동선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체육계의 묵시적 관행 및 사전협의 부재 등을 이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주시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6.17.)

공주시청, 역도선수에 이적동의서 발급

공주시청은 6월 24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모씨에게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이모씨는 가계약을 체결했던 경북개발공사 역도선수로 등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7.03.)

145) 규제개혁위원회는 2001.12.6.(목) 문화·관광·체육분야의 하위·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일반지침(예규)을 폐지하여 ① 체육특기자가 입학, 전학, 재입학, 편입 등의 경우 당해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 및 ②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자체 선수선발및등록규정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해야 하는 의무 등을 폐지하도록 정비안을 만들었다.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 2001.12.15.)

운동선수의 이적제한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법원의 계속된 판례 등에 힘입어 규정이 개선되게 되었다.

아래는 이러한 내용이 보도된 신문기사이다.



“아마추어 운동선수 이적 제한...현대판 「노비문서」 사라진다”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렸던 아마추어 선수의 이적 관련 선수등록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선수들의 자유 선택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수 등록규정을 고쳐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스포츠에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수가 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FA)제도가 있지만, 아마추어 선수들은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가 없으면 팀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망주가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세계일보 2004.02.12일자)

사례 13

법무부의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상담번호	03-전상-0011340	상담날짜	2003.11.27.	상담시간	55분
상담요지					

〈1차 상담〉

내담자의 부인은 중국동포로서, 불법체류도중 내담자와 약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정상적인 혼인을 위해 2003년 3월경 자진출국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5년간의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내담자는 자신의 부인이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도와주기를 요청하였다.

〈2차 상담〉

내담자는 지난 번 상담 후, 법무부에 입국금지해제요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를 받은 법무부에서는 내담자에게 “2004년 1월 중순경 부인의 입국을 허락하겠으니, 재중 선양대사관에 관련 서류들을 보내고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내담자가 재중 선양대사관에 전화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대사관 비자발급 담당자는 “우리는 그러한 서류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대사관 담당자의 이러한 말이 비자발급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알아봐달라고 요구하였다.

답변요지

〈1차 답변〉

내담자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에 ‘입국금지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보는 방안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2차 답변〉

1. 입국이 금지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서류검토 및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또한 재중 선양대사관의 경우, 입국 신청자가 많아 비자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안내한 후, 내담자로 하여금 다시 재중 선양대사관에 전화를 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를 묻도록 안내하였다.

2. 내담자 부인에 대한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원회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동포의 입국금지를 해제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수용한 적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3. 이러한 설명을 들은 내담자는 “재중 선양대사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니, 대사관에 다시 문의한 후 진정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여 상담을 종결하였다.

위 사례는 과거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한, 상담원의 적극적인 상담에 힘입어 문제가 해결된 경우이다. 내담자는 2회에 걸쳐 상담을 하며 안내에 따라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결국 부인이 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었다.

아래는 상담원 답변의 근거가 되었던 위원회의 결정이다. 위원회는 위와 유사한 진정사건에 대해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동포의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 하였고,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입국을 허가한 바 있다(아래 신문기사 참조).

한편, 상담센터에서는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및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상담사례연구 『재외동포의 법적지위(국적법 및 재외동포법을 중심으로)』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관한 자료는 본서의 부록에 실려 있다.

중국동포 입국금지 해제 권고

중국동포 오모씨(여·21)가 한국인 김모씨(남·31)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이 과거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오모

씨에게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자, 남편 김모씨는 2003년 4월 “사실혼 및 법률혼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입국규제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9.19.)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5년간 입국규제 처분은 법무부의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¹⁴⁶⁾은 물론, 헌법 헌법¹⁴⁷⁾과 국제인권규약^{148) 149)}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 의무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오모씨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 후 범칙금을 납부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점과 현재까지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김모씨가 수차례에 걸쳐 오모씨의 국가로 출입국한 점 등 인도주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¹⁵⁰⁾라며 오모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수화기 잡고 서로 울다 말없이 끊는 날도 많았죠”

회사원 김모씨는 2001년 여름, 회사 근처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당일을 하고 있던 중국동포 오모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양가의 반대를 이겨내고 2002년 4월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김씨와 결혼을 약속한 오씨는 결혼준비를 위해 어차피 중국으로 출국할 것이란 생각에 지난해 5월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오씨는 그해 9월 출

- 146) 입국규제업무처리지침(2003.2.) “17세미만 및 60세 이상의 출입국사범과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적 배우자로 단순불법체류자 등의 출입국사범은 입국규제(유예보고 불필요)를 유예한다.”
- 147)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148)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7.7.10.비준) 제23조 제1항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49)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7.7.10.비준) 제10조 제1항 “사회적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 성립된다.”
- 150) 국가인권위원회 2003.09.08.

국하려다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벌금 1백50만원과 ‘입국금지 5년’ 처벌을 받았다. 이때 부터 두 사람의 생이별은 시작됐다.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행히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오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권고했고, 드디어 지난 20일 법무부는 오씨의 입국을 허가했다.

김씨는 “결혼식 주례는 인권위원회 위원장께 부탁드릴 겁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체류자 출신인 장인 역시 한국에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라 아버지의 손을 잡지 못하고 식당에 들어설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 사람과의 사랑만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고 중국 동포와 하면 무조건 위장 결혼이 되는 겁니까? 남녀는 국적을 초월해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씨의 말속에는 중국 동포라고 하면 무조건 편견을 갖고 접근하는 우리사회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경향신문 2003.10.22일자)

사례14

구금시설의 부적절한 의료

상담번호 03-대상-0010464 | 상담날짜 2003.12.23. | 상담시간 180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감호소에서 샤워도중 귀에 물이 들어간 이후 통증이 생겨 의무실에서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등을 투여받았으나 통증은 재발되고 계속되었다. 또한 감호소에 근무하던 공익의사는 “귀속에 있는 솜 부스러기를 뽑아야 되겠다”면서 핀셋으로 내담자의 귓속 살점을 잘못 뜯어내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외부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출소할 때까지 약 3년간 감호소 측은 약물치료만을 계속하였을 뿐 수술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내담자의 청력은 소실되게 되었다(현재 청각장애 4급). 내담자는 감호소를 출소한 후, 이 사안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승소(40%) 하였다. 내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이들을 고소하여 처벌하기 위한 사전절차이었다며, 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답변요지

1. 내담자에게 위원회의 권리구제조치인 권고는 강제력 있는 형사상 처벌이 아님을 설명한 후, 형사상 처벌을 목적으로 한 고소장의 제출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해야 함을 안내하였다.
2. 또한 위 사안을 내담자가 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어도,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제32조 1항 4호) 및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민사소송)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제32조 1항 5호)에 해당되어 진정사건이 각하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 이러한 설명을 들은 내담자는 공익의사 등에 대한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위원회 출범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상담 ¹⁵⁾ 총191건 중,

의료¹⁵²⁾와 관련한 상담은 총 65건에 달해 약 34%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위 사례 역시 구금시설의 의료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구금시설의 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시설에 권고하였다.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의사 1인당 1,000명 담당, 하루에 239명 진료)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12.08.)

위원회는 2002년 8월부터 9개월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해 구금시설 의료실태 및 의료권보장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특히 문제로 지적된 점은 △자원과 재정의 절대 부족 △미흡한 의료체계 △열악한 환경 등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과 재정의 부족

2002년 7월 31일 현재,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1인당 수용자는 평균 1,000명이 넘었다. 한편,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금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 예산은 전체 국민 1인당 의료비의 6.6%에 불과해,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1차 의료기관에서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X-ray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구금시설이 70%에 달했다.

미흡한 의료체계

구금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가운데 2/3는 '수용자가 필요로 할 때 외부진료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85%는 '구금시설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구금시설에 의료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151) 진정접수된 상담 및 면진진정신청에 따른 상담 제외
152) 의료와 관련한 세부항목은 건강검진미흡, 진료권제한, 외부진료제한, 법정질환관리부실이다.

전국 구금시설 수용자 및 의사 인원현황

단위 : 명

기관별	수용인원		의사 (현원)	의사1인당 수용자
	정원	현원		
계	58,440	60,903	57	1068
서울지방교정청(13개 기관)	21,790	22,896	19	1205
대구지방교정청(14개 기관)	19,960	19,313	21	920
대전지방교정청(10개 기관)	8,690	9,305	9	1034
광주지방교정청(7개 기관)	8,000	9,389	8	1174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 p18-19)

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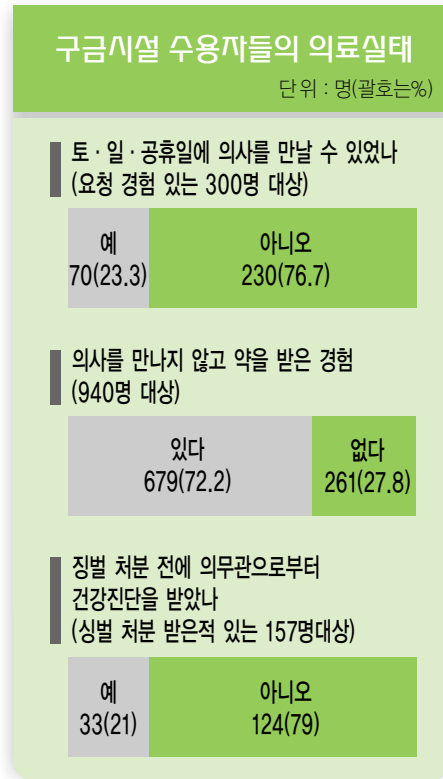
“교도소 재소자, 밤에는 아프지 마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밤이나 주말에는 ‘의료 공백’ 상황이 빚어져 응급 사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채 징벌을 집행하는 등 행정법 위반 사례도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8월부터 9개월 동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맡겨 구금시설 18곳을 대상으로 설문·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구금시설은 특히 야간이나 주말의 응급상황에 취약했다.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등에 의사진찰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수용자 300명 중에 실제로 의사를 만났다는 사람은 23.3%(70명)에 그쳤으며, 76.7%(230명)는 의사를 못 만났다고 답했다. 의사진찰을 받은 사람들도 그나마 요청 뒤 24시간이 지나서 의사를 만난 경우가 37.2%를 차지했다.

약사법 등의 규정을 어기고 의사의 진찰 없이 바로 약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응답



자의 72.2%를 차지했다. 또 행형법에는 구금시설 안에서 징벌을 내릴 경우 집행 전과 도중에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금시설이 이를 지키고 있다는 응답은 21~21.7%에 그쳤다.

구금시설 의무과 종사자들도 고충을 털어냈다. ㄷ교도소 의무관은 “ㄷ교도소는 정원이 2500명인데 현 인원은 4천명이 넘어 하루 투약인원만 900명에 이른다”며 “만일의 경우 고소고발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므로 의사로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했다.

ㄹ교도소 의무과장은 “병사의 전기난방을 한 시간 연장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안에 있던 모든 환자가 감기에 걸렸다”며 “융통성이 없는 교정행정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에는 구금시설의 의료문제와 관련한 진정이 2003년 7월 현재 543건 접수돼 있다. 인권위는 진정내용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9일 청문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한겨레 2003.12.09일자)

구금시설 내 의료문제와 관련해 종합적 대책마련 권고

“부인(이모씨)이 구치소에서 왼쪽 손목을 부상당했으나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모씨의 남편 김모씨가 부산구치소 의무과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료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차후 외부 의료인을 초빙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과 △구치소 장비 및 인력만으로 진료

15개 구금시설의 소빙 진료 현황

단위 : 건

구금시설	2000년		2001년		2002년		계		진료과
	회수	건수	회수	건수	회수	건수	회수	건수	
청송1교도소	4	23	11	62	6	40	21	125	정신과
청송1감호소	-	-	-	128	-	577	-	705	치과, 정신과
청주여자교도소	19	297	23	416	13	176	55	889	주요 치과
천안소년교도소	74	675	92	699	90	711	256	2,085	치과, 이비인후과
진주교도소	-	-	-	-	-	-	-	-	치과
대구교도소	-	931	-	906	-	1,044	-	2,881	-
대전교도소	26	-	26	-	26	-	78	-	피부, 정신, 외과
춘천교도소	68	888	78	766	75	658	239	2,312	주요 치과
목포교도소	-	-	-	-	-	-	-	1,477	-
서울구치소	-	-	20	-	20	-	40	-	-
수원구치소	-	-	-	-	-	-	-	-	-
공주교도소	-	-	-	-	-	-	-	-	-
광주교도소	-	-	-	-	-	-	-	-	-
군산교도소	-	576	-	729	-	1,064	-	2,369	치과
천안개방교도소	10	120	14	144	32	334	56	598	치과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 p39)

또는 검사가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외부진료를 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문제 종합적 대책 마련을 부산구치소장에게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1.19.)

사례 15

구금시설의 인권위 진정방해

상담번호 03-전상-1000549 | 상담날짜 2002.12.28. | 상담시간 45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눈을 다쳤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2002년 10월 경 출소하였다. 교도소에 있던 2002년 초, 자신이 받은 치료가 잘못되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면전진정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교도소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우편으로 보낸 진정서마저 검열하여 발송을 금지하는 등, 진정을 방해하였다.

내담자는 교도소 측의 진정방해행위에 대해 조사 후 시정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답변요지

1.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자의 서면진정서의 발송을 금지하고, 면전진정신청을 거부하여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하였다.
2. 또한,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지 않거나 이를 열람한 자 및 수용자가 면전진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동법 제57조)을 설명하였다.

구금·보호시설¹⁵³⁾에 수용되어 있는 자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¹⁵⁴⁾,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할 때에는 또 다른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53) 구금·보호시설에는 ① 각종 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 감호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포함), ②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데 사용하는 시설, ③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 포함) ④ 외국인보호소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인보호시설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54) 수용자와 국가의 관계가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법적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우리 대법원(대법1982.7.27. 80누86)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용자의 제소권을 인정하였다.

한편, 시설수용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의 면전에서 진정할 수 있는데, 이를 면전진정이라고 한다. 면전진정 제도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시설수용자가 시설의 비개방성(혹은 폐쇄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기회를 차단당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과 직접 만나 상담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데 의미가 있다.¹⁵⁵⁾

아래에서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위진정방법과 기타권리구제방법 및 양자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교도소 내에서의 서면진정

서면진정서의 작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시설의 장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¹⁵⁶⁾,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할 때에는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⁵⁷⁾

서면진정서의 송부

구금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와 같이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¹⁵⁸⁾

서면진정서의 열람금지 등

구금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155) 국가인권위원회, 월간『인권』 2004.7. p26-27
 156)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15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1항
 15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 전단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¹⁵⁹⁾ 또한 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⁶⁰⁾

한편, 소속 공무원 등은 위원회 명의로 서신을 개봉한 결과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서면을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¹⁶¹⁾

교도소 내에서의 면전진정

면전진정의 신청

시설수용자가 면전진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밝히게 되면, 소속 공무원 등은 그 의사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¹⁶²⁾

이러한 통보에 대해 위원회는 면전진정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면전진정신청접수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발급받은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¹⁶³⁾

면전진정 신청자와의 면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¹⁶⁴⁾

- 15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7항
- 160)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16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 16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
- 16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 후단
- 16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8항

면전진정을 접수받기 위해 시설을 방문한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¹⁶⁵⁾

또한 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①시설의 직원이나 시설수용자 등을 진술을 듣는 방법 ②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받는 방법 ③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 조사를 할 수 있다.¹⁶⁶⁾

면전진정접수 또는 상담종결

시설수용자와 면담을 한 위원 등은 수용자가 진정을 원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¹⁶⁷⁾

한편,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담만으로 종결되고, 면전진정 신청자체를 철회한 경우에는 면전진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¹⁶⁸⁾

구금시설 수용자의 기타권리구제방법¹⁶⁹⁾

수용자의 권리구제는 크게 ‘비사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사법적 구제수단으로는 소장면담¹⁷⁰⁾, 청원¹⁷¹⁾, 행정심판¹⁷²⁾ 등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있다. 사법적 구제는 민사·형사·행정소송의 형태가 있고, 기본권침해의 경우는 헌법소원까지 가능하다.

- 16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5항, 동법 제24조 제3항
- 166)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10조, 동령 제3조 제3항
- 16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4항,
- 168)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가이드북』, 2003, p27
- 169)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2002, p10-14
- 170) 행형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진정과 기타권리구제방법과의 비교¹⁷³⁾

1. 진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위원회의 진정은 인권을 침해당한 자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¹⁷⁴⁾ 그러므로 행형법에서의 청원과 같이 자신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각하 당할 염려가 없으므로 수용자 외의 제3자도 진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된다.¹⁷⁵⁾

2. 입소시 고지여부

행형법에는 청원의 고지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¹⁷⁶⁾은 ‘구금시설의 장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집필 및 발송과 관련하여

청원이나 소장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장의 집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¹⁷⁷⁾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은, 진정함 옆에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¹⁷⁸⁾ 진정서 작성을 위하여는 소장의 집필허가가 필요하지

171) 행형법 제6조 제1항 “수용자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172)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173) 구금시설 연구모임, 『구금시설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2002, p38-39

17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17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

176)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

177)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2003년 12월 19일, 행형법상의 ‘집필사전허가제도’와 관련한 규정(행형법 제33조의 3)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78)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않다. 그리고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수용자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서신교환에 대하여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¹⁷⁹⁾ 한편, 진정서는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작성할 수 있다.¹⁸⁰⁾

인권위, 면전진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진주교도소 관련자 6명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들의 면전진정을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주교도소 교도관은 진정을 한 수용자 이모씨를 면담하면서 “국가인권위 진정을 취하지 않으면 전방시키겠다”며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진정방해행위를 하였다. 또한 엄모씨가 올해 5월에만 5차례에 걸쳐 교도관 폭행 등을 이유로 면전진정을 신청했지만 면전진정처리부에는 그 내용이 기재조차 되지 않았고, 교도관은 “써서 제출해도 (접수)되지도 않는다”고 말해 진정취하를 종용하였다. 한편 함모씨도 지난 6월 교도관에게 서면진정 보고전을 냈는데, 1주일이 지난 뒤에서야 교도관이 함모씨를 불러 ‘웬만하면 적응하고 있어라. 보안과장을 면담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7월에는 면전진정을 신청했지만, ‘내일 보자’는 말로 진정신청을 회피하였다.

그간 조사과정에서 진주교도소측 관계자들은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진정인들의 문답서와 메모, 진주교도소측의 서면진정처리부와 업무일지 등을 검토한 뒤, 진주교도소측의 진정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면전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명시돼 있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진주교도소 관련자들의 면전진정 방해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를 침해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를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

179)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2항

180)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원회법 제57조는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2.09.02.)

사례 16

구금시설의 사슬을 이용한 장기간의 징벌 및 폭행

상담번호 03-대상-0010182 | 상담날짜 2003. 08. 20. | 상담시간 125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1999년 여름경, ○○감호소에서 교도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큰 소리로 항의를 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약 5분이 지나자 교도관 5명이 내담자에게 달려들어 양 손목, 양 팔, 허리, 양 발목을 쇠사슬로 묶고 커다란 자물쇠를 여러 개 채웠다. 이 상태에서 똑바로 누울 수가 없던 내담자는 앉아서 잠을 자야했고, 식사도 옆드려서 해야만 했다. 위와 같이 묶은 상태로 약 2달이 지난 후 '사슬을 느슨하게 해주거나 주임과 면담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항의 표시로 문을 1회 발로 찼다. 그러자 교도관들은 발에 채운 사슬을 허리 뒤에 채운 사슬 쪽으로 바짝 당긴 후 서로를 연결하여 내담자를 옆으로 쓰러뜨린 자세로 고정시켜 놓았다. 또한 당일 야간 근무자는 머리를 구둑발로 수회 가격하고 교도봉으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내담자는 이 상태로 1개월간 있었다.

내담자는 면담요청거부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사슬로 온 몸이 묶이고 폭행을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국가배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답변요지

1. 감호소 내에서 부당한 계구사용 및 폭행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나, 내담자의 사안은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각하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 또한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하여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3. 이러한 설명을 들은 내담자는 진정과 소송은 많은 기대를 하기도 어렵고 너무 번거롭다며, 언론사를 찾아가 보겠다고 하였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거나 계구(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야만 하고, 이를 임의로 부과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행형법 및 법무부의 규칙(수용자규율및징벌에 관한규칙,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에관한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위원회에서는 구금시설의 징벌 및 계구사용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표명하였고, 법무부는 이러한 권고 및 의견을 수용하여 규칙을 개정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자

징벌의 부과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교도관이 임의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징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등의 부소장과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¹⁸¹⁾

징벌 부과요건

수용자가 ①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② 자해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④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⑤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¹⁸²⁾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 달성을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¹⁸³⁾

181) 행형법 제47조

182)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183) 행형법 제46조

징벌이 잘못 부과된 경우 불복방법

징벌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룰 수 있고, 나아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통해 사후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¹⁸⁴⁾ 아래는 ‘교도소의 연속 징벌’로 인해 자살한 수용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기사이다.

“교도소 연속징벌 자살」 유족 국가배상 소송”

교도소 수감중에 자살한 배모씨의 유족들은 교도소측을 상대로 “과도한 징벌과 계구사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자살원인을 제공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배씨는 사망당시 77시간동안 사슬에 묶이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배씨는 부산교도소에서 4개월 연속 징벌을 받은 뒤 교도관과 재소자 폭행 등으로 징벌이 누적되다 재작년 5월 속옷으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인권위는 지난 1월 배씨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에 법률구조를 요청한 바 있다.

(SBS 2004.08.06일자)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자

계구는 오직 교도소장만이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

18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용자의 법적권리에 관한 연구』, 2002, p13

계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¹⁸⁵⁾

계구 사용의 요건

교도소장은 ①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②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 ③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④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⑤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 한하여 계구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¹⁸⁶⁾

따라서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¹⁸⁷⁾

징벌·계구 규칙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자 징벌제도 시정 및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징벌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을 개정하고,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완화할 것 △징벌의 종류 중 금지의 집행내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서신수발·집필·운동 등의 기본권을 허용할 것 △징벌위원회 구성 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것 △징벌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벌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할 것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6.23.)

185)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4조
186)187) 행형법 제14조

수용자 계구관련 시정 및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슬 및 가죽수갑을 폐지하고 계구 사용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계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의 세부적인 권고 내용은 △계구의 사용요건을 명확히 할 것 △계구사용요건의 한계인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할 것 △계구의 종류 중 사슬과 가죽수갑을 폐지할 것 등이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계구 가운데 가죽수갑을 폐지할 것도 권고하였다. 가죽수갑은 ‘양팔의 팔목에서 팔꿈치까지를 가죽 띠로 고정시키고 이를 다시 허리에 묶는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행형법에 정한 수갑에 포함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7.22.)

법무부의 징벌·계구 규칙안에 대한 수정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서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징벌·계구 규칙안 일부조항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법무부의 규칙안 중 징벌규칙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고지한 규율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벌사유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교도소마다 징벌사유가 달라지게 돼 적법절차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므로 삭제해야 하고, △수용자의 건강진단결과를 덧붙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연속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연속집행은 그 자체가 금지기간을 초과해 집행하는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계구규칙과 관련하여서는 △계구사용요건으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용할 여지가 있어 계구사용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므로 “도주하거나 하려고 할 때”로 수정해야 하고, △계구의 완화요건으로 목욕이나 식사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해, 운동 또는 용변시도 이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2.12.)

“교정시설 가축수갑 사라진다”

법무부는 7월 1일 가축수갑 및 소란 방지형 안면보호구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생활규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징벌 및 계구사용 규칙을 개정,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그 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가축수갑, 소란 방지형 안면보호구 사용이 금지되고 금속 수갑 대신 벨트수갑 및 플라스틱 수갑을 사용토록 했다. 또 포승 사용방법 중 결박의 정도가 심한 다리 결박을 금지했으며 7일 이상 계구를 사용할 경우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또 허가 없는 취침, 정리정돈 소홀, 낙서 등 수용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규정(징벌)을 폐지했다. 징벌처분 중 가장 무거운 금치의 경우 상한기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했으며,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또 징벌 집행 중에도 접견, 집필, 서신교환 등이 가능토록 했으며 일정기한이 지나면 징벌처벌 경력을 삭제해 가석방 등 처우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징벌실효(失效)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일보 2004.07.01일자)

사례 17

정신병원의 편법적인 순환입원

상담번호 03-대상-0010403 | 상담날짜 2003.11.24. | 상담시간 120분
 상담요지

IMF로 인해 실직을 당한 후 술에만 의지하던 내담자는, 어머니와 병원 원무과장의 모의하에 강제입원 되었다. 처음에 입원한 ○○정신병원은 △△정신병원과 동일한 재단으로(동일 이사장), 편법적으로 환자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그 결과 내담자도 4년 넘게 이 두 병원을 오가며 계속 입원하게 되었다. 한편, 내담자의 어머니는 ○○정신병원의 주치의가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니 퇴원시키라”고 계속해서 종용하자 어쩔 수 없이 퇴원시킨 후, 즉시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내담자는 2003년 10월이 되어 “가족과 친지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과 취업하여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것”을 어머니에게 약속한 후, 총 5년 5개월간의 감금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내담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정신병원의 원무과장이 모의하여 장기치료의 필요가 없는 자신을 4년 넘게 정신병원에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처벌 및 손해배상)를 취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답변요지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고, 이를 연장할 경우 시·도지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설명한 후, 그런데 다수인보호시설이 이러한 규정을 어겨 인권을 침해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하였다. 다만 상기 사안의 경우,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각하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 한편,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강제입원을 시켜 온 내담자의 어머니와 이를 공모한 ○○정신병원 원무과장은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어머니,

원무과장, 병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후 어머니에 의한 강제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3. 그러나 내담자는 위와 같은 고소 등의 해결방법을 부담스러워하여, '익명의알콜중독자를위한모임(일명 'AA')' 을 안내하였다. 내담자가 'AA' 의 도움을 받고 생활이 안정된 후에 진정 및 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위원회 출범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상담¹⁸⁸⁾ 총164건 중, '불법/강제 입원' 과 관련한 상담은 총76건에 달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다.

위 사례 역시 보호자 및 병원에 의해 불법/강제 입원된 경우이다. 그런데 위원회법¹⁸⁹⁾ 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강제 입원에 협조한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으나, 이를 주도한 보호자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⁹⁰⁾

아래에서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강제입원된 환자가 스스로 퇴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관한 자료는 2003년 9월 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정신병원 관련 심화WORKSHOP을 기본으로 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03년 5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는 한편, 2004년 6월에는 환자를 불법적으로 강제입원시킨 병원에 대해 고발하였다.

188) 진정접수 된 상담 및 면진진정신청에 따른 상담 제외
 18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90) 형사상 감금죄에 해당하는지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191) "직계혈족(부모, 자녀), 혼인한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민법 제974조)

강제입원 가능여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과전문의를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정신보건법 제24조). 여기서 말하는 보호의무자란, 민법상 부양의무자¹⁹¹⁾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위 사례를 볼 때, 생활무능력 상태에 빠진 내담자의 보호자는 어머니가 되므로, 어머니가 동의한 때에는 내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정신과전문의를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처럼 보호자가 정신병원의 원무과장과 모의하여 입원시킨 것은 불법적인 감금이 된다.

시도지사에게 의한 입원

시·도지사는 정신과전문의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¹⁹²⁾



영화 <여섯 개의 시선 -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박찬욱 감독의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는 92년 36살의 나이로 한국에 왔던 네 팔 여인 '찬드라 꾸마리 구룽' 의 실제 사건을 다룬 실화다.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 섬유회사에서 일하던 찬드라는 어느 날 분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지만 한국말을 잘 못한다. 그러나 찬드라가 한국인처럼 생

192) 정신보건법 제25조

긴 탓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다. 식당 주인은 찬드라를 경찰에 넘기고, 경찰은 ‘심신미약자’로 분류해 정신병원에 넘긴다. 정신병원에선 ‘정신분열증’ 환자로 분류해 그를 가둔다. 공장에서 행방불명 신고를 했지만 끈이 닿지 않은 채 찬드라는 낯선 땅, 말도 안 통하는 정신병원에 수년 동안 감금된다.

(씨네21 2003.11.10.)



강제입원된 자의 자의퇴원 가능여부

퇴원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¹⁹³⁾ 이러한 심사청구에 대해 시·도지사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¹⁹⁴⁾ 또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⁹⁵⁾

만약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¹⁹⁶⁾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도 내담자는 시·도지사에게 퇴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퇴원청구가 받아들여질 때에는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의 동의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

193) 정신보건법 제29조
 194) 정신보건법 제30조
 195) 정신보건법 제31조 제1항
 196) 정신보건법 제34조

인권위원회에 진정

위원회법 제30조에 의하면 다수인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내담자는 병원(원무과장)의 협조아래 행해진 불법한 강제입원에 대해 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인권위, ‘환자 감금’ 의혹 정신병원 2곳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지역 정신병원 2곳의 근무자였던 A씨 등 2명이 “병원이 불법행위로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두 병원이 환자의 입·퇴원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입원동의서 및 서약서, 퇴원확인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원 후 3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강요해 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장기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이들 병원의 기록에서 퇴원 후 10일 이내에 재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 환자들 중 절반 정도는 한 번도 퇴원 및 외출 외박을 한 사실이 없고 일부 환자는 10년이 넘도록 퇴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입원환자를 상대로 6개월마다 실시하는 ‘계속입원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계속 입원시켜 온 점 등을 밝혀내고 이들 병원이 심판위원회측의 명령을 피할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2004.06.11일자)

미인가 정신보건시설의 문제

위원회법 제30조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다수인보호시설’이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을 말한다¹⁹⁷⁾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보건시설’은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시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미인가시설과 관련한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될 때에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거나 관련수사기관에 이송된다. 미인가시설의 경우 인가시설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다수인보호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되고,¹⁹⁸⁾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감옥 같은 요양원, 원생들 인권유린”

감옥형태의 건물을 지어놓고 200~400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해 폭행, 감금, 불법 투약 등을 일삼아온 요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1일 양평군 용문면 S요양원 부원장 김모씨(50)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장 임모씨(7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2년 8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정모씨(37) 등 정신, 지체 질환자 164명을 수용하고 이들이 말을 듣지

19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2조

198) 정신보건법 제43조

않을 경우 안수기도를 핑계로 폭력을 일삼아온 혐의다. 또 지난해 8월 김모씨(31) 등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약하는 등 환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 없이 불법투약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02년 3월19일부터 최근까지 환자 가운데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15명에게 지급된 월 30만원의 수급비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용자들은 가족들이 돌보기를 꺼려하는 정신지체 질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곳은 일반 정신병원보다 썩 월 30만원에 원생들을 맡아왔기 때문에 많게는 400명까지 수용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2004.06.21일자)

불법하게 강제로 입원시킨 자의 처벌

감금죄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죄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76조). 여기서 말하는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¹⁹⁹⁾으로, 정신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불법한 강제입원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판례²⁰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전에 위 병원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였으나, 피해자를 대면한 진찰이나 위 병원장의 입원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무과장에게 강

199) 이재상, 『형법각론』, 2002, p118

200) 대법원 2001.02.23. 2000도4415.

제입원을 부탁하여 원무과장이 자신의 판단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구급차에 실어 위 병원에 데려온 사실은 정신보건법에 기한 행위 또는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그를 감금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아내 정신병원 감금, 남편 요청 수용한 의사 2명 기소”

남편의 요청에 따라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시킨 현직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고검과 의정부지검은 최근 경기도 ㄱ병원 정신과 전문의 박아무개씨와 신아무개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야간·공동감금)로, ㄴ대학병원 의사 최아무개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1년 1월 각각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편들이 개종 목적으로 입원을 의뢰한 부인 오아무개(31)씨와 정아무개(34)씨가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는데도 71~79일 동안 강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병원 쪽은 오씨 등을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하는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뒤 외부와의 전화통화와 면회·산책 등도 금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씨는 당시 ㄱ병원에서 환자 입원 결정 권한이 없는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남편이 강제 입원을 의뢰한 오씨를 전문의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2004.04.27일자)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²⁰¹⁾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은 1980년대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신과 관련시설의 급증이 곧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인권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및 부적절한 행위가 관행화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에 위원회법 제24조에 의거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입·퇴원 과정에서의 문제와 기타 인권상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이송과정 및 입원결정 시의 문제

가족에 의한 입원의 경우 통상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측과 사전에 협의한 후, ‘사설환자이송단’을 이용하여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물리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고, 입원결정 시에도 환자에 대한 진단 없이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

2. 퇴원 과정에서의 문제

현재로서는 가족이 있어도 환자를 도외시하는 경우나 무연고 환자 등의 경우 퇴원환자를 시·군·구청장에게 인계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들 중 대부분은 상태가 훨씬 악화되어 다시 정신과 관련시설로 돌아온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입·퇴원과정에서의 환자의 의사 배제

조사대상 병원 모두 환자의 입원연장 심사시 환자가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비록

201)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보고서』, 2003

정신질환자의 주장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환자의 권리보장이 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되었다.

4. '회전문' 현상의 문제²⁰²⁾

'회전문' 현상이란 정신과 관련시설들 사이에서 환자들을 계속 순환입원시키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정신과 관련시설들의 경우 병원 운영을 위해 보다 많은 환자의 입원이 필요하지만, 환자의 입원기간이 6개월이 되는 시점마다 병원에 지급되는 의료수가가 일정 비율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5. 기타 인권상의 문제

첫째,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신체질환자의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문제는 정신질환 외 질병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데 있다. 즉 정신과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은 환자 1인 당 정해진 액수가 지급되는 정액수가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신체질환자의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급여환자²⁰³⁾와 보험환자 사이의 차별문제이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조사관들은 급여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병동과 보험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병동 사이에는 상당한 환경상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그 환자로 인하여 병원 측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차이에 기인하지만, 이를 급여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202) "1997년 12월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속 입원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퇴원심사청구 등)가 마련되었지만,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몇백 명의 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 여부를 수명의 전문가가 몇 시간 만에, 그것도 그 적절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판정해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그 장치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입원되거나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지역 사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병원이나 수용 시설 입장에서는 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바로 경제적인 손실과 시설의 존폐를 의미하는 대단히 민감한 정치·경제적 문제가 된다. 정신병원의 수용과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라는 정신질환자의 관리 방식이 대단히 경제적인 배경하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신영진, 「브롬덴추장은 무사히 그 골짜기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 정신질환자의 배제와 차별의 정치경제학」, 『당대비평17』, p254

203)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 환자

정신의료기관의 입·퇴원 과정을 검토해볼 때, 보건복지부의 정책사항인 탈원화 경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다. 의사들의 판단에도 환자의 절반 내지 3분의 1은 퇴원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²⁰⁴⁾

20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자료집)』, 2003, p10

사례 18

군대 내 구타와 헌병대의 수사미진

상담번호 03-대상-0010423 | 상담날짜 2003.12.01. | 상담시간 160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현역 사병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올 12월 전역 예정자이다. 내담자가 상병이었던 2003년 5월 14일 오전, 분대장인 A병장은 앉아있던 내담자에게 A4 용지를 던졌다. 이에 내담자가 A병장을 쳐다보자, “쳐다보면 어쩔 건데? 너, 나하고 싸워보자”라며 내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른 후 10분 정도 구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B상병은 옆에 있던 후임병 C일병에게 “누가 볼 수 있으니 망을 보라”고 한 후, 자신은 내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있었다. 내담자가 심하게 구타를 당해 피까지 흘리자, 주변에 있던 D병장이 A병장의 구타를 중지시키고 내담자에게 씻도록 하였으며, 그 사이 A병장으로 하여금 중대장을 먼저 찾아가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다.

중대장이 내담자를 불러 자초지종을 듣던 중, 내담자의 코에서 계속 피가 흐르자 의무실로 데려가 외상연고를 바르게 하였다(당시 군의관이 없었음). 내담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자 중대장은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하였는데, 의사는 코뼈가 부러진 것이므로 붓기가 빠지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대장은 이러한 내용이 상부에 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의관에게는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며 내담자를 군법당에 머무르게 하였다. 하지만 내담자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다음날 군의관을 찾아갔고, 군의관은 당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중대장을 만났으나, 중대장은 군의관의 말을 무시한 채 군병원에는 가지 못하게 하였다. 대신 자신이 내담자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게 하였는데, 이 곳에서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게 하였다. 내담자를 진찰한 □□대학병원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 전신마취가 필요하니 2~3일간 입원을 하라”고 하였으나, 중대장은 “큰 병원은 원래 그런 것이다”라며 수술을 못 받게 하였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후 내담자의 부대에는 예비군들이 오게 되었는데, 내담자는

한 예비군에게 그간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 예비군은 이러한 내용을 육군 본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그리하여 사단 헌병대의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중대장은 이 때에도 중대원간 말을 맞추게 하였고, 중대원들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중대장은 내담자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사고사례를 보여주며 “봐라. 구타사고 시에도 상급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하급자는 실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조용히 해라”는 협박을 하였고, 내담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중대장의 요구에 따라 허위진술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내담자는 제대를 한 후 진정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였다.

답변요지

1. 군대 내에서의 구타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나, 내담자의 사안은 이미 헌병대 수사가 종료된 것이므로 위원회법 제 32조 1항 5호(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 만일 각하되지 아니하고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담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때에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위 사건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3. 이러한 설명에 대해 내담자는 “구타당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은폐한 중대장과 헌병대의 짜맞추기 수사다”라며, 전역 후 위원회를 다시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다.

위원회 출범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군사기관’ 관련 상담²⁰⁵⁾ 총130건 중,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한 상담은 총31건에 달해 24%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 ‘군대내 사병들의 인권실태’에 따르면, 아직도 절반이 넘는 현역병이 구타 또는 가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기탈취사건의 피의자로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내담자를 구속영장 없이 11일 동안 불법감금하면서 견봉을 다리사이에 끼워 군화발로 밟고, 잠을 안 재웠으며, 쪼그려 뛰기를 수백 번 시키고, 4일 동안 포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상담도 있었다.

군대내 사병들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2.08.)

이 설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천주교인권위원회 및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실시한 것으로, 대상자는 휴가병 236명과 2001년 제대 예비역 142명으로 총 378명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

아래 표에 따르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은 예비역에 비해 현역병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가?				
	구 타		가 혹 행 위	
	있 다	없 다	있 다	없 다
예 비 역	67.38%	32.62%	76.60%	23.40%
현 역 병	56.36%	43.64%	59.40%	40.60%

(‘군대내 사병들의 인권실태 조사’ 표1, 2, 3 편집)

205) 진정접수 사건 및 상담 중 군수사기관, 군구급시설 제외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대처

구타 또는 가혹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구 분	빈도(명)	유효백분율(%)	
유 호	① 목격하거나 당한 적이 없었다	49	13.73
	②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였다	7	1.96
	③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3	0.84
	④ 소원수리를 작성하였다	13	3.64
	⑤ 부모나 친지에게 알렸다	3	0.84
	⑥ 군종장교 또는 의무장교에게 상담하였다	3	0.84
	⑦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	271	75.91
	⑧ 기타	8	2.24
합 계	357	100.00	

(‘군대내 사병들의 인권실태 조사’ 표7)

위 표 중 ⑦로 대답한 예비역과 현역병의 응답이유

단위: 건(%)

	함께 처벌 받을 것 같아	보복이 걱정되어	보고나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병상호간 부당대우를 받을 것 같아	기 타
예 비 역	5.31%	2.65%	53.10%	20.35%	18.58%
현 역 병	4.82%	7.83%	62.65%	13.25%	11.45%

(‘군대내 사병들의 인권실태 조사’ 표9 편집)

이번 조사 결과 군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병들이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군대 내의 적법절차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대 구타피해, 국가가 책임”

군대에서 입은 구타피해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은 부대에서 구타를 당해 신장이 파열되는 증상을 입은 23살 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부상당한 사람이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훈련조교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9년 훈련소에 입소한 상태에서 훈련조교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맞아 신장이 파열돼 제대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YTN 2003.07.23일자)

사례 19

군대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상담번호 03-전상-0010924 | 상담날짜 2003.10.01. | 상담시간 27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1996년 6월부터 OO부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였다. 이들은 새벽에 취침 중인 내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괴롭히는 한편, 근무 중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강요하였다. 내담자는 자신과 관련한 성추행 사건의 시일이 많이 지나긴 하였지만,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만큼 수치스럽고 화가 난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지금이라도 당시의 선임병을 처벌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였다.

답변요지

1. 군대 내에서 선임병 등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만, 내담자의 사안은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제3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각하됨을 설명하였다.
2. 또한 군형법상 성추행에 관한 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군 복무 당시의 선임병들을 고소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3. 한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역시 완성된 상태이므로 민사상 피해구제도 어려움을 설명한 후 상담을 종결하였다.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성추행)은 공공연한 사실이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남성간 성폭력 문제의 경우 남성문화와 관련되어 신고율이 낮고 인식이 미비하여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었다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신뢰할만한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²⁰⁶⁾

206)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4

이에 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4개월간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였다. 아래는 이러한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군대내 성폭력과 관련한 신문기사이다.

군대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4.08.)

이번 조사는 육군 현역 및 제대사병 671명(294명은 부대방문, 111명은 휴가병, 266명은 제대사병)을 대상으로 △성폭력 발생을 및 그 유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실태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폭력 가해자(8명), 성폭력 피해자(3명)와의 면접과 군법무관, 의무관 등에 대한 보충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하였다.

성폭력 발생을 및 유형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효 응답수 671명 중, 직접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103명으로 전체의 15.4%, 직접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성폭력 발생을 듣거나 본 경우는 166명으로 전체의 24.7%에 달했다.

성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성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허용)

단위 : 건(%)

	피 해 자		목 격 자	
	빈도(건)	백분율(%)	빈도(건)	백분율(%)
키스	16	9.4	29	7.8
포옹	70	41.2	77	20.6
가슴,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	57	33.5	93	24.9
성기만지기	22	12.9	84	22.5
성기 삽입 시도 또는 성기 삽입	2	1.2	19	5.1
자위행위 강요	1	0.6	24	6.4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	2	1.2	44	11.8
총계	170	100.0	373	100.0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p61 표15)

성폭력에 대한 신고 및 처리실태

성폭력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총 103명 중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발생했을 때, 귀하는 상관에게 보고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 사람은 총 87명으로, 이 중 보고(신고)하였다는 응답은 4건(4.4%)에 그쳤다.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허용)

단위 : 건(%)

	1 순 위		2 순 위	
	빈도(건)	백분율(%)	빈도(건)	백분율(%)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	12	16.0	10	19.6
오래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	48	64.0	14	27.5
불이익이 두려워서	6	8.0	4	7.8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7	9.3	16	31.4
기타	2	2.7	7	13.7
총계	75	100.0	51	100.0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p88 표29)

I · 인권실정조사
현제와 향후
추진 과제

II · 통계로
보인 인권실정

III · 사례
19 · 인권침해
군사기관 ·
가혹행위

IV · 부록

이처럼 군대내 성폭력의 신고율이 극히 낮은 이유를 분석하면(아래 표 참조), 첫째, 이러한 성폭력을 일상적 군대문화의 일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신고 및 처리절차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당한 후 발생한 후유증

성폭력 피해 후 나타난 증상에 대한 응답 114건 중 모욕감 17건(14.9%), 수치심 17건(14.9%), 분노 16건(14.0%)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 후 태도변화를 보인 경우는 총 92건 중 21건(22.8%)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8건,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5건, ‘자신의 남성적 정체성에 대한 회의’ 4건, ‘후임병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 시도’ 3건, ‘여자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 시도’ 1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등병, 너 예쁘장하네” 심각한 군내 성희롱

군대 이등병 시절 내무반 선임병장에게 성폭행 당했던 대학원생 L(28)씨는 8년째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96년 경기도의 육군 모 부대로 배치를 받은 첫날밤, L씨에게 떨어진 첫 명령은 선임 김 병장과의 ‘동침’이었다. 잠이 잠깐 들었을 때 ‘예쁘장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그의 바지 속으로 김 병장의 손이 들어왔다. 다음날 김 병장은 L씨를 찾아와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너는 끝”이라며, 자신의 성기에 입을 갖다 댈 것을 강요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니까 봐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갓 입대한 신병에게 선임병장은 하늘같은 존재였다. 김 병장이 제대할 때까지 L씨는 목욕탕으로, 화장실로, 연병장 뒤로 불려가 갖은 성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이씨는 “남들은 추억처럼 군 생활을 얘기하곤 하지만 나에게 남은 건 악몽뿐”이라며 “여자친구와 팔짱을 낄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손도 못 잡는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충남 육군 모 훈련소에 입소한 지 1주일 만에 훈련 조교에게 성폭행을 당한 K(27)씨는 취재진 앞에서 울음까지 터뜨렸다. 오전 2시쯤 함께 초소 근무를 나간 조교가 “너 여자랑 그거 해 봤냐”고 물은 뒤 조교는 바로 K씨의 입에 ‘강제 키스’를 했다. 이에 K씨가 소리를

지르자 조교는 “가만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며 K씨의 성기를 주물렀고, 나중에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조교는 더 나아가 “(헌병대 등에) 신고하면 제대 끝까지 불이익이 올 것”이라며 K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2000년 겨울 경기도 오산의 공군 모 부대 안에서는 최고참 선임병 2명이 막 전입 온 신병 두 명에게 ‘자대 배치 신고식’ 명목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도록 강요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모(24)씨는 “정말 짐승 같은 짓이었지만 군기 잡는다는 명분으로 악습은 몇 년간 계속 진행됐다”며 “불이익을 겁내서 누구도 감히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군 성폭행 문제를 이제는 밀폐된 병영으로부터 밖으로 끌어내 사회적 공론화함으로써 정확한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선일보 2003.07.14일자)



“사병간 성추행 국가에 배상책임”

군대에서 일어난 사병 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4일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군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실정을 감안하면 부대 지휘 책임자는 성 군기위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가는 부대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자살이 전적으로 성추행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도, 성추행 자체가 피해를 줬다면 국가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입대했지만 적은 말수와 내성적인 성격 탓에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대 선임병 K씨는 이런 김씨를 도와주려는 커녕 김씨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주무르는 성추행을 계속했다. 같은 해 7월 휴가를 받은 김씨는 고향집에서 부대복귀를 놓고 고민하던 끝에 아파트 25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세계일보 2004.09.24일자)

국가인권위원회
7 11 1

차별 상담

사례20 - 정신지체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에서의 차별

사례21 -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

사례22 - 입양기관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 거부

사례23 - 기업의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채용 거부

사례24 - 병원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거부

차별상담

사례25 - 정부 산하기관의 성희롱 피해자 해고

사례26 - 교원임용고시 응시연령 제한

사례27 -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군부대 출입 거부

사례28 - 백화점 여성 판매사원에

대한 안경 착용 금지

사례29 - 이혼 여성에 대한 사직 권고

사례30 -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고소접수 거부

사례31 -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 회장 입후보 제한

사례32 -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흡연자 차별

차별상담

사례 20

정신지체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에서의 차별

상담번호 03-전상-0010697 | 상담날짜 2003.08.29 | 상담시간 30분

상담요지

내담자의 딸은 다운증후군으로 지능과 학습능력은 떨어지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교육을 받아 왔으며, 특히 그림공부에 열성적이었다. 그리하여, ○○대학교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자 입시요강을 문의하였다. 그런데 ○○대학교측은 학교시설의 미비 등을 이유로 정신지체장애인은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임을 주장하며 위원회가 본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1.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 우대,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진정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18조(교육) 제4항에 의하면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차별의 금지 등) 제2항에는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중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장애학생의 무상의무교육은 이미 10년 전부터 법률로써 명시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50% 이상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어 왔다.²⁰⁷⁾ 상담센터에도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를 제기하는 상담들이 종종 있어 위 사례를 대표적으로 소개하였다.

장애인 관련 상담은 이외에도 장애인 할인요금 대상에서 유독 새마을호만 제외하고 있는 것이 차별이라는 상담이 있었는데, 고속철도 개통시기(2004.04.01)부터 모든 철도에 대해 장애인 할인요금이 적용되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이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시험을 포기한 사례²⁰⁸⁾가 진정접수 되었는데 이는 3차례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교육청 등과 합의되었다. 한편, ○○공단에서 경증장애인들 위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관행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상담도 있었다.

장애인특별전형시 장애유형 제한은 응시기회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시행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모씨(32세)가 2003년 2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연세대학교총장 및 고려대학교총장에게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 대학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이는 장애의 종류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2.25)

207)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유아 3만800명 가운데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2%인 1천 800여명에 불과하며, 학령기 특수교육아동 24만 5천여 명 중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등과 같은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오직 5만 8000여명이다. 또한, 성인장애인의 52.3%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으로 살고 있다(에이블뉴스, 2004.04.19일자, 2004.08.20일자).
 208) "얼마나 화 났으면 수능시험장 뛰쳐나갔겠는가", 오마이뉴스 2004.09.06일자,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란?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1995년부터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분류)가 시행되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교육기회의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에 권장하는 제도로 각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02년까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생은 총 2,629명이었으며, 졸업생은 1,063명이었다.²⁰⁹⁾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정원 모집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국 358개 대학 중 총 89개 대학(4년제 대학:72개, 전문대학:17개)이다.²¹⁰⁾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격기준,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中

- ①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결정,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선발
- ②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보건복지부 등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유형

장애인편의시설축진연대(2000)에서 발표한 『무장애대학 만들기 보고서』²¹¹⁾에 따르면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려는 장애학생들은 ① 사전면담의 면접 상황에서 모욕적인 질문을 받음, ② 원서접수 전 지원계열 학부나 학과의 전환을 권유 또는 강요당함, ③ 원서접수 자체를

20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2, p21, p232

2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거부당함, ④ 원서 접수 전 면담을 통해 입학을 거부당함의 순으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대학과 진로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 장애학생의 입학 여부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²¹²⁾



“대학 75% 장애인 배려 낙제”

국내 대학의 75%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낙제점 수준이며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8-12월 186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서면 및 현장방문 조사한 결과, 75%인 139개 대학이 종합점수(100점 만점)에서 ‘개선요망(65점 미만)’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학생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 분야에서 나사렛대와 대구대가 ‘최우수’(90점 이상) 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한림대, 동명정보대, 연세대, 서강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14개교가 ‘우수’(80점 이상), ‘보통’(65점 이상)은 31개교였고 나머지는 모두 ‘개선요망’(65점 미만)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공립 46개대 가운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를 받은 대학은 1개대도 없고, 충남·충북대 등 9개대가 보통평가를 받았을 뿐 37개대는 모두 개선요망 평가를 받아 국·공립대가 오히려 장애학생 편의증진에 더 인색함을 보여줬다.

정정진 강남대 교수는 “2003학년도에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과 모집인원이 47개대, 320명에 그치는 등 장애학생 특례입학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이 적은데다 대부분 신학교에 몰려 있어 다양한 전공 선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2004.02.04일자)

211)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대학교 장애인 차별도 인식조사 및 교육환경 실태조사』

2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2, p 24

사례 20

정신지체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에서의 차별

상담번호 03-전상-0010697 | 상담날짜 2003.08.29 | 상담시간 30분

상담요지

내담자의 딸은 다운증후군으로 지능과 학습능력은 떨어지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교육을 받아 왔으며, 특히 그림공부에 열성적이었다. 그리하여, ○○대학교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자 입시요강을 문의하였다. 그런데 ○○대학교측은 학교시설의 미비 등을 이유로 정신지체장애인은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임을 주장하며 위원회가 본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1.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 우대,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진정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18조(교육) 제4항에 의하면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차별의 금지 등) 제2항에는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중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장애학생의 무상의무교육은 이미 10년 전부터 법률로써 명시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50% 이상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어 왔다.²⁰⁷⁾ 상담센터에도 장애인의 교육권 문제를 제기하는 상담들이 종종 있어 위 사례를 대표적으로 소개하였다.

장애인 관련 상담은 이외에도 장애인 할인요금 대상에서 유독 새마을호만 제외하고 있는 것이 차별이라는 상담이 있었는데, 고속철도 개통시기(2004.04.01)부터 모든 철도에 대해 장애인 할인요금이 적용되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이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시험을 포기한 사례²⁰⁸⁾가 진정접수 되었는데 이는 3차례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교육청 등과 합의되었다. 한편, ○○공단에서 경증장애인들 위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관행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상담도 있었다.

장애인특별전형시 장애유형 제한은 응시기회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시행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모씨(32세)가 2003년 2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연세대학교총장 및 고려대학교총장에게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 대학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시각·청각·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이는 장애의 종류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2.25)

207)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유아 3만800명 가운데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2%인 1천 800여명에 불과하며, 학령기 특수교육아동 24만 5천여 명 중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등과 같은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오직 5만 8000여명이다. 또한, 성인장애인의 52.3%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만으로 살고 있다(에이블뉴스, 2004.04.19일자, 2004.08.20일자).
208) "얼마나 화 났으면 수능시험장 뛰쳐나갔겠는가", 오마이뉴스 2004.09.06일자,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란?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1995년부터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분류)가 시행되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교육기회의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에 권장하는 제도로 각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2002년까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생은 총 2,629명이었으며, 졸업생은 1,063명이었다.²⁰⁹⁾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정원 모집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국 358개 대학 중 총 89개 대학(4년제 대학:72개, 전문대학:17개)이다.²¹⁰⁾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격기준,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中

- ①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결정,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선발
- ②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보건복지부 등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유형

장애인편의시설축진연대(2000)에서 발표한 『무장애대학 만들기 보고서』²¹¹⁾에 따르면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려는 장애학생들은 ① 사전면담의 면접 상황에서 모욕적인 질문을 받음, ② 원서접수 전 지원계열 학부나 학과의 전환을 권유 또는 강요당함, ③ 원서접수 자체를

20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2, p21, p232

2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거부당함, ④ 원서 접수 전 면담을 통해 입학을 거부당함의 순으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대학과 진로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 장애학생의 입학 여부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²¹²⁾

“대학 75% 장애인 배려 낙제”

국내 대학의 75%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낙제점 수준이며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8-12월 186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서면 및 현장방문 조사한 결과, 75%인 139개 대학이 종합점수(100점 만점)에서 ‘개선요망(65점 미만)’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학생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 분야에서 나사렛대와 대구대가 ‘최우수’(90점 이상) 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한림대, 동명정보대, 연세대, 서강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14개교가 ‘우수’(80점 이상), ‘보통’(65점 이상)은 31개교였고 나머지는 모두 ‘개선요망’(65점 미만)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공립 46개대 가운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를 받은 대학은 1개대도 없고, 충남·충북대 등 9개대가 보통평가를 받았을 뿐 37개대는 모두 개선요망 평가를 받아 국·공립대가 오히려 장애학생 편의증진에 더 인색함을 보여줬다.

정정진 강남대 교수는 “2003학년도에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과 모집인원이 47개대, 320명에 그치는 등 장애학생 특례입학 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이 적은데다 대부분 신학교에 몰려 있어 다양한 전공 선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2004.02.04일자)

211)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대학교 장애인 차별도 인식조사 및 교육환경 실태조사』

2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2, p 24

사례21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차별

상담번호 03-전상-200293 상담날짜 2003.04.01 상담시간 30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기간제 교원으로 한 학교에서 2-3년씩 일하면서 7년째 인천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그런데, 매 학교마다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여 내담자는 방학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고, 매회 1년이 안되는 계약기간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내담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 질의하였는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기간의 급여를 줄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듣게 되었다.

내담자는 정규직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기간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원회에서 본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임금지급 등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에서 서울 ○○중학교 교장, 서울시 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중 보수 지급, 퇴직금 지급, 연가 허용 등을 권고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개정,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권고한 사례²¹³⁾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 내담자는 진정할 경우 학교의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교육부의 수용 여부를 지켜본 후 필요하다면 진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기간제 교원(비정규직) 고용차별”, 2003.03.24

현재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는 13,000여명의 기간제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²¹⁴⁾ 그동안 위원회에는 기간제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방학기간 중의 보수, 연가, 퇴직금, 호봉획정에 있어서 정규 교원에 비하여 차별을 받았다는 상담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의 계약시작 시점을 3월 3일부터 인정하여 1년에서 하루 이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중학교에서 정규 교원이 복직하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기간제 교원을 해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두 차례 권고를 한 바 있다. 2003년 3월 서울 ○○중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한 권고는 향후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중지 및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이 주요내용이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의해 대부분 수용되었다. 한편, 2004년 4월 경기교육청과 ◎◎학교 교장을 상대로 한 위원회의 권고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기간제 교원 차별대우는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A씨가 2002년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상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서울 ○○중학교 교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2003년 3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서울 ○○중학교 교장에게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214) 2004년 10월 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3.25.)



“기간제 교사 방학때도 급여 지급 연가, 출산휴가 허용”

휴직 교원 등을 대체하기 위해 임시 채용된 기간제 교원에게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연가와 출산휴가가 허용되고 퇴직금과 방학 중 보수 지급이 권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침은 시도교육청이 예산 실정 등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기간제 교원 처우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기간제 교원의 처우차별은 평등권 침해라며 방학 중 보수 미지급, 연가 불허, 불합리한 호봉 책정, 퇴직금 미지급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체 교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원에게는 연가를 주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연가와 출산휴가 등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 기간제 교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직 기간이 만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이후에 편법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한 학기를 초과해 계약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보수를 지급하고 호봉 산정 때

종전의 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밖에 휴직 교원이 일찍 복직해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을 해임할 경우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우선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하였다.

(동아일보 2003.07.18일자)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방학기간 중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²¹⁵⁾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방학기간 중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항 목 별	개 정 전	개 정 후
방학 중 보수 지급	·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6개월이상 임용하는 경우 등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명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 기간제 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담임교사는 정규교사를 우선하여 배정하고 정규 교사의 담임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삭 제)
	-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 방학기간 중에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에 임용가능	-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에 임용 및 보수지급 가능
	- 교육감이 지역 형편, 수급, 예산 형편,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기준에 포함하여 시행하되,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함	(삭 제)

인권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중 보수와 퇴직금 지급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학기간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차별”이라며 A모씨 등 3명이 해당학교 교장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인적

215) 2003.09.01. 시행,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자료실→업무혁신→‘계약제 교원’ 검색

자원부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해당학교장에게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3.25)

인권위, “기간제 교사 퇴직금등 지급권고 미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학기간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이므로, 경기도 교육감 및 관련 학교장에게 진정한 인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2004년 4월)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이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법 제25조4항에 의거,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기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권고(2003년 3월)에 따라 ‘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이 2003년 9월 1일자로 개정되어 이후부터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수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방학 중 보수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계약당시 방학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실제로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동 방학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는 없고 △계약시작 시점을 3월 2일부터 하여 근로년수가 1년에서 하루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은 개정된 ‘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2003년 9월 1일 이후에는 개선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방학기간은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 준비 등 정규 교사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방학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 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며 △형식상 1년 계약기간에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행위이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과거 잘못된 계약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개정 이전의 잘못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7.27.)

사례22

입양기관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 거부

상담번호	03-전상-1000480	상담날짜	2003.06.16.	상담시간	95분
------	---------------	------	-------------	------	-----

상담요지

내담자는 어학 연수차 입국한 조선족 여성인데, 한국 남성과의 일회적 만남으로 임신을 하였고 미혼모가 되었다. 내담자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입양시설에 보내고자 했으나, 국내의 모든 입양시설에서는 “호적등본이 없어 아이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현재 아이의 친부를 찾을 방법이 없어서 호적등본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내담자는 조선족의 아이라는 이유로 입양시설에서 아이를 받아 주지 않는 것은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임을 주장하며, 본 사안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였다.
- 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영역은 ①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 ②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③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입양기관에서 외국인 아이의 위탁보호 및 입양알선을 거부한 행위를 위의 차별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볼지 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조사가능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였다.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상담 및 진정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²¹⁶⁾,

216) 위원회는 2002년 8월 국무총리를 상대로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권고를 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에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업재활훈련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위에서는 다소 특이하고 예외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하였다. 위 사례의 쟁점은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영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의 입양시설로부터 위탁보호 및 입양알선을 거부당했는데, 이를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는가이다.

내담자는 중국 국적을 소유한 조선족 미혼모로 외국인 신분이며 그녀의 아이는 한국남성인 친부를 찾을 수 없기에 무국적 상태이다. 그런데 국내의 입양기관은 친모가 위탁해도 내국인이 아닌 경우,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의 아이는 입양을 알선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족 미혼모의 아이가 국내의 입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아이는 ‘국적법’ 제2조 제1항²¹⁷⁾에 의해 국적취득이 가능한 경우지만 현실적으로는 친부를 찾을 수 없어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²¹⁸⁾

또한, 조선족 미혼모가 일반귀화 또는 간이귀화의 요건을 충족하여 장래에 국적을 취득한다면 아이가 국적을 수반취득할 수 있겠으나 이는 상담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기에 결국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²¹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외국인의 아이가 입양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으며, 상위법인 민법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국제인권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협약은 “자

217)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218) 한편, 아이가 기아(棄兒) 상태라면 ‘국적법’ 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의해 취적이 가능하므로 국내의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미아는 해외이주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그 아이는 시설에 맡겨지게 된다.

· 국적법 제14조(무적아동의 취적)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취적절차를 거쳐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아동의 권리에 있어서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족 미혼모의 아이는 호적등본을 갖출 수 없어 그 신분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국내의 입양기관에서 입양알선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입양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고, 파양할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입양의 목적 및 입양기관의 역할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맥락에서 본다면 외국인의 아이라고 하여 국내의 입양기관에서 입양알선을 거부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국제인권협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신국가가 어디인가는 아동의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며, 아동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에게 인정되는 절대적 기본권(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양에 따른 사후관리 등은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 차별 여부는 위원회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남겨 두고, 다음에서는 사례의 이해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19)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 금지 규정을 통해 본 아동의 권리

1.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 금지의 정의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태어나거나 성장한 나라 또는 거례를 이유로 고용관계나 각종 서비스 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²²⁰⁾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은 출신국가에 기하여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출신국가에 의한 간접차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일정한 조건이나 요건에 따르기에 불리하고 그 조건이나 요건이 다른 근거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²²¹⁾

2. 관련 규정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²²²⁾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구,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집』, 2004. p344

221) 차별연구모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 지침』, 2003. p89

22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 1989년에 채택되었으며 1991년부터 우리나라도 적용하고 있다. 본 협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등 기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²²³⁾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²²⁴⁾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f)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22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 : CESCR) : 1966년 채택되었으며 1990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본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인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2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 1979년 채택되었으며 1985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본 협약의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사례 23

기업의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채용 거부

상담번호	02-전상-300099	상담날짜	2002.07.08.	상담시간	30분
------	--------------	------	-------------	------	-----

상담요지

내담자는 ○○ 회사에 입사 지원하여 서류와 면접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최종 신체 검사과정에서 B형간염 보균자라고 판명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다. 내담자는 B형간염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회사측에 말했으나 회사측은 “전염병이 아닌 것은 알지만 피곤함을 자주 느껴 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불합격처리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내담자는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진정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였다.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상담 중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 및 임용거부, 기타 불이익을 받았다는 상담이 상당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B형 간염 보균자가 모기업과 △△ 전자에 입사지원 자격을 문의한 결과, “두 곳 모두 ‘간염보균자는 채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다른 회사조차 입사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상담도 있었다.

위원회는 B형간염 보균자들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를 명시하는 것은 B형간염 보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 규정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 관련 규정 ²²⁵⁾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기업 등 단체일 경우 의무규정은 아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하면,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환자는 불합격판정의 대상으로 이 또한 전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제102조에 의하면 고용전 단계에서 고용인의 장애와 관련된 질문이나 지원자의 병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고용 후 근무개시 전에 지원자에 대해 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검사 또한 직업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노동건강연대 등과 함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채용시 신체검사를 받은 근로자 중 간 기능에 이상이 없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71명과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아닌 41명 등 총 112명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신체검사에 B형간염 항목이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고용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일반인들이 B형간염의 △전파경로 △보균자의 노동능력 △질병의 경과 등에 대한 잘못된

225) 국가인권위원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상 차별행위」,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I)』, p335, p341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고용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62.0%만이 취업에 성공한 반면, 비보균자는 87.8%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조사한 결과, 보균자군의 21.1%가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비보균자군은 4.9%만이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균자군은 신체검사 결과가 차별의 중요한 기제로 사용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2.13.)

● B형간염 차별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는 공무원 채용시 반드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채용신체검사는 간염을 검사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 신체검사는 간염예방 접종 필요 여부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간염검사가 일반적으로 B형간염바이러스 검사를 의미한다는 점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간질환과 별도로 간염을 검사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의학적으로 간질환이 간염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간염검사를 별도의 항목으로 정한 것은 특별히 B형간염 대상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B형간염은 출생기에 어머니로부터 전염이 되거나(수직감염), 성적 행위 또는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직장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보균 상태가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 일반인들의 정확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까지 차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과정에서 B형간염의 전염가능성을 우려해 별도의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설사 B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능력을 저하시키는 만성간염이나 간경변 등으로 발전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B형간염 대상자라고 해서 개별적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참고로 미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서는 채용 전 신체검사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2000년 개정)에 근거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B형간염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11.03.)



“B형간염 보균자 접촉해도 전염 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에 B형간염을 ‘근무가 일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체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간 일상적 접촉으로 감염 가능성이 없어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3군 전염병’에서 ‘제2군전염병’으로 재분류한 상태다.

제3군 전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며, 제2군전염병은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0년 10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 발병기간 중 타인에게 전파될 우려가 없어 ‘업무중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B형간염을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도 B형간염이 전염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체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 전경련 등 경제5단체, 시·도에 B형간염에 대한 홍보 협조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2004.09.14일자)



“B형간염 보균자 취업차별금지 추진”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해 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금지됐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 항목이 포함돼 있고, 일반 기업체도 B형 간염자가 입사 후 과로 등으로 인한 간 질환 발생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해 채용 자체를 기피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취업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에 있어서 과거 병력이나 B형간염 등의 사유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TV 2004.08.12일 방송)

사례24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거부

상담번호	03-전상-0010479	상담날짜	2003.08.05.	상담시간	90분
------	---------------	------	-------------	------	-----

상담요지

내담자는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전 혈액 검사 결과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타나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에이즈 환자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내담자는 척추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병원측은 내담자가 재활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대신 병원측은 병실에서 가능한 재활치료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담자가 퇴원할 때까지 재활치료를 해 주지 않았다.

내담자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재활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임을 주장하며 본 사안을 우리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재활이용에 있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병력에 의한 차별행위로 보아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진정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였다.

2004년 상반기에 302명의 신규 HIV 감염인/에이즈 환자가 보고되어, 6월말까지 내국인의 누적감염인수는 2,842명이었으며 이중 565명이 사망하였다.²²⁶⁾ 이러한 가운데 위원회에도 에이즈 환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상담들이 종종 있어왔는데,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에게만 연대보증인 또는 입원보증금을 요구하였던 사례, 경찰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에이즈 환자를 조롱하고 모욕하였다는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위원회는 2002년 4월 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과 속립성 폐결핵으로 투병중인 수용자 A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권고하였는데 이 권고는 당시 수용되지 않았다.

에이즈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이하 “감염자”라 한다)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비밀누설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제24조 (부양가족의 생활보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자의 부양가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보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하여야 한다.

226) 에이즈정보센터(www.aidsinfo.or.kr), 에이즈통계

에이즈 관련 Q&A ²²⁷⁾

1.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차이점은?

HIV 감염인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침투, T림프구 내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일정한 면역지수를 유지하여 신체상 뚜렷한 증상이 없고 아직은 건강한 사람을 말하고, 에이즈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면역지수가 떨어져 각종 기회 감염에 노출되어 발병한 사람을 말한다.

2. HIV 감염인으로 판명되면 격리 수용되는가?

정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실려 있는 격리보호조항을 폐지시켰다. 과거 에이즈에 대한 비감염인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법에 격리수용 등을 거론하였지만 이제는 격리제도가 폐지되어 법적으로 격리수용 할 수 없다.

3.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격리 병실이 따로 있는가?

국내 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에이즈 환자만을 위한 격리병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에이즈 환자를 병원의 상황에 맞게 보통 1인실에 입원시키고 있다. 에이즈 환자를 다른 환자와 같이 일반 병실에 입원시켜도 위험성은 없다. 이유는 HIV는 병원 내에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서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만 차단시키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에이즈 환자에게 발생하는 기회감염도 결핵, 대상포진 등을 제외하면 타인에게 거의 전파되지 않는다.

4. HIV 감염인/에이즈 환자를 위한 민간단체 또는 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본서의 부록에 실려 있다.

227) 에이즈정보센터, 에이즈관련법령

“에이즈 소녀, 브랜다”

7살을 넘기기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던 ‘에이즈 소녀’ 브랜다. 브랜다는 르완다 출신으로 네덜란드 동화 작가에게 1살 때 입양되었으며, 입양당시 친부모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 브랜다는 하루에 두 번씩 약을 먹는 것 외에는 또래 친구들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브랜다는 동생을 목욕시키고 우유를 먹이며, 수영을 잘 하고, 남자친구를 사귄다. 브랜다의 9번째 생일날 모인 친구들은 “브랜다 같이 좋은 친구를 만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한다.

양엄마인 헤이첼은 “브랜다의 피 속에는 작은 용이 살고 있어요”라는 동화책²²⁸⁾을 썼는데, 이 책은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글이다.

(MBC TV『아! e 멋진 세상』 2004.08.11 방송)

AIDS 환자 재소자, ‘병원이송·형집행정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4월 24일)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과 속립성 폐결핵으로 투병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아무개씨(40, 특수절도)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서를 진주교도소장에게 보냈다.

국가인권위는 4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아무개씨 사건에 대해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하고, 조사관과 전문의를 진주교도소에 급파, 이씨의 건강상태파악과 교도소 의료환경 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는 이씨에 대해 △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속립성결핵 환자로서 구금시설에 지속적으로 수용될 경우 중독한 감염이 될 수 있고 △ 치명적인 설사가 하루에도 수차

228) 헤이첼핑크, 송영선 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덜란드 소녀 이야기(부제)』, 별초롱, 2002, 한편, 헤이첼은 “에이즈를 가진 아이들도 설탕 통에 함께 손을 넣어 설탕을 찍어 먹는 친구들이 필요한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라고 하였다.

례 지속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위와 같은 권고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진정인 이씨가 누운 상태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으로 면전 진정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위중한 것을 확인, 긴급구제조치를 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2.04.24.)

사례25

정부산하기관의 성희롱 피해자 해고

상담번호 03-전상-0010417 | 상담날짜 2003.07.30. | 상담시간 70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정부기관인 ○○청의 산하단체, □□회에서 20년 동안 근무해 왔는데, 2002년 7월에 부임한 소장에 의해 내담자를 비롯한 여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소장은 회식이 끝난 후 내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에 손을 넣었으며,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만지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내담자가 □□회의 이사장에게 성희롱 사건을 알리게 되었는데 소장은 성희롱 사실을 2차 감사 때에야 인정하여 면직 처리되었다. 한편, 내담자는 성희롱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7월 23일 해고되었다.

내담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한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고용(해고)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진정접수방법 및 처리 과정을 안내하였다.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임을 설명하고, 동법 제7조 4항에 따라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명시되어 있음을 안내하였다.

1993.12. UN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은 성희롱이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가 규정한 여성차별에 해당됨을 명시하였다. 미 연방최고법원은 시민권법 제7장에서 규정한 성차별에는 성희롱이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남녀차별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에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²²⁹⁾

위 사례는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진정 접수되었으나 타기관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위원회법 제32조 5호에 따라 각하되었다. 이외에도 위원회에는 상당수의 성희롱 사건이 상담 또는 진정되었는데,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회식자리에서 여 선생님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경우가 있었으며, 시각장애인 여성 안마사가 손님으로부터 폭행 및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서울대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사건과 서울시립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은 위원회가 권고한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위원회는 서울대 A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였고,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대병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서울대와 서울시립대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여성부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의 직장 분위기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²³⁰⁾

- ①연령, 성별, 직위에 따른 서열의식이 강한 직장 분위기, ②민주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일방적 지시가 많은 직장 분위기, ③비공개적 접대문화에서 주요사항이 결정되는 직장 분위기, ④비정규직 직위에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직장 분위기, ⑤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회식이 잦은 직장 분위기

성희롱 유형 및 발생 실태 ²³¹⁾

언어적 성희롱 : 말로 하는 성적 언동 - 가벼운 성적농담(79.9%), 음담패설(42.5%)

(예)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229) 여성부, 『클릭! 함께하는 성희롱예방교육』, 2004, p6
230) 여성부, 『클릭! 함께하는 성희롱예방교육』, 2004, p14

시각적 행위 : 성적인 그림이나 게시물을 보게 하는 것 등 - 시선(31.2%), 사진 등(30.8%)
(예)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봉사강요 행위 : 성적 대상화하는 여러 행위 등 - 술접대(56.1%)
(예) 노래하면서 강제로 블루스를 같이 추도록 하는 행위

육체적 행위 : 신체접촉, 만지는 또는 만지게 하는 성희롱 등 - 성적 관계요구(4.9%)
(예)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에무를 강요하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관련 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①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1) 여성부가 전국 공공기관 종사자 총 1033명(여성 517명, 남성 509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2001).

②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당해 직장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성희롱의 사실조사에 협조한 자 등에 대하여 근무여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방법·내용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진정접수 외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절차

여성부를 통한 법적 구제

공공기관 및 일반사업장 종사자는 여성부에 설치되어 있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남녀차별신고센터 전화 : 1544-9995/ 인터넷 : www.moge.go.kr)

노동부를 통한 법적 구제

일반사업장 종사자는 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간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평등상담실 전화 : 1544-5050/ 인터넷 : www.molab.go.kr)

민사소송 제기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 물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이모 교수가 수술 도중 간호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이 2003년 2월 이모 교수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모 교수에게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비록 직접적인 인권침해의 주체는 아니지만 이모 교수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대학교총장과 서울대병원장에게 △실질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성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공정하게 조사·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이모 교수가 △2003년 2월 7일 오전 9시경 수술실에서 신규 간호사가 수술을 위해 손목 위에 착용한 슬리브에 젤리를 바르면서 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자 “처녀라서 농도를 못 맞춰”라고 말했고 △다른 간호사가 이를 제지하자 “그럼 니 거 (여성분비물) 발러, 너 많이 나오잖아”라고 말했고 △같은 날 수술 도중 수술간호사에게 “수술기계의 압력을 내려달라”고 지시했으나, 수술간호사가 전원을 끄고 기계를 다시 세팅하는 실수를 하자(기계의 압력만 낮춰야 함), “과장이 하는 수술에 신규간호사가 들어올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고 △수술이 끝난 뒤 피 묻은 손으로 신규간호사의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목격자·참고인 등의 진술내용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장이 공식사과를 한 사실 △이모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사과한 사실 △서울대병원의 검직해제 발령 △이모 교수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감봉2개월 징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모 교수의 행위가 인격권 침해 및 성희롱(성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9.03.)

서울시립대 교수 성희롱 사건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모 교수가 2003년 1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 A씨를 성추행했다”며 김모씨(20세, 서울시립대성희롱대책위원회)가 5월 정모 교수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성희롱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정모 교수가 제자 A씨에 대해 △양 손으로 귀를 잡고 △입을 맞추고 △혀를

내밀어 입술을 핥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모 교수는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수돗물로 가글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해자가 여성민우회(3회) 및 한국성폭력상담소(4회)에서 상담한 사실이 있고 △서울시립대학교 자체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피해자의 성희롱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정모 교수의 행위가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성적자기결정권’²³²⁾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10.29).

서울대&서울대병원, 인권위 권고 수용 통보

서울대학교 총장과 서울대학교 병원장은 11월 21일과 12월 1일 각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통보해 왔다. 또한 이모 교수는 11월 27일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했다.

서울대학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고 △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설치했고 △각 대학(원)별 교수, 신입교수, 부설학교 교사, 조교·시간강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조사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통보해왔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했고 △병원 인터넷망에 ‘성희롱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6일 의과대학장을 포함한 교수(115명)를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고 △간부 교육시 전문가

232)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0.09.10. 89헌마82).

초청강의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12.03)

약점. 그 범위는 무척이나 넓었다.
키가 큰 것도 약점이었고, 키가 작은 것도 약점이었다.
옷을 잘 입는 것도, 말을 더듬는 것도, 뚱뚱한 것도, 마른 것도 약점이었다.
성격이 소심한 것도 심지어는 선생님의 사람을 받는 것조차 약점이 되곤 했다.
보기 드물게 당당한 아이들도 약점은 있었다.
그 약점을 붙잡고는 올 때까지 혹은 화를 낼 때까지 놀림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약점 때문에 울었던 아이들은 없었다.
믿었던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간다는 것에 눈물을 쏟고,
혼자서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눈물을 쏟았다.
놀림을 당해도 나의 주변에 내 편을 들어주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졌다.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친구들은 싸움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저 내 곁에 묵묵히 있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놀림,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중에서. - 이용재

사례26

교원임용고시 응시연령 제한

상담번호 03-전상-4000030 | 상담날짜 2003.01.23. | 상담시간 35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중등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응시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교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기에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임을 제기하였다.

내담자는 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교원임용고시 응시연령제한을 완화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답변요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진정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 하였다.

위원회에 접수된 나이에 의한 차별 상담은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상담의 7.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²³³⁾ 이는 주로 채용 및 퇴직과 관련한 연령제한 및 고령차별 등의 문제였다.²³⁴⁾

위 사례는 빈도수가 높았던 상담으로, 진정이 접수되어 2004년 6월 위원회가 교육인적 자원부를 상대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나이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및 진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3) 2002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총 731건의 차별 상담 중 나이에 의한 차별 사건은 54건으로 7.4%를 차지하게 되었다(월간『인권』11호, p26).

234) “국가인권위 진정 2만건 돌파, 통계로 본 우리 시대의 인권”, 『오마이뉴스』, 2004.07.30일자.

A는 78년생이며 2003년도에 간호학과를 졸업할 예정인 자로 ○○병원의 입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는데 응시자격을 79년생 이후 출생자로 제한하고 있어 응시자격을 박탈하였다.

B는 30대로 2002년도에 방송국 성우 시험을 볼 예정이었는데 △△ 방송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응시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

C는 2004년 1월에 “70세 이상 농어민이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신용보증기금 회장을 상대로 진정하였는데,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은 70세 이상 고령자도 보증지원 및 대상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다.

D는 2004년 2월에 “직원채용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공사를 상대로 진정하였는데,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공사는 “나이 및 학력과 전공분야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다.

E는 2004년 2월에 “65세 이상 신규 발급자에게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카드사를 상대로 진정하였는데,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E는 연금수급대상자로 확인되었고 □□카드사는 E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었다.

F는 만 40세인 여성으로 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하였는데, 당시 F씨가 도로주행 테스트에 불합격될 경우 1개월 동안 무제한·무상으로 보충교육을 해 준다고 학원측은 약속하였다. 그 후 F는 도로주행 테스트에 불합격하여 무상교육을 신청하였으나, 학원측은 “35세 이상인 사람들은 35세 이하인 사람들보다 교육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F는 2회의 무상교육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나이차별 사건들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가운데, 위원회는 2004년 10월 14일 공기업을 상대로 직원채용 시 나이 및 학력제한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국공립대학 교원채용 시에 연령제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나이차별이란?

나이차별(ageism)은 성차별(sexism), 인종차별(racism)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차별 유형이다. 나이차별이란 채용 시 취업연령을 제한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승진, 교육기회, 복지 면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구조조정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대상으로 삼거나, 정년을 설정하여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강제퇴직하게 하는 등 근로관계에서의 나이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칭한다.²³⁵⁾

나이차별에는 직무, 교육, 기타 관계에서 나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폭력까지도 포함된다.²³⁶⁾ 또한,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직접차별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그 기준이나 규칙이 직무에 관련이 없으면서 특정 나이대에 불리한 영향력을 미치는 간접차별도 포함된다.

관련 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 2(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35) 배급자, 「나이차별금지-외국의 경우」, 『시민과 변호사 115호』, 2003.08.

236) 차별연구모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2002, p71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은 평등권침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이 4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연령에 의한 평등권침해”라며 이모(41세)씨가 2003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2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2)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²³⁷⁾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응시연령 제한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체력과 업무습득 능력 등을 고려해 정해졌고 △이는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구조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며 △젊은 나이에 교직에 뜻을 두고 이에 헌신할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원의 능력은 다년간의 학생지도와 연수 경험을 통해 함양되며, 특히 학생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상당기간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했으며 △연령제한이 없을 경우 합격할 때까지 계속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현상이 발생해 국가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연령제한 및 교원의 정년이 62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40세로 연령제한을 한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40세 이하의 자만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원으로서의 능력은 연령에 의해서가 아닌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임용 전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교직사회의 원활한 순환구조 유지를 위해서라는 것이 일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만큼의 합리성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원은 교육이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무·신분·조직의 특성이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 △교원임용시험은 이미 교

23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개전형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양성 및 임용과정도 특수하다는 점 △40세 이상의 교원자격증 취득자도 정년까지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단서조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연령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교원수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초등교원임용시험에만 적용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40세로 연령제한이 되고 있다는 점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교원의 연령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는 연령에 의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동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7.13)

“교원임용시험 나이제한 없앤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교원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40살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시험부터 응시연령 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문제점이 없을 경우 임용령을 바꿔 내년에 치러지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겨레 2004.07.14일자)

“교수모집 나이제한 평등권 침해, 인권위 국립대에 삭제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대학 교수를 모집하면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

한 차별행위라며 연령 제한 규정을 둔 국립대 총장 등에 대해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7월부터 전국 46개국, 공립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교원을 모집한 44개교대학 가운데 14개 대학이 지원자격 기준에 나이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수 능력과 연령간 상관관계가 명확하니 않은데다 이는 평등권 위반”이라며 “연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정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만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겨레 2002.11.24일자)

9개 공기업, 직원채용시 나이 및 학력 제한 모두 폐지

“22개 공기업이 2003년 직원채용시 나이 및 학력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차별 연구회(대표자 조순경)가 200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인권위 조사중 이들 공기업이 나이 및 학력제한을 모두 폐지하거나 일부를 폐지하였다고 통보해 왔다.

나이 및 학력제한을 모두 폐지한 9개 공기업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마사회,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기도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다.

한편, 학력제한만을 폐지한 공기업은 11개사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고, 나이제한만을 폐지한 공기업은 방송위원회 1개사였다(농협중앙회는 나이 및 학력제한 모두 미폐지).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10.14)



“기업채용 연령 제한 없앤다”

정부가 마련한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안)’은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사유를 성별로 국한하고 있으나 새 법률안에서는 연령, 장애, 인종, 종교 등으로 확대했다.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채용 시 연령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을 뒀고 정부 구제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시 연령차별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제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당초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년제의 완전 폐지까지도 고려했다. 미국은 정년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정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을 전면 금지하면 국내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커서 일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연령(60세) 미만 정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60세 미만 정년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62세 미만 정년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적용한 셈이다.

다만 기업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 기업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간접 강제로 기업의 정년연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매일경제 2004.08.30일자)



“공무원시험도 나이제한 사라질까”

공무원 공채시험에도 나이제한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임용시험의 나이제한 조건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자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 “교원임용시험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 시험의

나이제한 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공무원시험의 나이제한 조항도 인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시험 나이제한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간 50건 정도가 접수되고 올해에는 26건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 진정은 대부분 중간에서 취소돼 인권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시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시험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아예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으로 시험 종류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식 논의되더라도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원임용시험은 교육부만 관련된 데 반해 공무원임용시험은 19개 정부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다.

또 교원임용시험은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임용 여부 시험인데 반해, 공무원시험은 교원임용시험과 같은 ‘자격’이라는 개념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인권위나 중앙인사위원회 역시 “교원임용시험과 공무원시험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인사위는 그러나 이런저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연령제한 폐지가 장기적으로는 검토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신문 2004.08.16일자)

사례27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군부대 출입 거부

상담번호 03-전상-3000248 | 상담날짜 2003.03.24. | 상담시간 30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1998년도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9년 8월 15일자로 사면·복권되었다. 그 후 경산에 소재한 군부대를 상대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자 출입증을 신청하였는데, 신원조회를 통해 내담자에게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03년 3월에 출입증 교부가 거부되었다.

내담자는 형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출입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위원회가 본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형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받은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는 “사면·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으로 신규임용 제청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임용제청을 권고한 바 있음을 설명하였다.
- 내담자는 한 번 더 출입증 교부를 군부대에 문의한 후 필요하다면 재상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 사례 외에도 형 실효된 전과와 관련한 상담 및 진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었다.

A는 단순과실로 실형을 산 후 공인중개업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에 의해 3년 동안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B는 ○○대학교 학사편입,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 응시했으나 과거 학생운동전력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형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어 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C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영년표시장(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표창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위 사례 중 B와 C는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측이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건이 해결된 경우들이다. B는 수시모집에 합격하였으며 ○○대학교측은 차별 없이 심사하겠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밝혔고, C는 실효된 전과의 경우 구제키로 지침이 개정되어 영년표시장 수여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전과에 의한 차별은 장애인 차별, 학력·학벌 차별 다음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²³⁸⁾ 또한,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과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가장 담보되어 있거나 진전이 없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²³⁹⁾ 한편, 위원회는 2003년 01월 “사면·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2003년 07월 “전과기록을 위법하게 조회한 경찰관을 상대로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 위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각각 판단하여 구제권고하였다.

전과기록 Q&A

1. 용의자, 피의자, 수형인이란 무엇인가?

- ① 용의자 :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
- ② 피의자 : 범죄혐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사람
- ③ 수형인 :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

2. 전과기록이란 무엇인가?

수사자료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를 합하여 전과기록이라고 한다.

238) 위원회가 2003년 12월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20.9%), 학력·학벌 차별(18.5%), 전과 경력에 의한 차별(8.7%)인 것으로 나타났다.

239) 국가인권위원회,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p119

가 수사자료표²⁴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 입력되어 관리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된 표를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벌금 이하의 형(벌금, 구류, 과료)을 받은 경우도 기록된다. 그러나 즉결심판에 회부된 자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나 수형인명부²⁴¹⁾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한다. 수형인명부에 벌금이하의 형은 등재되지 않는다. 수형인명부를 삭제하는 방법은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 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다.

다 수형인명표²⁴²⁾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것이 바로 이 수형인명표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호적에 빨간 줄을 긋는 것은 아니다.

3. 전과 기록의 말소란 무엇인가?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것이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이 실효되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때 삭제, 폐기한다.²⁴³⁾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사자료표는 삭제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2003년 3월 6일자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별

240)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 제5조

241) 위의 법 제3조

242) 위의 법 제4조

243) 위의 법 제8조 제1항

금미만의 형,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등의 결정은 수사자료표에서도 모두 삭제하고 있다.²⁴⁴⁾

4. 형의 실효란 무엇인가?

수형인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형이 실효된다.²⁴⁵⁾

5. 신원조회란 무엇이며, 그 회보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원조회라 한다. 신원조회 결과를 회보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²⁴⁶⁾

- ①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감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경우
- ⑤ 다른 법률에서 신원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⑥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신원조회와 그 회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44)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245) 위의 법 제7조 제1항

246) 위의 법 제6조 제1항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임용 차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모씨(29)가 2002년 4월 “사면·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신원조사회보시 사면·복권된 전과를 통보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경남예술 고등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사면·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으로 신규임용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임용제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신원조사회보서에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정한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경남예술 고등학교의 유지법인인 학교법인 숙진학원에서는 2002년도 교원(국어과)을 신규모집하기 위해 2001년 10월 경상남도 교육청에 공개전형을 위탁했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공개전형을 통해 이모씨가 필기시험에서 유일하게 합격하였음을 학교법인 숙진학원에 통보했으며, 학교법인 숙진학원 이사장은 2002년 2월 1일 이모씨가 교원임용시험에 최종 합격되었음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모씨의 신원조사회보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을 받았다가 사면·복권된 전과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예술 고등학교장은 2002년 2월 21일 진정인에게 임용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보안업무규정 등 신원조사와 관련된 규정에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96도2153, 97. 2. 22)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정한 재심청구에 있어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 청구의 대상(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고 나와 있다.

신원조사의 근본 취지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 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에서 사면·복권한 것은 그 대상자의 국가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관계규정은 사면법에 따라 특별 사면·복권된 경

우, 형의 선고로 인해 금지되어 있는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이나 공무원 임용 등을 다시 허용하고 있으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은 전과기록을 정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1.29.)



“인권위, 사면·복권판 기록 바로 고쳐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법무부에서 사면·복권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경찰청장에 통보해 관련기록이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보완하고 규정을 마련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중생범대위(대표 홍근수)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김아무개 검사 등 3명에 대해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자원봉사자 전아무개(28)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과거 전과가 사면됐다는 전씨의 주장을 묵살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전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4월30일 법무부로부터 사면·복권됐지만, 경찰청 전산망에는 두 달이 지난 뒤인 같은 해 7월8일에야 사면복권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청이 사면·복권 조치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30일 경찰 쪽에 전씨 관련 자료를 보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사면·복권 대상자의 경우 전과의 삭제 등 자료 변경에 60일 이상이 걸려 그 사이 검찰이나 법원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 사면·복권 이전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와 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인격권(헌법 제10조)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4.04.05일자)



“국가기관, 개인 전과조회 무분별”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말까지 국가기관의 개인 범죄경력 조회건수가 모두 5,711만여 건에 이르는 등, 1년에 1천만건 이상의 범죄경력 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과 감사원 등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낸 ‘범죄경력 조회 현황’을 보면, 각종 국가기관의 범죄경력 조회건수는 △2001년 1,190만여 건 △2002년 1,914만여건 △2003년 1,591만여건에 이어, 올 들어 8월말까지만 1,016만여건에 이르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경력 조회는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사회봉사·수감명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감호·치료감호 등에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가능하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인 김정진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은 연간 30만여건, 검찰은 60만여건의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데 이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경력에 알려질 경우 해당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조회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2004.09.15일자)

사례 28

백화점 여성 판매사원에 대한 안경 착용 금지

상담번호	03-전상-2000310	상담날짜	2003.04.04.	상담시간	25분
------	---------------	------	-------------	------	-----

상담요지

내담자는 시력이 좋지 않아 오래 전부터 안경을 착용해 온 자인데,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백화점측은 “손님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여성 판매사원의 안경 착용을 금지하여, 내담자는 머리가 아프고 눈이 충혈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도 해고되지 않기 위해 렌즈를 착용해 왔다.

내담자는 여성 판매사원이 안경 착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용모·신체조건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임을 주장하며 위원회가 본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 합리적인 이유없이 용모·신체조건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진정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였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인 혹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키, 몸무게, 체형 등의 신체적 조건과 체력 등의 신체적 능력은 다양하며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특정한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수염, 화장, 장신구 착용 등과 같은 외모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능력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혹은 사회적으로 지배 집단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조건과 능력은 ‘정상’ 혹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평균적 신체 조건이나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에서 벗어난 사람은 ‘비정상’ 혹은 ‘평균 이하’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게 된다.²⁴⁷⁾

247) 국가인권위원회,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령」,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2003, p60

위원회에는 “무섭게 생겼다”는 이유로 비디오 대어를 거부당한 사례, 입사시험 최종면접장에서 인사권자와 관상가가 동석하여 지원자의 관상을 보았다는 사례, “키가 작아 무용수로서 신체조건이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고 채용이 되지 않은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의 용모·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상담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용모·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유형은 몸무게나 키 등 신체의 특성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와 복장이나 스타일 등 개인 취향의 특성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⁴⁸⁾ 한편, 복장과 외모의 규칙을 살펴보면 그것은 대부분 여성에 대한 성차별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 이는 성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차별들은 항상적으로 전통적인 여성다움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⁹⁾

위원회는 외모 차별에 대해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도하였으며, 외모차별을 소재로 다룬 영화 『그녀의 무게』²⁵⁰⁾를 제작, 상영한 바 있다.

외모차별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²⁵¹⁾

일반인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차별은 △얼굴 생김새에 대한 차별(71.3%)이었으며, 다음으로 △몸무게에 대한 차별(54.5%) △키에 대한 차별(34.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차별은 남성(42.8%)보다 여성(63.5%)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36.7%가 ‘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에 대한 비웃음이나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0.6%는 ‘이를 차별이라고 인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에 대한 비웃음이나 농담은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으로 간주될

247) 국가인권위원회,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령」,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2003, p60

24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여성차별의 유형과 차별금지의 내용」, 『차별행위의 이론과 실제(Ⅰ)』, 2003, p76

249) 위의 책, p77

250)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中

251) 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03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전화면접 조사 방식). 설문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이며 표본오차는 ±3.1% 수준이다.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외모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들은 △ ‘입사지원서에 외모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응답(73%)한 반면 △ ‘채용공고에 ‘용모단정한 자’ 등의 신체 관련 조항을 내세우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는가’와 같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응답(77.4%)이 높게 나타나 상호 모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외모차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감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현재 갖고 있는 외모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로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44.4%)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언론매체가 외모차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밖에 △군대·회사 등 사회생활(30.3%) △가족·친척·친구 등 주위사람(17.4%) △정규 학교교육(5.3%)).



「그녀의 무게」,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中

「그녀의 무게」는 취업을 앞둔 상고 여학생의 좌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차별의 문제를 꼬집는 작품이다. 취업시즌 상고 교실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온 학생, 단식원에서 살을 빼고 오는 학생들로 매일매일의 풍경이 변한다. 쌍꺼풀은 없고 살만 많은 선경은 엄마에게 쌍꺼풀 수술을 즐라보지만 씨도 안 먹고, 직접 돈을 벌려고 해도 외모 때문에 시답지 않은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가 힘들다.



이 작품을 감독한 임순례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외모차별의 피해자(?)로 깜짝 등장하기도 했다.

(한겨레 2003.11.08일자)



“靑, 여성경호원 공채 자격제한 논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특정직 7급 여성경호원을 공개 채용키로 한 대통령 경호실이 외모와 학력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예정인 대통령 경호실이 ‘키 1m65cm 이상, 4년제 대졸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3차 면접에서는 태도 등과 함께 ‘용모’를 합격기준으로 제시하자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여성·인권 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상고 출신의 대통령에, 학력의 벽을 넘자고 주장하는 참여정부가 여성 경호원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제한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은 “여성 채용에서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미혼, 용모 준수’ 등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차별 금지기준을 두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도 직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는 규정을 두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락자의 진정이 접수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호실은 “피경호인 보호 및 외국 순방 등 경호 업무 특성상 80년대 중반부터 실시해 온 남성 경호원 공채에서도 공히 신장 및 학력 제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며 “용모 기준도 특징적인 얼굴을 배제한다는 의도이며, 공무원 면접시험 기준도 ‘용모, 예의, 품행’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04.01.09일자)



“성차별 구인광고 여전히 활개, 법도 못 말리는 예쁜 처녀 우대”

성차별적인 채용 광고 문구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여성부가 지난해 11월4일 ‘남녀차별금지기준’을 대폭 강화,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채용정보 업체 등 각종 구인광고에는 이 같은 문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러스트=미영은 eun@

채용정보업체 J사이트의 경우 채용정보 코너에 성별 구분란이 있어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성이 아닌 취업희망자는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영업, 마케팅 부문 사원을 모집하는 대다수 업체가 남성을 적시하고 있는 반면 비서, 경리직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용모단정’한 여성을 원하고 있다. ‘대표이사 비서, 고졸이상, 21-25세의 용모단정한 여성(D사)’, ‘용모단정한 사무 여사원 모집(S사)’ 등 여성의 외모 기준을 제시한 채용 광고가 버젓이 내걸려 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지난 한 해 동안 신문, 생활정보지, 인터넷을 통한 직원 모집광고 13만4,410건 점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체의 0.66%인 898건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해 476건에 대해 시정광고를 명령하고 422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차별광고 유형 중에는 여성만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14.9%로 나타나 경리 일반사무직 단순생산직 등 특정 직종에서는 오히려 남성들이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된 ‘남녀차별 금지기준’에 따르면 ‘여비서 급구, 남기사 구함, 남성 우대’ 등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내걸거나 특별히 우대한다고 명시할 수 없다. 또 여성에게 ‘미혼, 용모 준수’ 등 조건을 제시하거나 신장·체중 등 특정 성이 충족할 수 없는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위반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여성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 후 금지기준 위반이 인정된 업체는 시정권고를 받는 것은 물론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어 민·형사상 처벌²⁵²⁾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최성지 사무관은 “특정 성을 명시해 뽑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반”이라며 “여직원들만 뽑는 경우 현저한 남성편향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성비편향 시정의 이유보다는 업무 편의를 위해 특정 성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일보 2004.01.09일자)

252)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면 모집·채용 때 성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례29

이혼 여성에 대한 사직 권고

상담번호 03-전상-0010286 | 상담날짜 2003.07.19. | 상담시간 25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은행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현재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은 여성이 이혼할 경우 사직을 권고해 왔기에 내담자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담자는 이미 이혼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은 직장 동료가 본 사건에 대해 입증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이혼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혼인여부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임을 주장하며 진정접수 방법을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여부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고(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진정접수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였다.
- 다만, 위원회의 진정 제기 요건으로 진정 당시 인권침해의 현재성²⁵³⁾을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내담자는 장차 차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나 아직 사직을 권고당한 바 없어 침해의 현재성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함을 안내하였고, 사직을 권고당한 직장동료가 직접 진정하거나 내담자가 제3자로서 직장동료의 사건을 진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53)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로서 침해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를 현재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래의 침해 발생 우려는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하지만 현재는 “장래의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재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현재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 적용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현재성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진정을 하여도 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해 왔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도 현재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는 바, 위원회도 진정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인권가이드북2』, 2004, p47).

혼인 여부라는 것은 단지 법적인 혼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혼인 가능성 및 별거나 이혼, 동거를 포함하는 사실혼과 재혼, 동성애 커플관계, 배우자의 지위 등과 같이 혼인과 관련된 모든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혼이나, 미혼, 혼인가능성, 별거, 이혼, 사별, 사실혼, 재혼 등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배제, 구별, 제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²⁵⁴⁾

최근 위원회에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진정의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가정, 건강가정” 등의 정의가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한 결합 관계만을 한정함으로써, 이러한 삶의 형태가 아닌 개인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의 금혼학칙이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위원회의 조사과정 중에 해당 학교가 금혼학칙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한 사례가 있었다.

다음에서는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금지 규정, 이화여대 금혼학칙 폐지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금지 관련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254) 국가인권위원회,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소지 법령」, 『차별 관련 법령 실태 조사』, 2003, p43

제7조 제2항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화여대, ‘금혼 조항’ 개정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화여대가 어제(21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이화여대 학칙 중 ‘금혼 조항’ 개정 결정이, 여성의 평등권을 향상시키고 우리사회의 인권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돼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9일 황모씨(19)가 “이화여대는 학칙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요건으로 미혼일 것을 들고 있고 재학 중에 결혼한 자를 총장이 제적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는 행복추구권, 자기운명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합리적 근거 없이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특정인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의한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 종합적이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화여대는 1월 6일 ‘금혼 조항’이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 1월 21일에는 “학생의 결혼 문제는 학칙으로 규제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신입생의 입학 요건으로 미혼을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재학 중 혼인을 금한 학칙 제 28조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혀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1.23)



“소득공제 차별, 인권위 진정”

여성학, 사회학 교수 5명으로 구성돼 우리 사회의 차별 사례를 분석하는 모임인 차별연구회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해 소득공제 관련 조항들이 혼인 여부나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차별연구회는 소득세법 부녀자 공제 조항의 경우 결혼한 여성에게 무조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또 배우자 공제 조항의 경우 법률혼 관계의 근로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 사실혼이나 동성혼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세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 2004.02.12일 방송)



“이혼자 대출제한 인권 차별 논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자 신용평가지 결혼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이혼, 사별자의 대출 보증을 사실상 제한한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혼자인 32살 A씨는 지난 4일 신용보증기금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신청을 했다가 이혼 경력 때문에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아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당초 대출보증 신청서에 ‘미혼’으로 기록해서 대출 승인을 받았으나 이혼경력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혼, 사별 등이 포함된 ‘기타’ 항목으로 수정했다가 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대해 ‘신용도 차이는 과거 샘플을 뽑아 불량률을 조사한 결과 기혼, 미혼자가 1~2%대인데 비해 이혼, 사별자는 7%가 넘게 나온다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2004.02.17일 방송)



“건강가정기본법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가족연구모임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건강가정기본법을 “혼인여부, 가족상황,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먼저 가족연구모임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가족”, “가정”, “건강가정”, “건강가정사업” 등의 정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결합만을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으로 상정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연구모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을 지지’ 하고 ‘가족을 우대’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족단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혼인 상태에 있지 않거나 법에서 규정한 가정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개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국민은 그가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든 혼자 살고 있든, 혹은 다른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고 있든 간에 사회보장제도 및 기타 정책의 수혜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봉사원 지원 단위를 가정으로 상정할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노인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일다 2004.10.11일자)

사례30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고소접수 거부

상담번호	03-전상-4000298	상담날짜	2002.12.10	상담시간	35분
------	---------------	------	------------	------	-----

상담요지

내담자는 호적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2003년 1월 성별이 변경(남→여)될 예정이었다. 내담자는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하여 산부인과에서 채취한 정액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고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야, 이 새끼야. 왜 수술을 했어? 트랜스젠더는 어차피 강간 인정이 안 되니 둘이서 좋게 해결하라”고 하였다. 또한 내담자가 가지고 간 증거물을 버렸고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얼마나 굶었으면 트랜스젠더랑 자냐?”는 말을 하였다.

내담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경찰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준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임을 주장하며 위원회가 본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됨을 설명하고 진정접수 방법 및 처리과정을 안내하였다.
- 경찰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위원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 구분이 뚜렷한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동성 또는 양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거나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배치되는 지향을 가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성적지향, 정체성을 이유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적소수자에게 차별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²⁵⁵⁾

255)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2002, p191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 의하면 위의 사례처럼 성적소수자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등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며, 성적소수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강제로 아웃팅될 가능성이 커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도 사적으로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회에 들어 온 상담 중에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져 상사로부터 “눈이 두개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눈이 한개 뿐인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사직을 강요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위원회는 성적지향에 의한 평등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2002년 11월 “사전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수정하라는 진정이 있어 심의 중에 해결되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으며, 2002년 10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을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8월 “헌혈문진표에 동성간 성접촉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평등권침해”라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 후에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²⁵⁶⁾을 나타내며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상담 또한 있었다.

성적지향과 정체성의 개념 정의²⁵⁷⁾

성적지향이란 ‘sexual orientation’을 번역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실제 성경험과는 무관하게 동성(same sex), 이성(opposit sex) 또는 양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지향이 특정 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객관적인 상태를 뜻한다면,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은 이러한 성적지향을 정체화한 주관적인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256) 프랑스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파리 액트업(Act Up-Paris)’은 “동성애 혐오증, 트랜스젠더 혐오증은 권리의 평등을 죽인다”는 슬로건을 내 걸고 2004년 2월 25일 가두집회를 한 바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해 왔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04년 3월 18일부터 살인, 고문, 폭행, 강간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 호모포비아적 동기가 발견되면 가중처벌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일다』, 2004.02.25일자)

257) 차별연구모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지침을 위한 기초연구』, 2002, p190

동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런 성적지향을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의 개념 ²⁵⁸⁾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불일치하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즉, XY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 남성의 성별을 부여받았으나 본인은 지속적으로 남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트랜스젠더라 부를 수 있다. 트랜스젠더는 실제로 성확정 수술을 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과 배치되는 지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용어라 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의료보험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성확정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의 접근, 전환된 성으로의 법적 인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면허증 재발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001년 이후 공식 성전환자 36명”

2001년 이후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이 법원에서 인정된 케이스가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이 바뀐 경우는 모두 27건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은 14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001년 이후 연도별 성별전환 신청건수는 2001년 1건, 2002년 2건에서 2003년에만 29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으며 올해는 5건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28건, 반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9건이었다. 이중 지난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전환 신청 단 1건만 청주지법에서 기각됐을 뿐 나머지 36건의 신청이 수용돼 법원이 성전환자들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전환 신청자

258) 위의 글, p190

의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7명, 20대 6명, 50대 이상이 2명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전환자들의 성별 변경에 관한 확립된 판결기준은 없는 상태로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실제 대구지법에서 성별정정 기준 및 요건으로 △2년 이상 심각한 성정체성 장애 증세 △상당기간 반대 성의 사회적 역할 △생식능력 상실 △성 인식의 재전환 가능성 희박 △내국인 △23세 이상 △미혼 등을 제시했으나 서울남부지법에서는 23세 미만의 남성에게 대해서 성전환을 허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소수계층의 어려움을 수용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더 나아가 성전환 허용 기준에 대한 법원의 통일된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2004.10.14일자)



사전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사라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와 연세대학교의 ‘킴투게더’를 비롯한 4개 대학 동성애자 모임이 2002년 3월 20일 국립국어연구원(표준국어대사전 발행)과 9개 출판사(국어·영한·한영사전 발행)를 상대로 낸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 수정” 진정 사건을 심의 중 해결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심의하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합의를 주선했고, 이 과정에서 K사 등 5개 출판사는 개정판 발간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D사를 비롯한 4개 출판사는 국립국어연구원 등 어문 연구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연구원은 개정판 발간시 진정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문서로 보내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판단하고, ‘심의 중 해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시중에서 판매중인 국어·영한·한영사전은 동성애를 변태

성욕이나 색정도착증으로 분류하거나, 호모·동성연애 등 비하적인 용어를 표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심의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향후 발간되는 각종 사전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사라지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2.11.15.)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는 성차별”

성별을 구별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성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며 인권단체들이 폐지운동에 나섰다.

정보인권모임은 19일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째자리에 성별을 구별하는 것은 왜곡된 남녀차별적 관념을 부추기고 성적소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폐지를 위한 1만인 집단 진정인을 모집해 오는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 번째 숫자는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남성은 1, 여성은 2로, 2000년대에 태어난 남성은 3, 여성은 4로 시작된다. 정보인권모임의 박김형준 활동가는 “남성에게 상위순번, 여성에게 하위순번으로 배정하는 것이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현실의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슷한 예로 지난 2002년 여성부 남녀차별위원회에서 초중고교 출석부에 남학생들을 앞에 적는 것이 차별이라고 규정, 시정조치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관계자는 “트랜스젠더 등 주민등록번호에 표기된 성이 본인의 성 정체성과 다른 성적소수자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2004.08.20.)

사례31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 회장 입후보 제한

상담번호	03-전상-4000200	상담날짜	2003.03.31	상담시간	30분
------	---------------	------	------------	------	-----

상담요지

내담자가 재직하고 있는 인천 소재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 의하면 성적이 40% 이내에 속하는 학생만 회장 선거의 입후보자가 될 수 있다. 얼마 전 성적이 40% 이내에 속하지 않는 학생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학교생활규정’ 때문에 그 학생을 회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내담자는 학생들의 추천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된 학급 회장을 성적을 이유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위원회가 본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답변요지

1. 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병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임을 안내하였다. 이와 같은 차별 이유 중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무엇으로 볼 지 위원회의 판단을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조사가능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였다.
2. 내담자는 교육청에 이의신청한 후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재상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99년 서울시 교육청은 학급 반장이란 용어를 회장으로 바꾸고, 가능하면 다양한 학생들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비민주적 요소에 의해 회장 입후보자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 바 있다.²⁵⁹⁾

259) 『중아일보』, 1999.02.22일자

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현재 성적에 의해 회장 입후보자를 제한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02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을 검토한 뒤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생대표선출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²⁶⁰⁾

1. 임원이 될 수 있는 학생의 조건

임원이 될 수 있는 학생의 조건

	품행단정	성적우수	교사추천	징계경력자 제한	전체
학교수	84	34	30	86	99
백분율(%)	84.85	34.34	30.30	86.87	100

열린우리당 구노회 의원의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품행 단정의 기준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 이를 학생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삼는 것은 어른들의 잣대에 맞추어 학생대표의 조건이 결정될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성적을 제한하는 것은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은 다른 일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대표는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 당국이 학생의 조건으로 능력을 가늠하는 것은 투표를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기타 문제 조항

- ①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에 담임추천서 및 생활지도 각서가 포함되어 있다.
- ② 학생대표 선출 후에 학교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③ 득표수가 동일할 때는 학교 성적 및 최고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 ④ 2차 투표에서도 동수일 때는 학교장이 지명한다.
- ⑤ 합동연설회의 연설문 내용은 합동연설회 2일 전까지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60) 구노회,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본 학생인권의 현주소』, p16-18

인권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학교생활규정(안) 관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을 검토한 뒤,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칙개정을 유도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체벌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 내 인권상담기구 설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등을 권고하였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와 관련해 현행 교육부 예시안은 ‘학생회 회원(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음’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현행 교육부 예시안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간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뒤, “학생들에게도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에 한해서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당법은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서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학생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이밖에 국가인권위는 학교생활규정의 목적에 학생인권 보장을 추가할 것,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및 통합교육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도시와 농촌 및 초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실정에 맞게 달리 규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2.09.10.)

“성적 나쁘다, 반장 당선 무효화”

충남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투표로 뽑은 반장을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새로 뽑기로 해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측은 11일 3학년 반장 김모양(15)이 성적상위 50% 이내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 김양이 학생들의 투표로 반장으로 뽑힌 지 5일만의 일이다.

김양의 아버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장으로 선출됐다면 좋아하던 딸이 이날 울먹이며 학교에서 돌아와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성적이 좋지 않아 임명장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양의 담임 최모 교사는 “반장으로 임명하는데 교칙이 문제가 돼 ‘네 성적이 어느 정도냐’고 물은 적은 있다”며 “최근 부임해 학교 교칙이나 학생들에 대해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 교칙은 ‘반장으로 선출되려면 성적이 가급적 상위 50%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측이 반장의 요건으로 리더십 보다는 성적을 강조해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 반장을 당선 무효화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 2002.03.15일자)

사례32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흡연자 차별

상담번호	03-전상-1000221	상담날짜	2002.09.17	상담시간	45분
------	---------------	------	------------	------	-----

상담요지

내담자는 비흡연자로 ○○대학교 법대 교수이다. 내담자는 “수도권 9개 대학 총장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대학입학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중앙일간지 기사를 보았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내담자는 사회의 금연 분위기 속에서 최근 □□회사에서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는 차별임을 주장하였다.

답변요지

1. 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병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임을 안내하였다. 흡연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18가지의 차별 이유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할지 그 여부는 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조사가능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였다.
2. 위원회의 진정 제기 요건으로 진정 당시 인권침해의 현재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대학입학 전형시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을 뿐 구체적인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가 현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내담자에게 사건의 추이를 좀 더 지켜 볼 것을 안내하였다.

일상 속에서 서로 다른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흡연권²⁶¹⁾과 혐연권²⁶²⁾ 역시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위 사례는 대학입학 전형에서 흡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합리적

차별인지의 여부를 제기하는 것인데, 2004년 5월 ○○대학이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2단계 전형에서 비흡연자에게 가산 2점을 준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결국 현실화되었다.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이익형량의 방법’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다.²⁶³⁾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되는 경우 어떠한 해결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밀폐된 공간에서는 혐연권을 더 중요시하여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혐연권자와 흡연권자의 권리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그 중 하나이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 역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이는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흡연자들에 대해 대학입학 전형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흡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혐연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시부터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설령,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은 일반인도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입학시 비흡연자에게 가산점 부여 등 이익을 주는 것은 흡연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26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8.26. 2003헌마457).

262)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해서도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4.8.26. 2003헌마457).

263) ‘이익형량의 방법’은 ‘보다 중요한’ 내지 ‘보다 우월한’ 이익을 보장하고 덜 중요한 이익을 유보시키는 방식으로, 이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같은 상위기본권이 하위기본권에 우선한다. 그런데 이익형량의 방법은 특정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등장한 해결방식이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인데,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는 이익형량의 방법보다도 헌법정신에 더 충실한 해결방법이다.

한편, 위원회는 2003년 2월 “경찰서 유치장의 흡연금지는 그 취지에 비취볼 때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유치장내에서는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음에서는 위 사례에 관한 신문기사, 흡연권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흡연자 대입 우대”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대학 총장들이 나섰다. 다음 아닌 대학입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수도권 지역 9개 대학 총장, 부총장은 지난 13일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과 오찬모임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모임에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오명 아주대 총장, 심윤중 성균관대 총장과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갑 원장은 “청소년들이 담배에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흡연여부를 가리기 위해 박원장은 △모발검사 등을 통해 니코틴 검사를 한 뒤 동점자일 경우 비흡연자를 우대하는 방안 △특차 모집시 비흡연자를 우선 추천 받는 방안 △중·고교 재학시 흡연으로 징계 받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모발검사는 검사 전 4~6개월 정도까지의 흡연 여부가 나타나지만 간접흡연의 영향을 받는 등 한계가 있어 국립암센터 발전 기금으로 흡연자를 가려내는 기술적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의 총장, 부총장은 박 원장의 취지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올 6~7월 서울시내 30개 초·중·고교 재학생 3,2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고생의 22.7%, 여고생의 10.7%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했으며, 상습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는 중1에서 고1이 가장 많았다.

(매일경제 2002.09.16일자)



“2005 대입 1학기 수시 모집

-아주대학교, 1단계서 적성검사, 2단계 비흡연자 가산점”

아주대는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의 10%(200명, 정원의 30명)를 선발한다. 아주대 수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1단계 전형에서 적성검사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과 2단계 전형에서 비흡연자에 대해 면접시 가산점 2점을 주는 것이다.

비흡연자 가산점은 2단계 전형 당일 아주대 병원에서 흡연검사(소변검사)를 실시, 비흡연자로 판단되면 2점을 부여하며 또 흡연자에게는 금연각서를 제출하면 1점의 가산점을 준다.

(파이낸셜뉴스 2004.05.20일자)

경찰서 유치장의 흡연권 제한은 합리적 조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들에게는 별도의 흡연실을 두거나 화재예방 장치 등을 마련해 흡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모씨(24)가 2002년 2월 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가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기각’ 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경찰측은 유치장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로 △화재 및 기타 사고 예방 △비흡연자의 간접피해를 방지 △청결하고 안전한 유치장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은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성냥 라이터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해야 한다(제9조 제1항 제2호)”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측은 유치장에서 흡연을 허용했을 경우의 문제점으로 △흡연을 허용할 만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흡연에 따른 감시 인력이 부족하고 △성냥 라이터 등 위험물 반입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정밀 신체검사가 강화돼야 하고 △간접흡연으로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경찰서 유치장의 흡연금지는 그 취지에 비춰볼 때 필요하고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기각’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2.28일자)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4.8.26. 2003헌마457)²⁶⁴⁾

1. 흡연권의 제한 가능성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인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264) 이 사건은 청구인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 대해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안이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과잉금지원칙²⁶⁵⁾의 위배여부

이 사건 조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조 참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생활을 공유하는 곳에서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하여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조문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국민의 건강)이 제한되는 사익(흡연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개정의 문제

원회법 제30조 제2항은 차별금지사항으로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18가지 차별사유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유의 차별 관련 상담들도 상당수 있었다.

“성별, 종교, 장애..., 병력”만으로 규정한 차별행위의 예시를 “성별, 종교, 장애..., 병력 기타”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개정의 문제의식을 잘 드러낸 글²⁶⁶⁾이 있어 아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현재의 관행처럼 인권위법 제30조 제2항의 18개 차별사유 유형 중 비교적 명백히 구별되는 17개의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를 모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포섭하려고 한다면 인권위법 제30조 제2항을 열거규정으로 보면서 동시에 헌법 제11조 제1항 제

265) 입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고(피해의 최소화),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衡量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266) 조홍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

2문과 달리 사회적 신분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학위·학력(외국치대졸업생, 고등국민학교, 원격대학졸업생, 독학사 등), 직업(기간제 교사,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생활수준(의료보호대상자), 기타(공무원임용결격자, 노조원, 신용거래불량자, 훈령생인 감호소수용자 등) 등의 경우는 인권위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론은 상위법인 헌법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²⁶⁷⁾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외에도, 모든 유형의 차별행위를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보게 되어 종교에서는 신자와 비신자, 나이에서는 노인과 중년, 청년이라는 지표들도 사회적신분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동조항의 차별금지사유에 ‘기타’ 항목을 추가한다면 비교적 내용이 명백한 17개 차별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사회적 신분’에 포함시켜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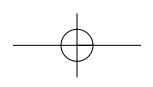
267)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선천적 신분설은 사회적 신분을 출생에 의해서 고정되는 선천적 신분 내지 사회적 지위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귀화인이나 전과자의 자손, 존속과 비속의 지위, 혼인외의 자녀 및 양반과 상놈, 인종 등은 출생에 의해서 고정되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사회적 신분을 가문이나 문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후천적 신분설은 선천적 신분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람이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면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용자, 노동자, 교원, 공무원, 탤런트 등 직업상의 지위와 가진자와 가지지 않는 자, 농민, 어민, 상인, 파산자, 귀화인, 전과자, 특정지역의 주민인 지위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다 보면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위 글에서 인용);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1995.2.23. 93헌바43). 헌법재판소는 ‘전과자’ 이외에도 ‘변호사’, ‘정부투자기관의 직원’ 등을 사회적 신분으로 보았다.



기타상담

- 사례33 - 이혼판결에 대한 불만 등
- 사례34 -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 사례35 - 공중목욕탕 내 CCTV 설치의 위법여부 문의
- 사례36 - 위성, 레이더 등을 이용한 감시 및 통제

기타상담



사례33

이혼판결에 대한 불만 등

상담번호 03-대상-0010444 | 상담날짜 2003.12.10. | 상담시간 70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1997월 7월부터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던 중국인(한족)으로서, 1998년 8월 한국인 A를 알게 되어 2년간의 연애와 동거를 거쳐 2000년 3월 정식으로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정식 결혼을 한 후부터 내담자는 시누이로부터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의 매일 폭행을 당하였고, 어쩔 수 없이 2002년 초에 도망을 나왔다. 그러자 남편 A는 2002년 8월 내담자가 무단가출하였다며 이혼 신청을 하였고 동월 22일에 결석재판으로 이혼판결을 받았다.

내담자는 최근 한국 국적 취득의 가능성을 법무부에 문의하였으나 “이혼 판결에서 내담자를 유책배우자로 인정하였기에 현재로서는 그 취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되어, 위와 같은 이혼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내담자는 이혼을 위한 재판에서 변론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동안 계속되는 시누이의 폭행을 피해 은신한 것뿐인데 법원이 자신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판결이 시정되어 자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답변요지

1.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인권침해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진정하여도 각하됨을 설명하였다(위원회법 제30조 1항 1호 및 제32조 1항 1호).
2. 한편,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해 법원에 재심(268)을 청구하여 잘못을 바로 잡고 난 후 국적취득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3. 또한 시누이의 폭행에 대하여서는 형법상 폭행죄(또는 폭처범위반죄)에 해당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4. 기타 이혼판결과 관련한 재심청구 및 폭행죄로의 고소 등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위원회 출범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상담²⁶⁹⁾ 총7,087건 중, 입법/ 재판 및 법률문의와 관련한 상담은 총510건²⁷⁰⁾에 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법 제30조1항1호에 의하면,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입법권²⁷¹⁾을 국민대표성 즉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되는 국회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²⁷²⁾, 사법권(재판권)²⁷³⁾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⁷⁴⁾

따라서 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이 제기될 때에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법 제32조1항1호에 의해 각하된다.

다만,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재판(판결자체)에 대한 진정이 아니라, 국회사무처의 업무 또는 법원의 행정²⁷⁵⁾에 대한 진정인 경우에는 입법권 및 사법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의 이혼재판서류를 검토한 법원행정직원이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다며 4회에 걸쳐 다른 서류를 직접 가져오도록 요구하면서 반말을 하고 면박을 준 경우, 강제집행과정에서 집행관에 의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한 경우 등이 있었다.

26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중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56조 제1항).
 269) 진정접수된 상담 및 면전진정신청에 따른 상담 제외
 270) 입법/ 재판 243건, 법률문의 267건
 271) 헌법 제40조
 272) “다만, 입법부작위가 헌법상 보장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그러한 입법의 요구가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입법자가 이에 대한 입법을 미루고만 있다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입법 권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 가이드북2』, 2004, p29
 273) 헌법 제101조 제1항
 274) “외국의 경우에도 법원 재판의 당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는 없으나, 오스트레일리아 인권위원회의 경우, 법원에 계속 중인 인권침해 관련소송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참가하는 재판개입제도 및 조정 에 실패하여 위원회에서 종결된 진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인 아미커스 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 가이드북2』, 2004, p32
 275) “법원행정이란, 법원의 재판이외의 행정업무로 법원청사, 기타 시설의 설치·관리, 법관·법원직원의 임면·배치·감독 등의 인사행정, 법원의 예산·회계·경리, 등기관관련 업무, 호적업무, 집행관의 업무, 공탁사무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인권상담 가이드북2』, 2004, p32

한편, 상담센터에는 소송 중인 사건에 관한 법률 문의, 사인간의 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법률 문의 및 소송 대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일반 법률 상담의 경우, 상담센터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법률상담소를 안내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는 본 서의 부록에 실려 있다.

사례34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상담번호 03-전상-0010885 | 상담날짜 2003.09.25. | 상담시간 70분

상담요지

내담자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1971년경 집안일을 돕기 위해 외지인 A를 고용하였는데, 평소 자신의 집과 원한 관계가 있던 동네 사람이 이 외지인을 서울에서 숨어들어온 간첩이라고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앙정보부 소속 군인들은 당시 집에 있던 내담자의 어머니와 사촌누나를 잡아간 후 1주일간 집의 기둥까지 쪼개면서 가택수색을 하였으나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한편, 군인들에게 잡혀간 내담자의 사촌누나(당시 26세)는 알몸으로 거꾸로 매달리는 극심한 고문을 당하여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결혼을 못한 채 지금도 비가 오는 날마다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어머니(당시 32세)는 당시 고문으로 인해 한 쪽 눈이 실명이 된 상태로 다리를 절면서 살다가 근래에 사망하였다. 조사결과 간첩으로 몰렸던 A는 신분이 확실한 경찰관 가족으로 밝혀져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내담자 가족 역시 혐의는 벗었지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와 고문을 가한 자는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살고 있으며, 내담자의 가족들은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내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건을 알고 있는 마을 어른들에게 사실확인서와 서명을 받아 놓았다며, 피해 당사자인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였고 사촌누나도 고문 후유증으로 오래 살지는 못 할 것이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답변요지

1. 내담자의 사안은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됨을 설명하였다(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2. 30여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형사상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따라서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국가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I · 인권상담의 과정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III · 사례34.제도개선요구

IV · 부록

3. 내담자의 진정취지가 공소시효배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요구인 경우, 이는 국회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됨을 설명한 후(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다만 위원회의 판단결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간 등에 대하여 입법권 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동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국회의 입법에 관련된 사안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²⁷⁶⁾ 이와 관련한 진정이 제기될 때에는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각하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²⁷⁷⁾. 따라서 위원회는 그동안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 및 국회의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여 왔다.²⁷⁸⁾

아래에서는 위원회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대표적인 인권 관련 법령을 소개한 후, 상기 상담사례와 관련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위원회의 법령 제정 권고

“1만3000명 양성된 북파공작원 명예회복 투쟁사” -2004년 1월 8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특별법 통과되기까지-

북파공작원(HID)하면 떠오르는 것은 영화 ‘실미도’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 3월, 가스통과 쇠파이프를 앞세운 격렬한

27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7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278) 위원회 출범이후 2004년 7월 31일까지 권고 등 조치건수 총148건 중, 정책 및 법령 등에 관한 권고는 총 76건으로 전체 조치건수의 51%에 달한다.

‘광화문 시위’였다. 이후 이들에 대한 언론들의 집중적인 조명과 국민적인 관심이 영화 ‘실미도’가 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이들은 2002년 3월의 시위 이후 북파공작원 실체 인정, 사단법인설립, 피해보상 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9월 29일에는 영등포역 앞에서 또다시 격렬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경찰과 북파공작원 수백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한 이날 시위로 총 224명이 연행되고 124명이 사법처리 됐다.

그러던 와중 2003년 3월 국가인권위가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북파공작원 문제에 대해 정부의 피해구제 노력이 부족했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후 2003년 5월 국회에서 김성호 전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안이 마련됐고 이후 8월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은 2004년 1월 8일 국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오마이뉴스 2004.06.07일자)

위원회의 법령 개선·개정 권고

‘현역병 휴가 중 진료비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군 복무자가 휴가기간 중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의료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동법 제39조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벗어난다며, 배모씨와 나모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역사병 등 군복무자가 휴가기간(외박·외출 포함)에 군

의료시설 이외의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09.16.)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현역 군인은 물론 단기하사·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 등 군 복무자들도 휴가 또는 외출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현역들은 원칙적으로 군 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진료·치료비를 부담해 왔으나, 불가피하게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역 장병이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역병은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고, 공단 부담금은 국방부와 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정브리핑 2004.06.01일자)

위원회의 법령폐지 권고

국가인권위, 보안법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개·폐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국가독립기구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 등에 시정권고를 해온 인권위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의 연구와 실태조사, 공청회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보안법이 제정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행위형법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개폐를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제정된 뒤 7차례 개정이 국민합의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법률적 측면에서도 행위형법에 저촉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 형법 등 다른 법규로 처벌이 가능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헌법상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유지에 문제가 없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보안법의 한두 군데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과 위원(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3차례 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사자료와 공청회 자료, 지난해 3월부터 가동 한 태스크포스팀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쟁점 문제를 논의해 왔다

(문화일보 2004.08.25일자)



“국보법 폐지 안 된 것 의아스럽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유엔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 폐지 안 된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한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6일 오전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에서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아버 판무관은 “국보법은 국제 인권기준에 너무 뒤떨어져 있으며 지난 92년 유엔인권이 사회의 ‘단계적 철폐’ 권고와 그 이후 국보법 관련 피해자들의 제소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유엔측의 권고가 있었던 만큼 법 폐지는 당연하고 분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4.09.16일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반인도적 범죄’의 의의 ²⁷⁹⁾

국제사면위원회는 최근 국제상설형사재판소 ²⁸⁰⁾의 설립과 관련한 캠페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학살,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처형(extrajudicial execution), 납치, 고문, 노예, 강제이주, 자의적 구금 및 정치적, 인종적 이유로 인한 박해’로 정의하였다. 반인도적 범죄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지만 ²⁸¹⁾ 명백한 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행위 일반에 대하여 그것을 모두 반인도적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279) 박찬운, 「반인도적 범죄의 한국에서의 수용: 그 내용과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 2002.08.26.

280) 이는 1998년 ‘로마회의’에서 채택한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위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13일에 비준하였다.

281) 반인도적 범죄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논쟁되는 요소는 범죄행위의 무력충돌과의 관련성, 광범위성 및 조직성, 행위의 동기, 국가적 행위성, 행위의 비인도성 등인데 주로 이들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최근, 반인도적 범죄를 대신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반인권적 국가범죄(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 ²⁸²⁾라는 개념은 일응의 타당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국가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정당화사유 없이 시민을 살해 또는 고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이 침해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를 말한다. ²⁸³⁾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 284) 입법청원

1. 법안의 취지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별도로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시효가 경과한 사건 모두에 대해 적용할 것(진정소급효의 인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 소급입법 논란이 존재하나, 국가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²⁸⁵⁾

반인도적 범죄나 조약상의 범죄에 대해 국내법상 특별 규정이 없는 관계로, 아무리 극악한 고문사건의 경우라도 7년에서 10년 정도만 피해 다니면 법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의에 반하며 국제적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반인도적 범죄에는 시효를 적용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인 만큼(국제관습법적 지위를 얻었는가 하는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국내법도 이들 범죄의 구성요건화와 더불어 시효부적용의 원칙을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반인도적 범죄의 범주에 들지 않는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는 그 사실의 존부가 은폐되기 쉬우므로 적어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²⁸⁶⁾

282) 조국,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법률신문(2002.2.25), p14

283)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사법연구(한국형사법학회, 2002년 6월, 17호)” 참조

284) 1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가 2002년 5월 21일에 입법청원한 법률안이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는 결국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285) 이창조,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 민주사회를위한변론(2002, 7/8월호, 통권47호), p23-24

286) 박찬운, 「반인도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 민주사회를위한변론(2002, 11/12월호, 통권49호), p39-40

2. 법안의 주요내용

제2조 (공소시효의 배제)

- ①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²⁸⁷⁾에서 정의된 반인도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② 국가기관이 직무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조 (공소시효의 정지)

국가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감금), 형법 제151조(범인 은닉), 제152조(위증과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죄 등을 범한 경우 그 증거조작·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을 때부터 그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제2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② 제3조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증거조작·사실발견 은폐행위가 있을 때부터 그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때까지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87)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중인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1.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²⁸⁸⁾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2조²⁸⁹⁾의 헌정질서파괴범죄
-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외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²⁹⁰⁾

제2조 (공소시효의 정지)

- ①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소시효특별법 내용과 의미] 공권력 인권유린 강력한 처벌 의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반인권적국가범죄공소시효특별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행위와 이의 조작·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288) 제정 1995.12.21. 법률 제5028호
 289) 제2조 이 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
 290) 제정 1995.12.21. 법률 제5029호

최근 문제가 된 수지김 사건이나 허원근 일병 사건 등에서 보듯 뒤늦게나마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처벌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공권력의 개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가 시정되지 않고, 잘못된 재판 결과도 그대로 남게 돼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인정되는 반인도 범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또는 이를 의도적·조직적으로 방해한 국가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전쟁과 테러 등 국제법상 인정되는 반인도 범죄는 아직 별도의 실체형벌 법규가 국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절차 규정인 공소시효특례 규정만을 두는데 무리가 있고, 마침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과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 그 관할 범죄에 대한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여권이 추진 중인 ‘진실과화해법’이 과거 국가 공권력의 인권 유린과 조작·은폐 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 법안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공권력의 인권 침해 행위와 조작·은폐 행위의 공소시효가 대체로 단기간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진실과화해법’이 일부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를 추진하는 것도 국가기관의 조직적 의도적 은폐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인권 침해 사실이 문혀버림으로써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법안은 또 해당 범죄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명, 신체, 재산 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함으로써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저질러졌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법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둬으로써 소급입법의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일보 2004.09.16일자)

사례35

공중목욕탕내 CCTV 설치의 위법여부 문의

상담번호	03-전상-1000412	상담날짜	2003.05.28.	상담시간	35분
상담번호	03-전상-1000413	상담날짜	2003.05.29.	상담시간	50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탈의실에서 도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서울의 목욕탕들은 거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내담자가 거주하는 충남의 경우에는 아직 CCTV를 설치한 곳이 없다고 하였다.

내담자가 CCTV의 설치가 위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어 경찰서에 문의하였더니, 경찰이 위원회를 안내해 주었다.

답변요지

-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함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사인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 현재 목욕탕 탈의실내 CCTV 설치에 관한 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은 없으나,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2(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의하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 내담자에게 목욕탕 이용자가 알지 못한 채 촬영이 되는 문제와 녹화테이프 유출되어 설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의 문제 등에 대해 위법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도난 방지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민사상 그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동안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상담으로는, 첫째 내담자의 사안이 위원회의 업무에 해당 하는지 문의한 상담, 둘째 위원회 업무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한 상담, 셋째 위원회 업무에 대해 조언이나 제안을 한 상담 등이 있었다.

‘위원회 업무 문의’와 관련한 상담은 위 사례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것이 있었다.

A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경찰공무원은 월 7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75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하는 현행 보수규정을 시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B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정직 중에는 출근 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정직처분이 있는 후 계속하여 출근명령을 받았다. B는 자신의 사안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다.

CCTV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상담을 유형화 하면 첫째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둘째 정신병원, 요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수용자 관리차원에서 설치한 경우, 셋째 사기업체 등에서 관리,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넷째 찜질방, 목욕탕 등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CCTV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수용거실 내 CCTV 설치·운영은 인권침해”라고 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과 3개 구금시설 소장에게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상담사례와 같이 공공기관 이외에서 CCTV를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²⁹¹⁾이 적용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서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291) 예를들어 민영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이 CCTV를 설치하여 고객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서 이를 이용한 경우, 그러한 이용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2003, p12).

왜냐하면 CCTV의 설치 및 사용 행태 전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²⁹²⁾, 자기정보자기결정권²⁹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05.1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개인정보인권침해 여부에 주목하고, 2003년 12월 “방범 CCTV와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292)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의 일부로서, 헌법 제17조와 제10조에서 연원한다(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 권고).
293)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 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 권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10조, 제17조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07.24. 96다42789).

I · 인권침해상담의 유형과 과제
II · 통계로 보는 인권침해상담
III · 사례 35 · 기타 · 제안/불만
IV · 부록

강남구 일대의 CCTV 설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30여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무인단속장비의 성능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지역, 운영방법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는 국민기본권 침해 요소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1.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공공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것은 그 설치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며, 설치·작동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내의 모습을 녹화·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²⁹⁴)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다.

2. 현재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여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원칙인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²⁹⁵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헌법 제37조 :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을 위반하고 있다.

3. 또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이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명

294)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 ①어는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95)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확하고 상세하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 되므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처들이 검토되고 강구된 후 그러한 조처들로도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하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²⁹⁶”을 개정함으로써,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법적 근거없이 수용거실내 CCTV 설치·운영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11.01.)

법적 근거나 기준 없이 임의로 구금시설 수용거실 안에 CCTV를 설치해 수용자의 모든 행동을 24시간 촬영·감시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34세, 수원구치소 출소자) 외 2인이 수원구치소장,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각각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권고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CCTV 촬영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운영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전국 구금시설에는 총 13,970개의 수용거실 중 1,341개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설치율 9.6%). 이 중 여주교도소는 630개 모든 거실에

296)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된다(동법 제1조).

CCTV가 설치되어 있고(100%), 다른 교정시설들은 0.8%에서 26.9%까지 다양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비율은 대면계호에서 시설계호로 변해가는 교정행정의 현대적 추세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행형법과 행형법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는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무부령인 ‘보안장비관리규정’은 CCTV 장비의 설치와 관리 요령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법무시설기준규칙’의 [교정시설감시카메라설치기준]도 교화기능별로 설치율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설치 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며 △그나마 이 규정들에는 CCTV 설치 목적, 거실지정 기준, 운영 방법, 인권침해 방지 대책과 같은 내용들이 빠져 있어 법적 근거 규정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과 법무부는 △구금시설내 CCTV 설치하는 수용자 감시의 효율성 말고도 보안 사고 방지, 자살 방지, 수용자간 인권 침해 방지와 같은 보호기능을 갖고 있으며 △수용자에 대한 ‘시선내 계호’가 교도관의 기본 업무 원칙이므로 CCTV를 통한 수용자 감시는 행형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되지 않아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CCTV는 재생 및 무제한 복사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점 △특정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교도관의 시선 계호와 크게 다르고 △24시간 연속으로 수용자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동태적인 삶의 흐름이 정보의 형태로 녹화됨으로써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고 △CCTV가 설치된 사실 자체가 주는 ‘위축 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도 현저하게 제한되며 △녹화된 개인 정보의 유출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위해 △행형법 등 관련 법령에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때 수용거실 내 CCTV 설치·운영은 수용자 인권보호, 보안사고 방지와 같은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되어야 하며 △CCTV

는 어디까지나 교도관의 계호를 보완하는 보충적 보호장비로서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라는 교정행정의 기본 목적 하에서 운영해야 하고 △목욕이나 용변 모습이 노출되어 과도한 인격권 침해가 없도록 사용목적에 따라 촬영범위를 제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장비의 성능과 제원(제품의 규격, 성능, 기능 등) △설치 장소와 기준·거실 지정기준과 같은 운용방법 △녹화된 기록물의 보존과 폐기 △책임소재와 감독 체계 △자료의 활용 방법들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기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자의적 이용을 방지하며, 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임의로 수용거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적법절차의 원리(제12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피진정인들에게는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제 3의 눈”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 생활을 편하고 풍요롭게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 빚어지는 부작용도 크다. 그 예로 사생활과 개인정보, 인권 침해를 들 수 있다. 지금 CCTV(폐쇄회로TV)는 백화점, 슈퍼마켓, 은행 등 곳곳에서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방법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지만 선량한 보통사람들도 도매금으로 잠재적 범죄자나 용의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은밀하게 뒤에서 행해지는 도청도 마찬가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몰카’에 이르면 사정은 더욱 달라진다. 훔쳐보기와 관음증으로 상징되는 ‘몰카’는 목욕탕, 수영장, 화장실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몰카’에 찍힌 사



람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커다란 상처를 받게 마련이다. 이처럼 곳곳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과 프라이버시가 '제3의 눈' '제3의 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관내 각 지역에 CCTV 272대를 설치해 본격적인 'CCTV 방법시대'의 막이 올랐다고 한다. '묻지마 범죄'와 '증오범죄' 등 불안과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자화상의 한 단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감시의 눈'이 아니라 이웃들이 서로를 챙겨주는 '관심의 눈'이 범죄예방에 더 필요하다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가슴에 와 닿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향신문 2004.08.25일자)

사례36

위성, 레이다 등을 이용한 감시 및 통제

상담번호 03-대상-0010374 상담날짜 2003.11.13. 상담시간 55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의 머리 속에 마이크로 칩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의 생각을 통제하기도 하고 목, 배, 팔목 등에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완벽하게 조정하는 한편, 최근에는 위성, 레이다 등을 이용하여 감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보기관이 내담자를 통제, 조정하는 이유는 내담자의 EQ 지수가 높아서 그 능력을 무력화하고 또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내담자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하여 통제와 이용을 당하다 억울하게 죽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는 큰 손실이며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인 바,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고 사실을 규명하여 구제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한편, 내담자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답변요지

1.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 또는 기각됨을 설명하였다.
2.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관할구청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위원회에는 위 상담과 같이, 피해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주관적인 피해만을 호소하거나, 피진정이 불분명하여 특정할 수 없는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²⁹⁷⁾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특색은 첫째, 사적관계에 의한 피해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라는 주장이 많다는 것, 둘째, 그러나 피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동반하지 않은 비합

리·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²⁹⁸⁾. 또한 어떠한 경우에 이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존재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될 때에는 위원회법상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²⁹⁹⁾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³⁰⁰⁾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담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센터는 내담자의 주장을 경청하거나 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해결대안을 제시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편, 모든 피해에는 원인이 존재한다. 영화 ‘지구를 지켜라’에서도, 주인공의 특이한 생각과 주장의 이면에 존재하던 피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상담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상담의 경우에도 내담자 주장의 이면에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담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제3의 시선으로 우리를 봤다”

-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감독 -

장준환 감독의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는 한 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독특한 영화다. 외계인으로 확산하는 악덕 기업주(강사장)를 납치해 갇은 고문을 가하는 ‘맛이 간’ 청년(병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의 열개는 언뜻 코믹 판타지를 연상케 하지만, 문명세계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은 화법은 직설적이다. 섬뜩한 캐릭터가 뿜어내는 음울함이 있는가 하면, 정

297)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위원회 출범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상담(진정접수된 상담 및 면진진정신청에 따른 상담 제외) 총7,087건 중 약800여건에 달해, 전체 상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8) 가끔은 내담자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의 비합리성에 내부적 비판과 고뇌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29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0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교하게 배치된 상황들이 폭소를 유발하기도 한다.

코미디와 호러를 넘나들던 영화는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한다. 플래시백으로 처리된 병구의 회상은 그를 미치게 만든 세상과, 이에 대한 감독의 ‘날 선 시선’이 드러난다. “내가 미쳐갈 때 어디 있었느냐”는 병구의 단발마적 비명은 영화의 설정 자체를 뒤흔들긴 하지만 그만큼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장감독은 “내가 교육받았던 바가 진실이 아니며, 세상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데 대한 분노가 있었다”면서 “병구를 통해 한꺼번에 토해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감독은 대학 4학년 때 뒤늦게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졸업 후 ‘영화아카데미’에 입학했다. 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인 단편 ‘2001년 이매진’은 자신이 존 레논의 환생이라고 믿는 소외된 남자의 이야기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그의 애정은 그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다.

(경향신문 2003.04.04일자)



〈영화〉뷰티풀 마인드(Beautiful Mind, A)³⁰¹⁾

1940년대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원에 시험도 보지 않고 장학생으로 입학한 한 천재 존은 기숙사 유리창을 노트 삼아 자신만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찾는 문제에 매달린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미녀를 둘러싼 친구들의 경쟁을 지켜보던 그는 섬광 같은 직관으로 균형이론의 단서를 발견한다. 1949년 27쪽짜리 논문을 발표한 스무 살 청년 존은 하루아침에 학계의 스타로, 제2의 아인슈타인으로 떠오른다.

301) 론 하워드 감독, 미국 Imagine Entertainment 제작, 2002.02.22. 개봉

이후 MIT 교수로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그는 정부 비밀요원을 만나 소련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련 스파이에 의해 존은 끊임없이 감시와 미행을 당하며 목숨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이 하는 일의 비밀을 지킨다.



하지만 영화를 모두 보고나면 이 모든 것이 존의 망상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는 단지 한번의 암호해독만 해준 것일 뿐,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존에게 임무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자와 그의 뒤를 미행하던 자는 존 자신이 만든 가상의 인물이다. 또한 존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잡지와 신문에서 여러 가지 법칙을 조합해서 해독하고 있는 암호는 암호가 아닌 것이다. 한편 존의 이러한 행동에 의심을 품은 아내와 친구들이 그 실체를 파악해보니, 존은 지금까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의 우체통에 수많은 암호 해독 문서를 넣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로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여기서도 존은 자신을 데리러 온 정신병원직원을 소련의 비밀요원으로 착각하게 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대학에서 자신과 함께 방을 같이 쓴 친구와 그의 조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망상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정신병원을 퇴원 후에도 그의 과대망상은 재발되었으나 그의 아내는 서로를 의지하는 사랑을 통해 결국 치료해낸다. 존은 다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스무 살에 완성한 균형이론이 뒤늦게 노벨상을 타게 된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있어서 여기 있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하게 된다.

IV. 부록

1. 인권상담센터 정례 사례연구발표 자료
2. 안내기관
3. 경로별 상담 및 진정 방법
4.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절차 흐름도



사례36

위성, 레이다 등을 이용한 감시 및 통제

상담번호 03-대상-0010374 상담날짜 2003.11.13. 상담시간 55분

상담요지

내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의 머리 속에 마이크로 칩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의 생각을 통제하기도 하고 목, 배, 팔목 등에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완벽하게 조정하는 한편, 최근에는 위성, 레이다 등을 이용하여 감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보기관이 내담자를 통제, 조정하는 이유는 내담자의 EQ 지수가 높아서 그 능력을 무력화하고 또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내담자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하여 통제와 이용을 당하다 억울하게 죽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는 큰 손실이며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인 바,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고 사실을 규명하여 구제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한편, 내담자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답변요지

1.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 또는 기각됨을 설명하였다.
2.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관할구청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위원회에는 위 상담과 같이, 피해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주관적인 피해만을 호소하거나, 피진정이 불분명하여 특정할 수 없는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²⁹⁷⁾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특색은 첫째, 사적관계에 의한 피해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라는 주장이 많다는 것, 둘째, 그러나 피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동반하지 않은 비합

I · 인권상담의
현재와 향후
과제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III · 사례 36 · 기타 · 기타

IV · 부록

리·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²⁹⁷). 또한 어떠한 경우에 이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존재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될 때에는 위원회법상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²⁹⁹)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³⁰⁰)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담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센터는 내담자의 주장을 경청하거나 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해결대안을 제시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편, 모든 피해에는 원인이 존재한다. 영화 ‘지구를 지켜라’에서도, 주인공의 특이한 생각과 주장의 이면에 존재하던 피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상담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상담의 경우에도 내담자 주장의 이면에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담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제3의 시선으로 우리를 봤다”

-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감독 -

장준환 감독의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는 한 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독특한 영화다. 외계인으로 확산하는 악덕 기업주(강사장)를 납치해 갇은 고문을 가하는 ‘맛이 간’ 청년(병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의 열개는 언뜻 코믹 판타지를 연상케 하지만, 문명세계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은 화법은 직설적이다. 섬뜩한 캐릭터가 뿜어내는 음울함이 있는가 하면, 정

297)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위원회 출범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상담(진정접수된 상담 및 면진진정신청에 따른 상담 제외) 총7,087건 중 약800여건에 달해, 전체 상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8) 가끔은 내담자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의 비합리성에 내부적 비판과 고뇌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29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0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교하게 배치된 상황들이 폭소를 유발하기도 한다.

코미디와 호러를 넘나들던 영화는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한다. 플래시백으로 처리된 병구의 회상은 그를 미치게 만든 세상과, 이에 대한 감독의 ‘날 선 시선’이 드러난다. “내가 미쳐갈 때 어디 있었느냐”는 병구의 단발마적 비명은 영화의 설정 자체를 뒤흔들긴 하지만 그만큼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장감독은 “내가 교육받았던 바가 진실이 아니며, 세상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데 대한 분노가 있었다”면서 “병구를 통해 한꺼번에 토해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감독은 대학 4학년 때 뒤늦게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졸업 후 ‘영화아카데미’에 입학했다. 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인 단편 ‘2001년 이매진’은 자신이 존 레논의 환생이라고 믿는 소외된 남자의 이야기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그의 애정은 그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다.

(경향신문 2003.04.04일자)



〈영화〉뷰티풀 마인드(Beautiful Mind, A)³⁰¹⁾

1940년대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원에 시험도 보지 않고 장학생으로 입학한 한 천재 존은 기숙사 유리창을 노트 삼아 자신만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찾는 문제에 매달린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미녀를 둘러싼 친구들의 경쟁을 지켜보던 그는 섬광 같은 직관으로 균형이론의 단서를 발견한다. 1949년 27쪽짜리 논문을 발표한 스무 살 청년 존은 하루아침에 학계의 스타로, 제2의 아인슈타인으로 떠오른다.

301) 론 하워드 감독, 미국 Imagine Entertainment 제작, 2002.02.22. 개봉

이후 MIT 교수로 승승장구하며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된 그는 정부 비밀요원을 만나 소련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련 스파이에 의해 존은 끊임없이 감시와 미행을 당하며 목숨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이 하는 일의 비밀을 지킨다.



하지만 영화를 모두 보고나면 이 모든 것이 존의 망상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는 단지 한번의 암호해독만 해준 것일 뿐,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투입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존에게 임무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자와 그의 뒤를 미행하던 자는 존 자신이 만든 가상의 인물이다. 또한 존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잡지와 신문에서 여러 가지 법칙을 조합해서 해독하고 있는 암호는 암호가 아닌 것이다. 한편 존의 이러한 행동에 의심을 품은 아내와 친구들이 그 실체를 파악해보니, 존은 지금까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의 우체통에 수많은 암호 해독 문서를 넣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로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여기서도 존은 자신을 데리러 온 정신병원직원을 소련의 비밀요원으로 착각하게 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대학에서 자신과 함께 방을 같이 쓴 친구와 그의 조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망상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정신병원을 퇴원 후에도 그의 과대망상은 재발되었으나 그의 아내는 서로를 의지하는 사랑을 통해 결국 치료해낸다. 존은 다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스무 살에 완성한 균형이론이 뒤늦게 노벨상을 타게 된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있어서 여기 있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하게 된다.

IV. 부록

1. 인권상담센터 정례 사례연구모임 발표자료
2. 안내기관
3.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절차 흐름도
4. 경로별 상담 및 진정 방법



상담사례연구 모임 발표 자료

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의 법률상담 범위와 한계

들어가며

1. 사례 선정배경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에게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전문상담원의 상담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적인 정보(법적, 제도적 절차 등)를 제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³⁰²⁾ 그러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하는 상담은 그 내용이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해야 할 것이고, 조사대상 밖의 사안의 경우는 최소한 상담 내용에 상담원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법률상담(내용의 당부에 대한 판단까지 요구하는 사례)이나 법률구조(변호사 선임 요청)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물론 적절한 답변의 경우에는 내담자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답변에 약간의 오류라도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담자의 권리구제에 장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대국민 신뢰에도 커다란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302) 『인권상담가이드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P20.

아래에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법률구제절차를 안내하여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안과 법률상담의 한계를 넘어서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상담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을 비교해 보면서, 전문상담원의 법률상담의 적정 범위와 한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사례 내용

(1) 적절한 법률 구제절차 안내로 해결된 사안(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

내담자의 자녀는 ○○시에서 중등과정을 졸업한 육상선수(청소년대표)인데, 가정형편상 장학제도와 기숙사 시설이 우수한 △△시로 이적을 하여 운동에 전념하고자 하였으나, ○○체육회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담자에게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 임시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하도록 권유하였고, 내담자자의 자녀는 이 신청에서 승소하여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³⁰³⁾

(2) 적절한 상담의 한계를 벗어난 사안(사인간의 채권, 채무에 관한 분쟁)

내담자는 사업 중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우리 위원회의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조사대상에 해당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내담자는 다른 법률적 구제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내담자에게 경매의 진행 및 절차, 채권자취소소송의 방법 및 절차, 채권 추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설명을 들은 내담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법률상담 보다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차후에도 법률적 도움을 주기를 요청하였다.

303) 중앙일보 2003.10.09일자 기사 : 2001년 전국육상선수권 여자 1500m에서 우승한 뒤 '제2의 임춘애'로 주목된 선수...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제정한 전국체전 참가 요강 중 자격을 제한한 규정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에 의해 무효"... "다른 시도로 전향한 것을 이유로 전국체전 참가를 제한한 대회 규정은 무효"라며 대한 체육회를 상대로 낸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선수에게 출전 자격이 있다고 결정..

전문상담원의 법률상담의 범위와 한계

1. 관련 법령의 검토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 ①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에관한규칙

제9조(인권상담센터)

- ② 소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다.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제4조(법률구조요건)

위원회가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대하여 피진정인 또는 소속 기관 등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직권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건에 해당되고 구조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는 직권으로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상담”이라 함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진정방법 및 권리구제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타 기관안내 등)

-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전문상담원의 지위와 법률상담의 범위

가. 상담원의 지위와 역할

전문상담원은 형식적으로는 내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정 방법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법적, 제도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정보제공으로부터 내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및 문제해결 중심의 대안모색까지 담당하고 있다.³⁰⁴⁾

304) 인권상담가이드북 제2장 인권상담센터 P.17

그리하여 우리 상담원들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법전을 찾고, 관련 서적 및 판례까지 찾아 가며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업무범위 내 상담과 한계를 넘는 상담의 걱정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애써 진행한 상담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나. 법률상담의 범위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담자에게 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근거로 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조사절차와 방법, 구제절차 진행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인권 침해의 내용 판단은 위원회의 몫이 될 것이다.³⁰⁵⁾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담의 폭은 훨씬 좁아진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다른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적시한 육상선수 이적에 관한 사안에서 민사집행법상 임시지위를정하는가처분 신청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기관과의 도움을 받아 보도록 권유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다. 법률상담의 한계

내담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서 상담원이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내담자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법률상담을 넘어서서 법률 자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민사·형사·행정·헌법 쟁송에 관계없이 내담자들은 그 절차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문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승소여부 판단, 공격·방어의 방법의 제시, 변호사 선임이나 알선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305) 물론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른 기관의 권리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상담및진정접수예관규정 참조

평소에는 합리적인 이성과 냉정한 판단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던 상담원들도 이러한 내담자의 끈질긴 요구를 만나게 되면 법전, 관련서적, 판례까지 찾아내며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떠나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위원회 전문상담원의 소관업무를 벗어나는 것이다. 상기 두 번째 사례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채권 분쟁에서의 구체적 해결 방법 제시나 내용 판단의 설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률상담의 걱정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소결

전문상담원의 모범답안은 단순히 내담자의 문제를 읽어 내고 가능한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공감과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까지 해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공감과 대안의 모색이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한한 공감과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보다 적합한 법률전문기관을 안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가며

1. 전문상담원은 내담자가 요청하는 법률상담의 경우 ①일반화 되어 있는 법령의 객관적 해석과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 ②다른 기관의 법률구조의 절차와 방법의 안내라는 한계 내에서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담자의 구제와 회복, 치유를 지원한다는 상담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법률상담이라는 관점에서는 말이다.
2. 그리고 내담자가 요구하는 법률적 쟁송의 내용 판단(위법여부, 승소여부, 공격방어방법문의)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서설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약간의 오류만으로도 내담자와 인권위 양자 모두에게 치명적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형 실효된 전과자의 인권

- 공선법 제49조 개정안³⁰⁶⁾의 총선출마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

들어가며

1. 사례 선정배경

17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5일 총선시민연대는 공천반대자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전과기록을 유권자에게 공개했다.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의 합법여부는 여전히 법적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낙선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어서 낙선운동은 합법여부와는 별도로 현 정치풍토가 낳은 국민주권실현의 한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나는 총선출마자를 옆에서 보좌하고 있다는 내담자와 대면상담을 하게 되었다. 내담자는 지난 1월 27일 언론에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4년 사업계획, 즉 “유권자의 각 가정으로 후보자들의 신상자료를 배달한다”는 내용이 총선출마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담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개정안이 오는 19일과 23일 사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선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이 크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형 실효된 전과자의 인권을 고려치 않는 위헌적인 조항이 될 것임을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위 사례 외에도 나는 지난 한달 동안 형 집행종료된, 또는 형 실효된 전과자의 인권과 관련, 총 2건의 상담을 더 받은 바 있다. 이후 소개될 <사례1>은 전과자의 기록 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주장이고, <사례2>는 과실로 인한 금고이상의 범죄를

30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에 후보자등록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증빙서류(실효된 형을 포함한 “전과기록”)를 제출했던 것을 17대 총선부터 벌금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저지른 자가 형 집행종료 후 영업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받는 법적 모순을 지적했다.

형 집행이 종료된, 또는 형 실효된 전과자의 기록을 조회하고 필요에 따라 회보하는 것은 과연 합법적이며,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가? 한편, 총선출마자들의 신상자료(벌금이상의 범죄경력 포함)를 각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인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사례3)처럼 공직에 출마하려는 자와 같이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형 실효된 전과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상담사례 내용

<사례 1>

내담자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를 인정하는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사회복귀를 시도하는 전과자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과거전과경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의 조회자체를 더욱 제한하도록 우리 위원회가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례 2>

내담자는 공인중개사로 생활하다가, 다른 일로 인해 20개월간 징역을 살다가 가출옥되었다. 내담자는 생계를 위해 공인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나 ‘부동산중개업법’³⁰⁷⁾에 따라 중개업자 결격사유에 해당, 공인중개업을 3년 동안 할 수 없게 되었다. 내담자는 부동산

307) 제7조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의 법인의 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지산자 또는 한정재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련 범죄로 형을 산 것이 아니고, 현재는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해당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담자는 해당법령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례 3〉

내담자는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개정안(벌금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증빙서류를 제출)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17대 총선출마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내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후보자들의 신상자료를 배포하겠다는 계획 역시,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시정권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쟁점 및 관계법령 검토

1. 전과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위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

〈사례1〉에서 내담자의 주장처럼 형 실효된 전과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위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신원조사제도 관련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공무수행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회보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1)의 내담자가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는 현행법상 위법한 것이 아님을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308) 309)}

308)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 질서유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09)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

① 범죄의 수사와 재판 외에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또한, 〈사례1〉과 〈사례3〉 내담자가 모두 공직자가 될 경우에 전과기록조회가 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1,4,5호에 의해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임용예상자와 같이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일수록 신원조사제도가 더욱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³¹⁰⁾

그러나 공공의 복리를 위한다는 전제하에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의 신원조사제도 적용은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례1〉 내담자의 주장처럼 사회복귀를 시도하는 전과자들이 범죄경력이 족쇄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인권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공무원도 되지 말란 말이나? 누구든 과오를 저지를 수 있으며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형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죄 값을 다 치룬 것이다”라고 내담자는 주장한다.

한편 우리 위원회의 최근 결정사례에는 사면복권된 전과기록에 대해 신원회보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복권된 범죄경력에 그 종류에 관계없이 신원조사 회보대상에서 제외토록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³¹¹⁾

310) 보안업무규정 제31조

-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임용예상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 · 장비 및 자재 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31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관련 우리 위원회 의결 사례

진정인은 “대학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약 1년 뒤 특별사면, 복권된 사실이 있으나 2년 뒤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조사 결과 과거전과가 밝혀져 교원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내용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헌법 제11조에 정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며, 국가정보원장 등이 신원조사회보서에 사면, 복권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통보하도록 한 관행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정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 추후에는 신원조사제도 운영에 있어 사면, 복권된 범죄전과를 그 종류에 관계없이 신원조사 회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 공직출마자³¹²⁾의 실효된 전과 조회 및 신상공개, 그 위법성 및 인권침해 여부

현행(2004년 2월) 공선법 제49조³¹³⁾는 후보자 등록시 등록재산 및 병역사항 등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9조³¹⁴⁾는 출마자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회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례3〉의 내담자는 “벌금이상 형의 전과기록, 특히 형이 실효된 수십 년 전의 사소한 과실까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회보하는 것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들이 가능한 근거는 “특수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신분관계” 또는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특별한 공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개인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그 개인이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국가공무원의 자격으로서의 국가의 특별한 권력에 복종해야 하므로 거기에 따르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일부가 제약받는 경우가 있다.³¹⁵⁾

312)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

3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후보자 등록 등)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기탁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후보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당해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자인 경우에는 그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
5.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3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9조 (후보자 등록 등) 제5항

10.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11.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 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315) 11)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2001

헌법 제37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제한으로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하여 양자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을 의미, 이것을 “비례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또는 “최소한 제한의 원칙”이라고 한다.³¹⁶⁾

이 같은 취지로 볼 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공선법 제29조 개정안은 피선거권보다 선거권자의 권리 측면을 한층 더 고려한 법개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발표한 각 가정으로 총선출마자의 신상공개³¹⁷⁾자료를 배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인권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후보자신상공개와 관련한 문제를 이미 지난 총선부터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검찰의 협조를 받아 후보들의 금고이상의 전과 등을 모두 공개했다. 또한 아래 판례를 통해 볼 때, 대법원 역시 공익적 차원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판례〉

개인이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의 전과를 공표한 사건, 공직선거입후보자의 유죄 확정판결의 전과사실이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인지 여부와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방 후보의 전과를 공개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된다…

316) 개인의 사생활보호 및 인격권보호의 필요성이 현대사회에 올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법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나 실제로는 형사제재의 성격이 짙다는 견해가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상공개는 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현 시기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한 조치이나 차후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한시적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317) 개인의 사생활보호 및 인격권보호의 필요성이 현대사회에 올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법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나 실제로는 형사제재의 성격이 짙다는 견해가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상공개는 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현 시기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한 조치이나 차후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한시적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공직후보자의 전과사실은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본다. 전과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상대 후보가 입는 명예의 침해 정도와 만일 이를 금지할 경우 생기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에 대한 장애의 정도를 교량한다면 후자가 전자보다 중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된다.(대법 1996.6.28. 선고 96도 977)

나오며

일본의 판례 중에는 범죄자의 사회갱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자가 사회에서 갱생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자의 전과를 공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³¹⁸⁾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공익적 차원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범죄자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본다며, 모든 경우의 전과기록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며 개인의 명예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과제이다.

〈참고자료〉

이재상,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200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2진차47)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원임용 차별”
 국민일보, “시민운동과 총선” (2004년 2월 11일자 보도)
 경향신문, “유권자운동 맥 바로 짚어주길” (2004년 2월 11일자 보도)
 한겨레, “낙선운동과 국민주권” (2004년 2월 11일자 보도)

318) 이재상,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인터넷 실명제의 인권침해 여부

들어가며

1. 사례 선정배경

17대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올해 선거는 고비용과 상호비방이 없는 선거를 표방하며 여러 선거운동방법이 바뀌었다. 이런 정치관계법의 개정 중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실명제”이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도 의견표명을 하였고, 현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의해 헌법소원도 제기 중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공선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인터넷주소 자원관리법”의 개정안³¹⁹⁾을 국회에 상정하여 내년부터 공공기관이나 포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만일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부터 살펴본 후, 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상담사례 내용

내담자는 현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의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고, 정보도 사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비방목적이 아닌 인터넷 사용자들까지 미리 범죄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영장 없이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영장주의 위배이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비밀투표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319) 이 안에 따르면 각 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또 대형포털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민간업체의 게시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

1.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규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①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④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이용자 식별번호를 말한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261조(과태료)

- ①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란 게시판 상에 글을 올리기에 앞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게시판 운영자로부터 먼저 신원을 확인받되, 실제 게시판 상에는 자신이 원하는 가명, 필명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미 회원가입 단계에서 실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게시판을 이용할 때마다 실명을 확인받을 필요없이 자신의 ID만을 입력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찬반견해

가. 찬성견해

- 1) 인터넷 게시판이 욕설과 근거없는 비방의 온상이 되는 것은 익명성의 폐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인터넷은 의사표현의 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사적 공간은 아니며, 공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공개된 토론마당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현행 공선법의 개정이 있었고, 오프라인상의 후보 비방과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을 규제하듯이 온라인상에서도 익명성 뒤에 숨어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인터넷 실명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수집이 어려워 처벌에 한계가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정보통신부에서 2002.8.부터 게시판 실명제를 운영한 결과 명예훼손, 상업적 광고, 특정인에 의한 글도배 등이 69%에서 2.1%로 크게 줄었고, 이용자 수는 실명제 시행 전보다 오히려 30%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정책제안, 비판의 통로역할을 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실명확인제를 확산하여 게시판의 익명으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³²⁰⁾

320) 정보통신부

2)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국내 포털의 80%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은 실명인증을 위해 현재 상거래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개되지 않았던 행자부의 주민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실명인증의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또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매체의 공익성 때문이다. 또한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근거 없는 비방 등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공간도 공적공간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차명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을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없으나, 이것은 사이버 수사대의 추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그리고 인증센터에서 실명인증 후 이름, 주민번호를 암호화하면 인터넷 언론사는 암호화된 정보만 갖게 되고 이를 풀 수 없어 누출의 위험도 막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되어야 한다.³²¹⁾

나. 반대견해 ³²²⁾

1) 표현의 자유침해(헌법 제21조): “선거계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가 확인되어야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견과 정보의 발표, 전파 또는 수령을 억제하여 개인의 정신세계를 감시하고 여론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사전검열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어, 공선법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한편 진정한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며,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내부자고발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사생활의 자유 침해(헌법 제17조) :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이러한 개인정보는 한번의 유출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

321) 한나라당 원희룡 국회의원

322)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

게 오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03년 1년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이버범죄는 약65%증가했고,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의 1년간 개인정보침해유형 통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인터넷 언론사’라는 곳이 모두 엄격하게 자기정보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개인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 : 현재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즉각적 실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청소년,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자,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자 등은 인터넷에 글쓰기를 할 수 없게 되어 합리적 이유없이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차별받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4) 명확성의 원칙 위배(헌법 제37조 제2항) : 공선법상의 인터넷 언론사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의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의견’이라는 개념도 모호하기 그지없어 일반 ‘의견계시판’에 이용자들이 와서 선거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와 때때로 있는 보궐선거 시는 어떻게 실명제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5) 과잉금지원칙의 위배(헌법 제37조 제2항) :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목적은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악의적인 허위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자의 처벌때문인데, 이들은 보통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명제를 통하여 악의적인 범죄를 적발하는데 무력하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그 언론사에 의견게시를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만 낳아 수단적합성이 없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체계에서 사후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균형성도 없어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다.

4. 각 정당의 입장

(1) 한나라당

익명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침해, 여론조작 등이 상당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

(2) 열린우리당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따라서 실명제는 도입하되 전자서명에 의한 방법이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확인절차는 반대하고, 이는 글쓰기를 위한 회원가입만으로 충분하다.

(3) 민주당

인터넷 자유게시판 전반에 대해서 실명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반대이고, 선거시기에 국한해서 정치적 사이트에 한해서만 실명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

(4) 민주노동당

익명은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자체를 반대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선거게시판에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모든 국민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나.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 여부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 헌법 제37조 위반 여부

인터넷 실명제의 목적이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방지하고 선거범죄를 억지하는데 있다 할지라도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구별해 낼 수 없어 기본권제한의 원칙인 도입목적의 적합성에 부합되지 않고, 불법적인 정보게시와 유통에 대해서는 현행의 법체계로서 사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적으로 네티즌 신원을 확인할 방식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며, 실명인증제를 도입해야 하는 대상도 특정 인터넷 언론사만이 아니라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나 개인 등 선거게시판을 운영하는 광범위한 다수로서 그 정의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는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

나오며

최근 경찰은 탄핵정국 이후 정치권을 비판하는 네티즌의 패러디물을 수사하고, 패러디작가를 긴급체포하였으며, 인터넷 미디어 “미디어몹”편집장을 소환 수사하고, “민중의 소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였다. 불과 2년 전에는 인터넷 언론사가 대선후보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자 정간법상 등록된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물리력까지 동원해가면서 막았으면서, 현재는 대중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신문은 물론이요 주요 포털사이트와 블로그사이트³²³⁾까지 언론사의 범위로 정하고 게시판 실명제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들에게는 후보자들의 토론이나 정치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323) 개인들이 웹사이트를 열어 글을 올리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답글을 달고, 평을 하고, 인용을 하면서 인터넷의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올해는 행자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보도되었는데, 인터넷 업체가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정 시한인 4월 8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³²⁴⁾.

또한 설혹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미성년자,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자 등은 신용정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글조차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찬성론자들이 이야기하듯 현재 포털사이트의 80%가 회원제 게시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를 왜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324) 중선위는 4.12.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위한 전산망 준비 부족, 실명제 적용대상과 비대상 인터넷 언론사 간의 형평성 등을 들어 “17대 총선거간에는 인터넷 실명제 위반 매체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조선족)의 국내법상 법적지위

-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

들어가며

중국의 동북 지역에는 약200만명 가까운 중국동포가 살고 있다. 특히 자치주로 분류된 연변지역에는 많은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곳에 있는 대부분의 동포는 1930-40년대 정치, 경제적 이유로 대거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황무지를 개척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중국 동포 사회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³²⁵⁾ 이렇게 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 동포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동안 이들은 중국과 한국의 중간지대에 서있는 자들로서 각종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왔다.

우리 역시 이들의 상담을 종종 받게 된다. 그런데, 상담과정에서 이들의 주장은 많은 경우 법적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로 인해 지나칠 때가 있다. 물론 우리가 법적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이러한 지식을 제공할만한 시민단체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어디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보호받고 있는 범위와 수준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에 여기서는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법적 기초지식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다.

325)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교수 홈페이지, http://dhseol.com.ne.kr/activity/in2001_11.html.

상담사례요약

1. 국적취득과 관련한 사례

내담자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만나 1999.9.17. 혼인하여 중국에서 살던 중 2000년 3월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2001년 3월까지 남편과 함께 살았음. 그러나 남편의 정신질환과 폭행이 심하여 이후 별거하게 되었음. 그러다보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3년째 불법체류자로 있게 되었음. 내담자의 아버지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사망하였고 지금까지 호적을 찾지는 못했음.

내담자는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도와주기를 요청함.

2.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사례

내담자는 중국동포로서 1996년 3월 30일 입국하였으나, 이후 체류기간도과로 현재는 불법체류자임.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던 내담자는 2004년 7월 6일 일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2004년 7월 7일 출입국 관리소에 수용되었음.

한편 내담자와 한국에서 만나 혼인한 내담자의 부인은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자로서 현재 합법체류자임. 그런데 현재 내담자의 부인은 자궁암이 발병하였고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남편인 내담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 퇴거될지 몰라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03년에 내담자의 부인이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무보험으로), 자궁암을 수술 받을 돈이 없음.

내담자는 부인의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제퇴거지연, 교통사고의 피해보상(보상금으로 수술을 받으려 함) 및 적당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도와줄것을 요청함.

3. 사례의 쟁점 및 해결방법 존재 여부

가.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내담자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였다가 남편의 구타 등으로 인해 도망하였다는 주장과 내담자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주장은 모두 이를 위한 근거들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상황에서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아래 Ⅲ과 Ⅳ에서는 국적법을 검토하여, 이 내담자의 국적취득이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하겠다.

나.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내담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담자의 부인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크게 내담자의 강제퇴거지연과 수술비 충당으로 나뉘어 진다. 내담자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므로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내담자는 현실적으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아니하며, 소송도중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술비와 관련해 내담자의 부인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아래 Ⅴ와 Ⅵ에서는 재외동포법을 검토하여, 이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내국인과 외국인(국적취득방법)

우리나라 국적법은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근거에 의해 1948년 12월 20일 제정되었다. 이 국적법이 제정된 시기는 이후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

국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i)혈통을 중시하여 (출생 장소-국내외-를 불문하고) 자동

적으로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는 혈통주의와 ii)출생한 영토를 국적결정의 결정적 기준으로 보는 출생지주의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것을 채용하고 있다.

국적법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라고 하여 혈통주의를 우선하고 있고, 또한『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라고 하여 출생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상기 법 조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국적취득과 관련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1997년 개정법에서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변경하였다.

2. 출생에 의하지 않는 국적취득

가. 부모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우리나라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또는 국민이었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미성년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3)라고 하여 부모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법 제4조 내지 제8조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한다.³²⁶⁾ 우리나라에 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3가지로 대별된다(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326) 국적법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일정한 거주기간, 연령, 행위능력, 품행단정, 생계능력, 언어요건 등을 과하고 있고, 간이귀화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 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별귀화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귀화가 인정된다.

1) 일반귀화 요건(국적법 제5조)

-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② 성년자일 것,
- ③ 품행이 단정한 자일 것,
-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2) 간이귀화 요건(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란 일반적인 관계 이상의 애착관계가 있을 때는 일반귀화요건 중 상당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 ① 그 애착관계에 대해 우리나라는
 - i)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子)
 - ii)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iii)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입양된 성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귀화요건 5가지 중 거주기간 '5년 이상'의 요건을 '3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있다(국적법 제6조 1항).

- ② 우리나라 국적법은 혼인을 직접적인 국적취득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³²⁷⁾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이귀화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야 한다.
 - i)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는 일반귀화요건 5가지 중 '거주기간 5년 이상'의 요건을 '거주기간 2년 이상'으로 단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만일 거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

327) 양성평등주의를 표방하며 전면적인 개정이 가해진 1997년 12월 이후 국적법에서는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성에게 혼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적취득을 시켜주던 규정을 폐지하고,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남녀구분없이 일정기간의 국내거주자에 한해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통해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만 인 경우에도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귀화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ii) 2004년 1월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상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도 귀화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³²⁸⁾

그 첫째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때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폭행, 유기, 실종 등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이다. 미성년의 자는 대한민국 국민을 부 또는 모로 하여 태어난 자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제6조 2항).

3) 특별귀화 요건(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는 귀화에 필요한 요건 모두를 면제하여 바로 귀화케 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 i)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입양된 미성년자 및
- ii)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

4) 수반취득 요건(국적법 제8조)

일반적으로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한 유형으로 보는 수반취득을 우리나라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인 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귀화가 허가된 때’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3.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우리나라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제9조).

328) 위장결혼에 의한 국적취득을 막기 위해 둔 제한규정으로 인해 배우자의 책임으로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국적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같은 규정을 배우자가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기에 2004년 1월 국적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국적법상 중국동포의 법적지위

1. 우리나라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우리나라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국적취득요건)을 제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을 어느 시점부터 볼 것인가의 범위’는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다. 즉 국적법이 만들어진 1948년 12월 20일 이후 출생한 자 및 그 이전에 출생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 보장되나, 그 이전에 출생하여 외국으로 이주한 자(ex. 조선, 대한제국, 일제치하에서 태어나 외국으로 이주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는 국적법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최초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어디부터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³²⁹⁾

이로 인해 우리 국적법은 ‘외국의 韓人’ (해외동포)에 대해 국적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들에 대해 국적을 인정해 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³³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가. 이전의 통상적인 해석에 의하면 국적법상 대한민국이란 1948년 8월 15일 이후 수립된 정부를 일컫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조선, 대한제국, 일제치하, 미군정기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부터 국외로 이주한 자와 그 직계비속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과거 일제시대에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조선족)들은 단지 중국인에 해당될 뿐,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귀화에 의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만이 존재하였다.

329)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2호』, 1996년 12월, p53-56.

330) 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p56-57.

나.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남북간의 특수한 상황 및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을 고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 서독의 경우 기본법 제116조 1항에서 “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기본법의 의미에 포함된 독일인은 독일국적을 소유하고 있거나, 독일혈통의 난민이나 박해자로서 1937년 12월 31일 당시 독일영토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하여, 독일인의 최초 범위를 서독정부 수립 이전에 출생하여 외국으로 이주한 자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³¹⁾

다. 한편, 이러한 견해와 달리, 정부수립 이전에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로 이주한 자들은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은 아래 ‘재외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재외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

법무부에서는 다양한 해석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중국동포의 국적문제에 대해 법을 명확히 개정하는 방법(ex. 국적경과규정삽입) 대신 정책(훈령제정)을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 2004년 4월 1일 새로 시행된 재외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³³²⁾

가. 국적회복허가신청 대상자

우선 중국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중국정부 수립 이전에 출생한 자는 출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1949년 10월 1일부터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 대상이 된다. 또한 1949년 10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라도 한국에서 출생한 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국적을 취득한 동포 1세의 경우에도 국적회복 대상이 된다.

331) 이장희, 전거서 p59-60.

332) <http://www.moj.go.kr>

나. 귀화허가신청 대상자

중국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출생당시 이미 부모의 국적이 중국인이었으므로 이들의 경우 국적회복대상이 아니라 귀화대상이 된다.

1) 특별귀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대상이 되어 국적회복을 한 경우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므로 국내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특별귀화’ 대상이 된다(부 또는 모의 국적회복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국적회복을 전제로 특별귀화 대상이 됨)(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2) 간이귀화

부 또는 모가 사망하고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호적 등³³³⁾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되므로 3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간이귀화’ 대상이 된다(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

3) 일반귀화

자신이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호적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5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귀화’ 대상이 된다. 이는 일반 외국인이 귀화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4)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중국동포로서 한국인과 혼인한 사람은 2년의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간이귀화(일명 혼인귀화)’의 대상으로 된다(국적법 제6조 2항).

다. 수반취득

신청인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신청서에 그 취지를 표시하면 신청인에 대한 국적취득허가와 동시에 국적취득을 할 수 있다.

333) 호적에 부, 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이 등재되어 있고, 그 사람과의 혈족관계가 족보, 인우보증서, 소속국가의 공증서류, 유전자감식 등으로 입증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재외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본 법무부의 입장

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느 시점으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법무부 포함)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국이나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항상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4년 4월 1일 시행된 처리지침 역시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만 발표되었을 뿐, 국적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개정은 추진되지 않았다.

나. 현 지침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제헌헌법 공포 이전에 출생한 자들을 ‘국적에 관한입시조례(1948.5.1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에 의해 ‘조선 국적 취득자’³³⁴⁾로 보고 있으며, 이렇게 상기 조례에 의해 ‘조선’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제헌헌법 공포 이후에 출생한 자들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 판례³³⁵⁾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제헌헌법 공포 이전에 조선에서 출생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 부모의 자(子)로 출생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이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내 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됨에 따라 자동적으로(강제적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중국적자가 되었다. 우리 국적법상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³³⁶⁾가 있으므로 소정의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중국동포(조선족)들은 대한민국의 국적

334) 국적에관한입시조례 제2조 제1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

335) 대법원 1996.11.12. 96누122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336) 국적법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①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을 상실하게 되었다³³⁷⁾.

따라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중국국적을 취득한 자들이므로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제9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판례³³⁸⁾가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입장을 법무부에서 정책(지침)으로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지 않고, 지침(정책)의 형태로만 받아들인 이유는 논리의 일관성이나 법적 안정성보다 실질적·실리적 입장을 중요시함으로써 중국동포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따라서 바뀌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동포의 경우 이중국적자가 된 이유는 본인의 자의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여타의 이중국적자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국적법 제12조)’ 및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국적법 제13조)’ 등은 ‘본인의 자의적 선택에 따른 이중국적’ 일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이다.

337) 국적법 부칙 <제5431호.1997.12.13> 제5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라고 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도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다.

338) 서울행정법원 1998.12.23. 98구17882. 『원고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함께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제헌헌법에 따라 1948.12.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된 국적법은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국적은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나아가 1997.12.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된 현행 국적법 제12조는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외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가능 여부 및 방법³³⁹⁾

출생일	분 류	대 상	합 법 체 류		불 법 체 류
			국적취득가능성	취득방법	
1949.10.1. 이전출생자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호적 있음)	본인	可	국적회복	可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可
		만20세 이상 성년 자녀	可	특별귀화	미혼자녀만 可
		성년 자녀의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미성년자녀	可	수반취득	
			可	특별귀화	
	중국에서 태어났으나 본인 호적이 있는 경우	본인	可	국적회복	可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可
		만20세 이상 성년 자녀	可	특별귀화	미성년자녀 可
		성년 자녀의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미성년자녀	可	수반취득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거나 한국에 4촌이 생존하는 경우	본인	可	국적회복	不可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不可
		만20세 이상 성년 자녀	可	특별귀화	不可
		성년 자녀의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不可
		미성년자녀	可	수반취득	不可
	호적이 없는 경우	본인	5년간합법체류후 可	일반귀화	不可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不可
		만20세 이상 성년 자녀	부모는모의일반귀화시 可	특별귀화	不可
		성년 자녀의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不可
		미성년자녀	부모는모의일반귀화시 可	수반취득	不可

339) 동북아신문 http://211.172.225.112:8088/we_assertion/in_korea_book.asp 편집

출생일	분 류	대 상	합 법 체 류		불 법 체 류
			국적취득가능성	취득방법	
1949.10.1. 이후출생자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호적 있음)	본인	可	국적귀화	可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可
		만20세 이상 성년 자녀	可	특별귀화	미혼자녀만 可
		성년 자녀의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미성년자녀	可	수반취득	
			可	특별귀화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거나 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	可	특별귀화	미혼경우만 可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만20세 이상 성년 자녀	부모는모의특별귀화시 可	특별귀화	不可
		성년 자녀의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不可
		미성년자녀	부모는모의특별귀화시 可	수반취득	不可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거나 한국에 4촌이 생존하는 경우	본인	3년간 합법체류후 가능	간이귀화	不可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不可
		만20세 이상 성년 자녀	부모는모의간이귀화시 可	특별귀화	不可
		성년 자녀의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不可
		미성년자녀	부모는모의간이귀화시 可	수반취득	不可
	호적이 없는 경우	본인	5년간 합법체류후 可	일반귀화	不可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不可
		만20세 이상 성년 자녀	부모는모의일반귀화시 可	특별귀화	不可
		성년 자녀의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不可
		미성년자녀	부모는모의일반귀화시 可	수반취득	不可
	정상적인 혼인	본인	합법적으로혼인생활후 可	혼인귀화	호적있는경우 可
		중국의 성년자녀	부모는모의혼인귀화시 可	특별귀화	불가
		중국의 성년자녀의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불가
중국에 있는 미성년자녀		부모는모의혼인귀화시 可	입양	불가	
혼인중단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본인	可	혼인중단귀화	가능
	중국의 성년자녀	부모는모의귀화시 可	특별귀화	불가	
	중국의 성년자녀의 배우자	可(동반신청)	혼인귀화	불가	
	중국에 있는 미성년자녀	부모는모의귀화시 可	입양	불가	
	기 타	입 양		可	입양
독립유공자후손			可	독립유공자	상당필요

I · 인권상담의 현재와 향후 과제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III ·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IV · 부록 · 상담사례연구모임 발표자료 4

V.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등장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제정배경

재외동포법은 김대중정부시절인 1998년, 법무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반부터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인가³⁴⁰⁾’라는 문제와 함께 계속되어 온 오래된 사안이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5조)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이민 1세대의 경우,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들이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출입국을 비롯한 한국 내 대부분의 활동에서 보통의 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이 자신을 완전한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들은 비록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자신은 한민족이기에 대한민국 역시 자신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정치상황에서도 이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었다.³⁴¹⁾ 이리

340) <이중국적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

“재외동포용-법과 생활”, 대한민국 법무부, p25.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멕시코 등 중남미를 비롯해 많은 서방국가가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친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이중국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나라들도 이중국적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자국내에서의 장기체류나 토지보유, 기업활동에 있어 다른 외국인에 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엄연히 외국의 국민이 된 자에게 자국의 국민으로 계속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중국적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

석동현, “국적법 연구”, 도서출판 동강. 『이중국적 허용을 통해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외이민을 신장시킬 수 있고, 외국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의 경감으로 재외국민들의 거주 국내 정착 및 동화를 촉진하여 집단적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 모국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한국계 외국인 우수인력의 국내활용 및 재외동포 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의 국가적 사회적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자국 국민(시민권자)이나 아니냐만을 주목할 뿐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삼지 아니하되, 그 사람의 행태가 자국의 이익과 충돌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국적관계를 문제시함으로써 이중국적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주류적인 경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341) 정인섭, “재외동포법-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 사람생각, p12. 『한국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재외동포의 지원은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요구에 일정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이유 등으로 다른 외국인과 구별되는 외국국적동포의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8월 1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2.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중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³⁴²⁾ (재외동포법 제2조,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³⁴³⁾.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가 재외동포법에 의해 보호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에 해당할지라도 보통의 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3. 재외동포법의 주요 내용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자격 부여

1)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체류자격(F-4)이라는 특별한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있다(재외동포법 제5조). 재외동포가 사증 F-4를 신청하여³⁴⁴⁾ 발급받게 되면, 우선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보장되고, 그 연장도 가능하다(재외동포법 제10조1,2항)

또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342) 즉, i)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시행령제2조1항) 및 ii)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취업·혼인 등으로 인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시행령제2조제2항)를 의미한다.

343) 즉, i)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시행령 §3 i) 및 ii)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시행령 §3 ii)을 의미한다.

344)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은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한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에는 재입국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허가없이 대한민국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재외동포법 제10조3항).

2) 다만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재외동포법 제6조1항).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재외동포법 제7조 1항), 이 것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³⁴⁵⁾

(2)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1)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재외동포법 제10조5항).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ex. 의사, 변호사). 또한 이 외에도 재외동포의 경우 제한되는 취업활동이 있는데, 첫째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³⁴⁶⁾, 둘째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³⁴⁷⁾, 셋째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기타 직업의 특성상 특별법에 의해 재외동포의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이 있다(ex. 경찰, 군인 등³⁴⁸⁾).

345) 재외동포법 제9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46) 여기서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7의2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이란 i) 세탁 및 다림질 ii) 아파트, 호텔, 사무실 및 기타 건물 관리, 수위 및 재산감시 iii) 문서송달, 제품분류, 상품패달, 상품포장, 수하물운반 iv) 창 및 기타 건물내부의 유리표면 청소, 쓰레기 수거 v) 간단한 영농, 어업 및 수렵 등을 말한다. (http://152.99.129.57/labor/search/4_insertMain3.htm).
347) “재외동포용-법과 생활”, 대한민국 법무부, p42. 『선량한 풍속 위반 행위란,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종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48)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1호, 군인사법 제10조2항1호

2)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취업자유와 함께 부동산거래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신고만으로 모든 토지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재외동포법 제11조).

과거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1998년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존구역 등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당국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내 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다른 외국인과 달리 토지취득에서 유리한 것은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생태계 보존구역을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구별되고 있다.

3)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신탁예금 등의 가입이 금지되었으나,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였다. 다만, 외국의 hot money(단기투기자금)의 유입 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규제장치³⁴⁹⁾에 의한 제한은 계속 적용된다(재외동포법 제12조).

또한 재외동포는 본인명의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재외동포법 제13조 제1호). 다만 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의 반출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 결과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과 비교할 때 재외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국민도 외국인과 동등한 조건하에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재외동포법 제13조 제2호).

349) 외국환거래법 제18조

I · 인권상담의 과정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III ·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IV · 부록 · 상담사례 연구모임 자료 4

다. 재외동포의 복지

1) 의료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안에 체류하는 때에는 의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재외동포법§14). 그러나 이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강제가입과 달리 원하는 자의 신청에 의한 가입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 이외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의 경우³⁵⁰⁾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

- ①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동포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³⁵¹⁾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도 일정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상호주의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³⁵²⁾.
- ② 과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의 수령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일정기간의 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연금수령권이 상실되었다³⁵³⁾. 그러나 2000년 12월 30일의 법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 등에 규정되어 있던 국적상실시 연금 수령권 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350) 재외동포 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자격(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45①에 따른 별표)
 ①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1년이상 체류할 자 및 그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F-3)
 ②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재외동포(F-4)
 ③ 거주(F-2)자격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자
 351) “재외동포용-법과 생활”, 대한민국 법무부, p53. 『통상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는 경우라고 해석한다.』
 352) “재외동포용-법과 생활”, 대한민국 법무부, p54.
 353) 구 공무원연금법§64④ 등

3)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외동포는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 학설대립³⁵⁴⁾이 있었으나, 판례³⁵⁵⁾는『고용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 국내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舊출입국관리법의 각 규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은 유효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재외동포법의 개정

개정 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개정 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54) 강주원,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 경영계 1994년 354) 월호, 한국경영자총연합회, p40.
 355) 서울고등법원 1993.11.26. 93구16774.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³⁵⁶⁾와 그 직계비속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 (1)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은 ‘재외국민’ 과 ‘외국국적동포’ 로 나뉘어 지는데, 문제는 이 법 및 시행령에서 말하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있었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 측은 재외동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찾기 어려운 반면, 아일랜드, 그리스, 폴란드 등은 과거 국적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적 동포에게 출입국에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해외동포 중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200만 중국동포(조선족) 및 50만으로 추산되는 독립국가연합 거주 동포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었다.³⁵⁷⁾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대부분의 중국 거주 동포(소위 조선족)은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이들은 이 법이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이러한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과 같은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 취급은 그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 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³⁵⁸⁾을 하였다.

356) 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라 함은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8.12. p4-5.

3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11.29. 99헌마494.

2. 재외동포법 폐지 또는 개정 논의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학계에서는 이 기회에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개별법률을 개정하자는 주장과 재외동포법을 존치시키되 그 보호범위를 확대개정하자는 주장이 존재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낸바 있기에, 여기서는 이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가. 재외동포법 폐지 및 개별법률 개정 주장

우리 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논의에 대해『재외동포법으로 인한 각종 특별대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대우를 정하는 내용으로서 특정 외국인에 대한 혜택 부여는 내정간섭이라는 외교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인종을 바탕으로 한 차별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이 법안에 따른 재외동포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며 위헌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재외동포법의 확대적용(혈통주의입법)에 반대하는 입장³⁵⁹⁾을 국회에 표명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정인섭 교수는 i) 외국적의 한민족이 다른 외국인에 비하여 한국사회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온 것은 아니므로 재외동포법의 내용은 정당화하기가 어렵고, ii) 한민족에 대한 우대가 인권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국제규범의 허용범위 내지는 국제규범이 목표로 하는 방향 속에서 개별 국내법을 정비하여 필요한 실질적 혜택을 주는 쪽으로 노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재외동포법의 확대 적용(개정) 주장

상기 (1)과 같은 주장에 대해, 동포와 비동포를 구별하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차이를 두는 재외동포법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 아니고, 재외동포법이 국적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간의 차이를 두는 것도 정당하며, 아울러 일부만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359) 국가인권위원회, 재외동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2.2.
http://www.humanrights.go.kr/nhrc/news/nhrc02_02_view.jsp

것이아말로 차별, 곧 국제인권규약의 평등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³⁶⁰⁾

3. 재외동포법의 개정

가. 개정 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1) 재외국민은 개정법률에서도 구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정법률에서 변경된 것은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로서,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재외동포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 국적 동포들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의 범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 불분명한 해석과 불분명한 법 적용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중국동포들은 2004년 5월 11일 및 28일, 우리 위원회에 집단진정

360) 이종훈, “재외동포법-재외동포법 개정론과 폐지론의 합리성 검토”, 사람생각, p57-58.

제기하기도 하였다³⁶¹⁾.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후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동포(조선족) 역시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마치며

중국동포의 한국행 흐름은 이미 동포사회의 흐름으로 굳어진지 오래다. 우리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는가와 무관하게, 5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임금체계의 현실에서는 그들의 입국을 봉쇄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핏줄을 가진 동포만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나라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민족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중국동포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유입이 우리나라 3D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 경제논리가 아니라, 그들은 재미·재일동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동포라는 것을 전제하고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 동포와 마찬가지로 자유왕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순분자 유입 가능성 확대 및 국내 저소득층 보호’라는 법무부의 반대 입장이 오직 중국동포에게만 높은 출입국 장벽을 유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내 저소득층 보호 방법은 다른 정책을 통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 저소득층이 취업할 수 있는 저소득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동포와 관련한 정책 중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중국 내 동포사회가 해체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정부의 중국동포에

361)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no=168192&rel_no=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033938§ion_id=001&menu_id=001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은 이후 모두 각하되었다.

대한 정책이 동포사회의 해체를 통한 우리나라 유입이 아닌 이상, 현지 동포의 경제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통일의 장기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³⁶²⁾

마지막으로 중국동포의 문제와 더불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 있다.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을 다른 외국인과 달리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이다. 이는 우리 위원회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종을 바탕으로 한 차별대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자발급을 포함해 출입국과 관련하여 중국동포가 다른 외국국적 동포와 차별을 받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취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내의 일상생활에 있어 다른 민족 외국인이 외국국적 동포와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의 대한민국 내 지위(출입국관리법과 산업연수제 및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문총 1996.12.
 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석동현, 국적법 연구, 도서출판 동강.
 정인섭, 재외동포법, 사람생각.
 재외동포용-법과생활, 법무부, 2003.
 강주원,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 경영계 1994.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8.12.
 국가인권위원회, 재외동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2002.02.
 설동훈(전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홈페이지, http://dhseol.com.ne.kr/activity/in2001_11.html.
 동북아신문 홈페이지
 오마이뉴스, 2004.5.23.
 세계일보, 2004.5.29.

362)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교수 홈페이지, http://dhseol.com.ne.kr/activity/in2001_11.html.

안내 기관

무료법률상담

단체명	연락처	상담방법	상담분야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방문, 전화, 서신, 인터넷	국가 상대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형사·가사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서울지검 내 : 02-536-5577 동부출장소 : 02-453-5888 남부출장소 : 02-2648-5966		북부출장소 : 02-972-1765 서부출장소 : 02-713-6009 의정부출장소 : 031-874-0100
대한변호사협회 무료 법률상담	02-3476-4006	방문상담 (전화불가)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
서울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소	02-3476-0986	방문 (전화불가)	민사·형사·가사·상사·행정 등 법률전반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02-3476-8080		긴급체포, 연행, 구속 등에 대한 형사 무료법률상담
서울시청상담실	02-731-6239	방문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등 법률전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780-5688	방문·인터넷	가사·민사·형사 등 법률 전반
한국여성변호사회	02-587-3233		여성법률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 사업회 : 02-3476-6515
- 서울지방변호사회지부 : 02-3476-0986
- 수원지방변호사회지부 : 031-216-0646
- 청주지방변호사회지부 : 041-274-9683
- 대구지방변호사회지부 : 053-753-1900
- 울산지방변호사회지부 : 052-567-6633
- 광주지방변호사회지부 : 062-222-0430
- 제주지방변호사회지부 : 054-751-1402
- 인천지방변호사회지부 : 032-421-2170
- 춘천지방변호사회지부 : 061-243-8321
- 대전지방변호사회지부 : 042-472-3358
- 부산지방변호사회지부 : 051-244-3735
- 창원지방변호사회지부 : 051-660-0606
- 전주지방변호사회지부 : 052-252-7710

I · 인권실현의 과정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III ·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IV · 부록 · 안내 기관

인권관련정부기관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청와대민원실	02-730-5800	국무총리 비서실	02-188
감사원 민원 및 신고	02-188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	1544-999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	02-6709-311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센터	02-2100-7400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서울지방노동청	02-598-245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503-7567	국가보호처	1577-0606
법무부 인권과	02-2110-321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02-2650-6212
국방부 법무과	02-748-6814	삼청교육대피해보상 심의위원회	02-748-377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588-1517	부패방지위원회	02-139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02-3703-500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02-3703-5810
청소년보호위원회	138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504-9303
공정거래위원회	02-2110-4934	국세청 세무상담센터	1588-0600
금융감독위원회	02-3771-5000	신용회복위원회	02-6337-2000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02-3786-8691~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1588-0075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언론중재위원회	02-397-3114
방송위원회	02-3219-5114	통신위원회	02-1338
정보통신부 사이버테러신고	02-118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02-133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인권침해방지센터	02-3415-0182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02-392-0330
검찰청 컴퓨터수사부	02-530-4977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02-528-5714

단체

여성

단체명	연락처	주소	상담분야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	http://www.1366.or.kr/	가정·성폭력·성매매 위기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서울 마포 합정 366-24 http://www.sisters.or.kr/	성폭력상담, 구제활동, 보호시설 열림터 운영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서울종로평동 동평빌딩4층 http://www.womenlink.or.kr/	여성참정권운동, 양성평등, 열린가족문화
서울여성의전화	02-2263-6464	서울 중구 신당1동 http://www.womanrights.org/	가정·성폭력 상담, 부설 쉼터 운영
호주제폐지를위한 시민모임	02-577-0601	서울 서초 우면 65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폐지운동, 호적법 개선방안 연구
매매추근절을위한 한소리회	02-3147-1505	서울 서대문 총정2가 기사연빌딩 5층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새움터	031-867-4655	경기 동두천 생연4동 541-39	기지촌여성, 혼혈인, 여성이주노동자인권보호
두레방	031-841-2609	경기 의정부 고산동 116	기지촌여성, 혼혈인, 여성이주노동자인권보호
막달레나의 집	02-798-6386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장애

단체명	연락처	주소	주요활동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1588-1519	경기성남분당구미 297-1 http://www.kepad.or.kr/	장애인직업재활, 교육훈련, 기금융자지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 인전화	1588-0420	서울여의도스카우트연맹 3층 http://www.kodaf.or.kr/	장애인 인권 전반
한국장애인연맹	02-457-9427	서울 광진구 구의동 정립회관 3층	장애인 인권 전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서울영등포당산6가덕승빌딩7층 http://www.cowalk.or.kr/	장애인 인권 전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9935	서울종로기독교회관811호 http://www.kdauw.org/	여성장애인 인권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	02-702-1574	서울 용산 갈월 71-3, 2층 http://www.jscenter.or.kr/	실업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주노동자

단체명	연락처	주소	주요활동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1588-1388		이주노동자 인권전반
외국인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02-747-6830	서울종로호계삼우빌딩302호 http://www.jcmk.org/	이주노동자 인권전반
외국인 노동자의 집	02-863-6622	서울구로가리봉1동137-22 http://www.g4w.net/	이주노동자 및 중국동포 인권전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02-3672-9472	서울중로송인178-48, 4층 http://ijunodong.prok.org/	인권상담 및 노동상담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이주노동자지부	02-2285-6068	서울중구장충2가세릉빌딩2층 http://migrant.nodong.net/	이주노동자 인권전반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032-4288-114	인천남동 구월1동 1170-3 http://migrant114.org/	이주노동자 상담, 의료, 조직, 교육, 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031-492-8785	경기 안산 원곡 791-4 http://www.migrant.or.kr/	이주노동자 인권전반

노동

단체명	연락처	주소	주요활동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02-868-2379	서울 구로 구로4동 751-7지층 http://sanjae.jinbo.net/	산재노동자 상담, 교육 재할, 연대, 복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02-312-7488	서울 서대문 충정로2가 서울빌딩 6층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전반
노동인권회관	02-795-5504	서울 용산 한강로1가 한성빌딩 401호	법률구조, 교육, 발간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02-837-8355	서울 구로 신도림 292-70	남녀고용평등법 · 최저임금 위반 · 산재상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02-325-6817	서울 마포 합정 418-21 http://sanjae.jinbo.net/	여성노동자상담, 취업정보제공, 교류, 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02-2279-4654	서울중구쌍림 182-37, 1층 http://www.womanunion.org/	여성노동자 관련 상담, 비정규직 상담, 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02-365-6594	서울 서대문 충정로3가 84 http://www.women119.or.kr/	여성노동자(임시직포함) 인권전반
한국노동자총연맹	02-715-7990	서울 용산 청암동 168-24 http://www.fktu.or.kr/	한국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02-2670-9100	서울영등포2가대영빌딩2층 http://www.nodong.org/	민주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연합

성적소수자

단체명	연락처	주소	주요활동
동성애자인권연대	02-778-9982	서울용산동자11번지 5층 http://outpridekorea.com/	동성애자인권 전반 (상담 및 교육)
한국동성애자연합	02-745-7942	서울종로낙원신아산빌딩302호 http://outpridekorea.com/	동성애자인권 전반 (상담 및 교육)
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 '끼리끼리'	02-703-3542	서울광화문우체국사서함1816 http://www.kirikiri.org/	여성동성애자인권상담

의료

단체명	연락처	주소	주요활동
인도주의실천 의사회협의회	02-766-6024	서울종로이화 엘림빌딩3층 http://www.humanmed.org/	의료소외계층지원, 의료개혁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02-588-6944	서울서초1동 정안빌딩4층 http://www.gunchi.org/	소외계층지원, 구강보건증진사업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02-3676-0194	서울 종로 이화 26-1, 3층 http://www.haninews.com/	산재, 직업병 한의원 개설, 빈민진료사업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	02-774-8774	서울용산갈월 신성빌딩4층 http://myr.jinbo.net/	노동보건운동 노동자건강사업단
의료사고시민연합	02-525-7233	서울서초1603-9우림빌딩 3층 http://www.medioseor.or.kr/	의료사고 및 분쟁, 법률상담
익명의 알콜중독자를 위한 모임	02-774-3797		

AIDS

단체명	연락처	주소	주요활동
대한에이즈예방협회	1588-5448	서울영등포8가세미빌딩807 http://www.aids.or.kr/	에이즈 환자 상담
감염인/환자요양센터	AIDS 119 011-219-2889	www.aids119.net	에이즈 환자 상담
한국에이즈예방재단	02-3785-1932	서울용산한남 한국소비자연맹 2층	에이즈환자 치료비지원
구세군 HIV/ 에이즈예방사업본부	02)733-3025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192 http://www.aidscares.or.kr/	에이즈 예방, 감염인 복지, 인권 향상

I · 인권상담의
현제와향후
과제

II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III ·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IV · 부록 · 안내기관

노인, 청소년/아동

단체명	연락처	주소	주요활동
노인학대 상담센터	1588-9222	http://www.seniorabuse.or.kr/	노인학대발견, 보호, 치료, 예방,
한국노인복지회	02-2631-3212	서울영등포영등포3가 19-3 http://www.helpage.or.kr/	노인복지, 고령자취업 알선, 노인의집 운영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391	서울중구무교한국복지빌딩11층 http://www.childabuse.or.kr/	아동학대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자녀안심학교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02-3463-2214	서울서초양재 모산빌딩5층 http://iss2828.or.kr/	학교폭력·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상담
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	02-3141-6191	서울 서대문 창천 114-9 http://www.ausung.net/	청소년성교육, 유해환경감시, 청소년 캠프
한국청소년상담원	02-730-2000	서울 중구 신당6동292-61 http://www.kyci.or.kr/	청소년상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02-585-0098	서울 서초 성훈빌딩 2층 http://www.jikim.net/	청소년인권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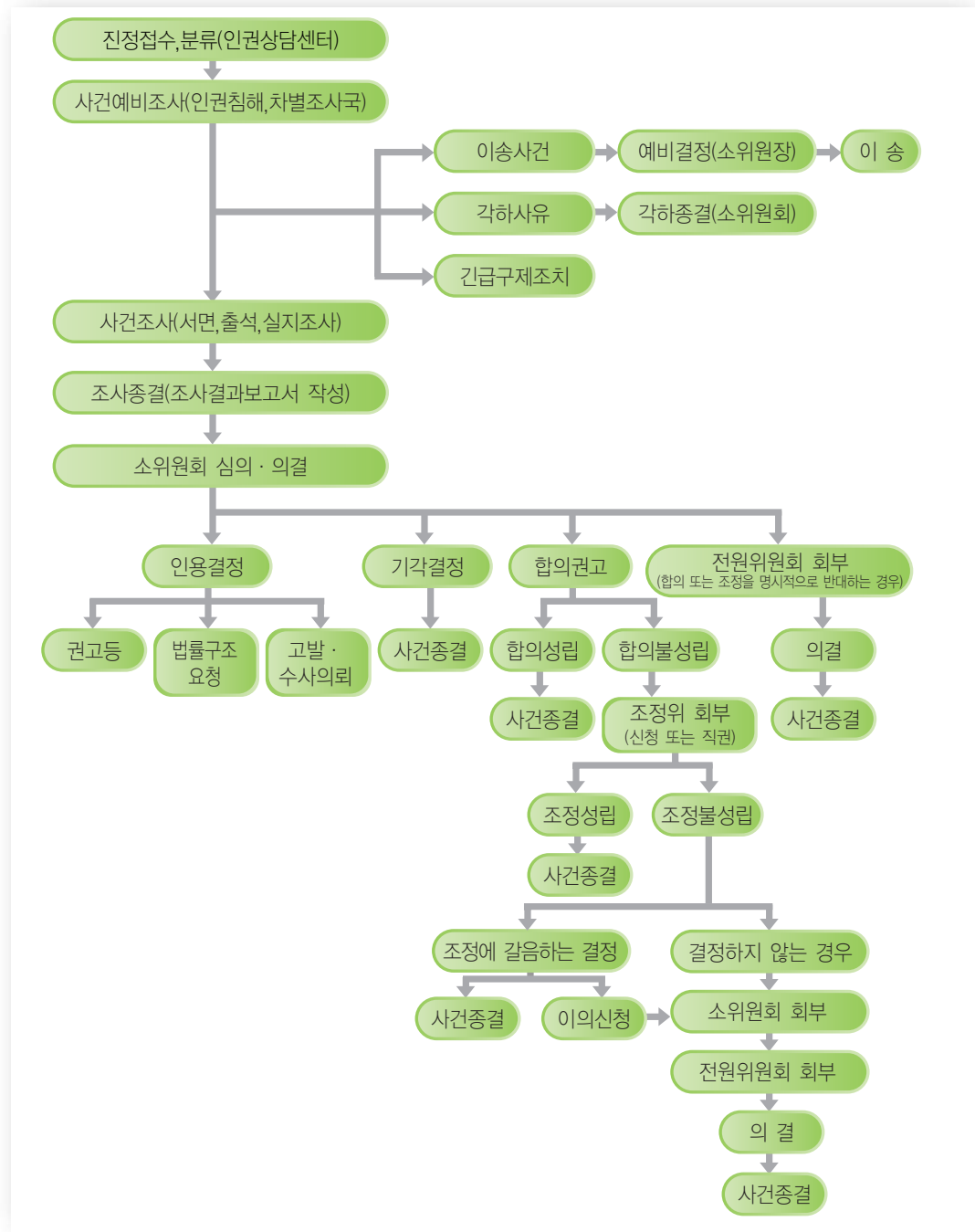
소비자

단체명	연락처	주소	주요활동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서울 용산 한남 272-1 http://www.consumersunion.or.kr/	소비자권익 보호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	02-739-5441	서울종로신문로2가피어선빌딩603 http://www.cacpk.org/	소비자고발상담, 피해구제, 소비자교육
녹색소비자연대	02-3273-4998	서울종로한국기독교연합회관805 http://www.gcn.or.kr/	소비자고발상담, 피해자구제사업
YMCA시민중계실	02-733-3181	서울종로YMCA별관101호 http://consumer.ymca.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서울 서초 염곡 300-4 http://www.cpb.or.kr/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교육, 제도개선

인권일반

단체명	연락처	주소	주요활동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수원영통매탄2화이트빌딩4층 http://www.rights.or.kr/	무료상담 및 소송지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서울 서초 신정빌딩 5층 http://minbyun.jinbo.net/	법개정 및 제도개선 연구, 변론활동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민가협)	02-763-2606	서울 종로 창신2동 592-7 http://www.minkahyup.org/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장기수지원활동
인권실천시민연대	02-3672-9443	서울성북동소문1삼우빌딩503 http://www.hrighs.or.kr/	인권피해신고센터, 교육, 자료발간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서울종로명륜2가8-29, 3층 http://www.sarangbang.or.kr/	인권하루소식발행, 인권정보자료실운영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서울 중구 명동2가 1-19 http://www.cathrights.or.kr/	인권침해제보 군가협운영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02-795-3315	서울용산한강로2영월빌딩402 http://www.victims.co.kr/	태평양전쟁유족조사, 유족생활지원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02-723-7057	서울종로필운동184-3, 3층 http://usacrime.or.kr/	미군범죄피해자 지원 연대사업
국제민주연대	02-3675-5808	서울 종로 원서 32, 2층 http://www.khis.or.kr/	다국적기업 감시활동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02-723-5056	서울종로안국빌딩신관3층 http://www.peoplepower21.org/	인권활동 전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02-730-4755	서울광화문우체국사서함2045 http://www.amnesty.or.kr/	인권교육, 난민보호, 양심수 석방 등
좋은벗들	02-587-8996	서울서초3동1585-16정도회관 http://www.jungto.org/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
북한인권시민연합	02-723-1672	서울종로교복 심지빌딩401 http://www.nkhumanrights.or.kr/	북한인권활동, 난민구호활동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02-395-8454	서울종로구기 통일회관329 http://www.dongposarang.or.kr/	국내거주 탈북자 도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2-2675-6181	서울 영등포 영등포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교육정책 및 교권상담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절차 업무흐름도



"어머니가 나를 깨어나게 한다"

함민복

여보시오— 누구시유 —
 예, 저예요 —
 누구시유, 누구시유 —
 아들, 막내아들 —
 잘 안들려유 — 잘.
 저라구요, 민보기 —
 예, 잘 안들려유 —
 몸은 좀 괜찮으세요 —
 당최 안들려서 —
 어머니 —
 예, 애비가 동네 불일 보러 갔어유 —
 두 내우다 그러니까 이따 다시 걸어유 —
 예, 죄송합니다 안들려서 털컹.
 어머니 저예요 —
 전화끊지 마세요 —
 예, 애비가 동네 불일 보러 갔어유 —
 두 내우다 예, 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걸어유 어머니.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안어들려니서 털컹.
 달포만에 집에 전화를 걸었네
 어머니가 자동응답기처럼 전화를 받았네
 전화를 받으시며
 소 귀에 경을 읽어 주시네
 내 슬픔이 맑게 깨어나네

경로별 상담 / 진정 방법



상담 방법

방문상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전문상담원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5분 거리(5번출구, 50m 직진 지하보도 이용 건너편)
-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2분 거리(1번출구, 100m 직진)
- ◆ 을지로입구 하차
 - 간선버스 : 150, 172, 200, 401, 472, 600, 602, 700
 - 지선버스 : 0015, 7012, 7019, 7019
 - 광역버스 : 5500, 9301, 9301, 9301, 9600, 9601, 9711
 - 공항버스 : 601, 605
- ◆ 시청앞 하차
 - 간선버스 : 172, 405, 472, 700
 - 지선버스 : 7012
 - 공항버스 : 01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전화를 이용해 전문상담원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1331

그 외 지역 02-1331

인터넷 실시간 상담

- ◆ 인터넷 실시간 상담에는 인터넷 화상, 인터넷 전화, 인터넷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 ◆ 인터넷 실시간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에서 “화상·문자 진정상담” 메뉴를 통해 전문상담원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안내

- | | | |
|--------------|----------------|--|
| ◆ 방문 및 전화상담 | 월 ~ 금요일
토요일 | 오전 9:00부터 오후 5:00까지
오후 12:00까지 (2·4주 토요일은 휴무) |
| ----- | | |
| ◆ 인터넷 실시간 상담 | 월 ~ 금요일
토요일 | 오후 1:00부터 오후 4:00까지
오전 11:00까지 (2·4주 토요일은 휴무) |
| ----- | | |

☎ 12:00 ~ 1:00 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진정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전화 또는 팩스

전화 서울/경기 1331 그 외 지역 02-1331
 팩스 02-2125-9812

구급·보호시설

구급·보호시설 수용자는 각 구급·보호시설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을 이용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급·보호시설 수용자는 또한 **면전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전진정은 수용자가 면전에서 진정을 원한다고 소속 직원에게 요구하면, 국가인권위에서 직접 방문해 진정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민원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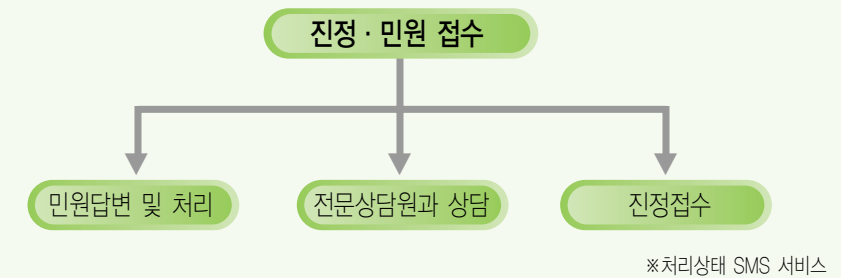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의 “진정·민원접수” 메뉴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내용에 따라 민원답변 및 처리, 전문상담원과 상담, 진정접수 등으로 처리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접수하신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상태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을 “진정·민원 회신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민원처리상태를 문자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 접수민원 처리도



◆ 진정접수시 유의사항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양식은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의 “진정관련 서식” 메뉴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